

연구보고서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숙·양선희·하영미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20.05. 25. ~ 2020. 10. 31..

연구책임자 : 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양선희 (계명대학교 의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하영미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김민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조은영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요 약 문

연구기간

2020년 5월 ~ 2020년 10월

핵심 단어

COVID-19, 사업장, 감염병 대응

연구과제명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Pandemic),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 다양한 호흡기계 감염병을 경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감염되는 호흡기계 감염병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질병발생의 역학적 특징이나 질병진행의 임상적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이 높아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행의 반복가능성도 높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이나 재유행을 막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이나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업종별, 직무별 대응 방안과 표준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사업장 발생 관련 사례로는 클럽관련(277명), 리치

웨이관련(208명), 구로콜센터관련(170명), 쿠팡물류센터관련(152명), 광주방문판매모임관련(150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명),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청도 대남병원관련(119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1명) 등이었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감염위험이 크고,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사업장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취약 근로자 집단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집단 파악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집단 평가기준(안)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집단 평가항목으로 작업장 위험으로 공간의 밀폐정도, 보건관리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업무상위험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 사람 간 밀집 정도, 타인 접촉 정도, 군집도, 이용자 체류시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물품 공유 정도, 업무과중, 개인적 위험으로 고위험군, 집단생활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회의” 를, 건설업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에 대해 가장 현장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지침을 일반, 제조업, 건설업, 소규모사업장,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시사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집단은 사업장특성, 업무특성, 개인적 특성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되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법·규정, 대응지침, 연구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지침을 일반, 제조업, 건설업, 소규모사업장, 정신 건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지침 개발 현황과 국내 코로나19 발생 사업장 특성, 코로나19 감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공통, 업종, 직종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분야 연구로 언택 산재예방서비스 활성화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건강영향의 형평성, 코로나19 취약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의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병원체 감염 예방 규정의 적용을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업장 적용 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업장 내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시에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른 근로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보호구 착용과 확진환자 등과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및 지침 제공, 심리지원, 지지체계 및 자기관리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활 용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집단 평가기준(안)을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집단 모니터링,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과 근로자 건강형평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현황,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업장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해 일반, 제조업, 건설업, 소규모사업장, 정신건강 지침(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안)과 이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안)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안)을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추가 대응지침 개발(안)과 연구 추진(안)을 추가적인 지침 및 연구 개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최윤정 과장
 - Tel: 052-703-0862
 - E-mail: yoonjung@kosha.or.kr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표	3
3.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 근로자 집단	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요	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현황	1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발생 주요 사례	2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집단 분류 국내외 사례	58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 근로자 집단	80
제3장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지침	85

1. 국내	85
2. 국외	91

제4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현황

..... 147

1. 조사 개요	147
2. 제조업	149
3. 건설업	158
4. 교육지원 요구	168
5. 기타	173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

..... 175

1.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법령규정(안)	175
2.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183
3.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지침(안)	195

참고문헌	246
Abstract	255
부 록	259

표 목차

<표 2-1> COVID-19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 감시 국가(2020년 10월 15일 기준)	20
<표 2-2> COVID-19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 현황(2020.10.15. 0시 기준)	22
<표 2-3> COVID-19 확진자 지역별 발생 현황(2020.10.15. 0시 기준)	23
<표 2-4> 국내 COVID-19 지역별 확진자 및 주요 집단 발생사례 (2020.10.15.기준) ·	24
<표 2-5-1> 주요 COVID-19 사업장 발생사례 1	25
<표 2-5-2> 주요 COVID-19 사업장 발생사례 2	26
<표 2-6> 청도대남병원 COVID-19 발생현황	27
<표 2-7> 봉화 푸른요양원 COVID-19 발생현황	29
<표 2-8> 구로구 콜센터 COVID-19 발생현황	31
<표 2-9> 한사랑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33
<표 2-10> 대실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35
<표 2-11> 경산 서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37
<표 2-12> 파티마병원 COVID-19 발생현황	39
<표 2-13> 제이미주병원 COVID-19 발생현황	41
<표 2-14> 의정부 성모병원 COVID-19 발생현황	43
<표 2-15-1>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1	45
<표 2-15-2>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2	46
<표 2-15-3>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3	47
<표 2-16> 쿠팡 물류센터 COVID-19 발생현황	49

<표 2-17-1> 리치웨이 COVID-19 발생현황 1	51
<표 2-17-2> 리치웨이 COVID-19 발생현황 2	52
<표 2-18> 성심데이케어센터 COVID-19 발생현황	54
<표 2-19> 대전 서구 방문판매 COVID-19 발생현황	56
<표 2-20>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중위값)와 종사자 인구 규모 추정	59
<표 2-21> 고위험 직업군의 고용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빈도)	62
<표 2-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안)	63
<표 2-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결과	64
<표 2-24>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65
<표 2-25> 코로나19 근로자 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	81
<표 2-26>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에 따른 평가 결과 ...	83
<표 2-27>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에 따른 상세 평가 결과 ·	84
<표 3-1> 유럽연합 코로나19 대응 2차 연구지원 프로젝트	124
<표 3-2> 유로파운드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주제 및 출판물 현황	132
<표 4-1> 조사대상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48
<표 4-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의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152
<표 4-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건설업 사업장의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162
<표 4-4>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교육 현황	168
<표 4-5> 사업장 내 감염병 관련 자체교육 현황	169
<표 4-6>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그 이유	170
<표 4-7>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과정 개설 요구	171
<표 4-8>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	172
<표 4-9-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요구사항 1	173
<표 4-9-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요구사항 2	174

<표 5-1>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안)	177
<표 5-2> 비용편익 분석 항목의 자료원 및 측정값	181
<표 5-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지급 및 백신접종의 비용-편익 분석 ...	182
<표 5-4>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침(안)	184
<표 5-5> COVID-19 사업장 대응 지침별 내용	196

그림 목차

[그림 2-1] 청도대남병원 COVID-19 확진자 수	28
[그림 2-2] 봉화 푸른요양원 COVID-19 확진자 수	30
[그림 2-3] 구로구 콜센터 COVID-19 확진자 수	32
[그림 2-4] 한사랑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34
[그림 2-5] 대실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36
[그림 2-6] 경산 서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38
[그림 2-7] 파티마병원 COVID-19 확진자 수	40
[그림 2-8] 제이미주병원 COVID-19 확진자 수	42
[그림 2-9] 의정부 성모병원 COVID-19 확진자 수	44
[그림 2-10] 이태원 클럽 COVID-19 확진자 수	48
[그림 2-11] 쿠광 물류센터 COVID-19 확진자 수	50
[그림 2-12] 리치웨이 COVID-19 확진자 수	53
[그림 2-13] 성심데이케어센터 COVID-19 확진자 수	55
[그림 2-14] 대전 서구 방문판매 COVID-19 확진자 수	57
[그림 2-15]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와 여성 비율(%)	60
[그림 2-16] 감염 고위험 직업군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월 평균 급여	61
[그림 2-17] 의료 종사자들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68
[그림 2-18] 간병인 및 재택 건강보조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69
[그림 2-19] 소방관 및 구급대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0
[그림 2-20] 교사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1
[그림 2-21]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2
[그림 2-22] 저임금 근로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3
[그림 2-23] 직종별 COVID-19 위험 점수	75
[그림 2-24] 의료종사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6
[그림 2-25] 교육관련 종사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77
[그림 2-26]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	79
[그림 3-1]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메인 홈페이지	92
[그림 3-2] WHO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홈페이지	94
[그림 3-3] ILO의 ‘코로나19와 노동의 세계’ 별도 웹 포털페이지	95
[그림 3-4-1] ILO의 14개 업종별 요약보고서 1	97
[그림 3-4-2] ILO의 14개 업종별 요약보고서 2	98
[그림 3-5]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ILO 정책의 틀	99
[그림 3-6] COVID-19 대처를 위한 CDC 홈페이지 (한국어 제공)	100
[그림 3-7] CDC의 ‘지역사회, 직장, 학교’ 감염병 예방 (한국어 제공)	101
[그림 3-8] ‘긴급구조대원, 경찰, 공무원’ 감염병 예방 (한국어 제공)	104
[그림 3-9] COVID-19연구를 위한 NIH의 광범위한 전략 계획	109
[그림 3-10] 미국 노동부 OSHA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112
[그림 3-11] 미국 OSHA 코로나19 통제와 예방	114
[그림 3-12] 미국 NIOSH 코로나19 관련 웹사이트	120
[그림 3-13]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지원	122

[그림 3-14] OSHwiki 메인 홈페이지	125
[그림 3-15] OSHwiki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사업장 가이드라인	125
[그림 3-16] 유로파운드(Eurofound) 코로나19 특별 홈페이지	126
[그림 3-17] 유로파운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국별 정신적 웰빙	129
[그림 3-18] 유럽연합국별 재택근무 근로자의 비율	130
[그림 3-19] 영국 NHS COVID-19 앱	133

부록 목차

부록 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	259
부록 2. 코로나19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	269
부록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271
부록 4. 국내 코로나 19 관련 지침	278
부록 5. 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	290
부록 6. COVID-19 사업장 대응관련 설문 조사지	291
부록 7. COVID-19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한 자문 조사지	296
부록 8.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309
부록 9. 올바른 손씻기	310
부록 10.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312
부록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313
부록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15
부록 13.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317
부록 14. 코로나19 의사 환자가 이용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319
부록 15. 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	320
부록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321
부록 17. 제조업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	3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증가, 대량의 밀집가축사육 증가, 국제여행의 증가, 동식물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 기후 온난화, 생태 환경의 변화, 항생제 내성의 증가, 훈련받은 감염병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감염병 위기의 빈도나 예방관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천병철, 2015).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 수두, 홍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Pandemic),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 다양한 호흡기계 감염병을 경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감염되는 호흡기계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하여 여러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WHO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다. 2020년 8월 11일 기준 216개 국가·지역 등에서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9,936,210명(사망 732,499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였고, 2020년 3월 22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이후 다소 안

정세를 보이면서 2020년 5월 6일부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감염이 증가하면서 2020년 8월 16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하여 시행 중이다. 2020년 9월 15일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9,362명(해외유입 3,029명, 사망 367명)이며, 이 중 18,878명(84.31%)이 격리해제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31.76%(7,112명), 서울 21.18%(4,743명), 경기 17.74%(3,972명), 경북 6.65%(1,489명)순으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높았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9월 15일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전국적으로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며, 감염병 환자를 선별, 치료 및 관리하는 보건 의료기관, 콜센터 등 사무공간이 밀집된 근로 환경을 가진 사업장, 환기시설이 부적절한 사업장, 식음료 공급 및 소매, 대중교통 운수업, 방문판매업 등 불특정 다수를 접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기반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로나19 사업장 발생 관련 사례로는 클럽관련(277명), 리치웨이관련(208명), 구로콜센터관련(170명), 쿠팡물류센터관련(152명), 광주방문판매모임관련(150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명),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청도 대남병원관련(119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1명) 등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8월 14일과 8월 10일 보도자료).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질병발생의 역학적 특징이나 질병진행의 임상적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이 높아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행의 반복가능성도 높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이나 재유행을 막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이나 사업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코로나19 감염 취약집단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표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코로나19 취약집단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집단을 파악한다.
- 2)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사업장 지침을 조사한다.
- 3)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조사한다.
- 4)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코로나19 감염 취약노동자 집단 파악

- 코로나19 사업장 발생 관련 보도자료 내용분석

- 조사대상: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공식 홈페이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와 조사대상 집단 해당 지자체(대구, 경북, 서울, 경기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보도자료

- 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탑재된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공식 홈페이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전수에 대해 키워드*로 검색된 보도자료 중 중복자료를 제외하고 내용분석 대상 근로자 집단과 보도자료 확정. 조사대상 근로자 집단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대구, 경북, 서울, 경기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보도자료 내용도 동시에 분석. 자료분석 대상 코로나19 보도자료는 근로자 집단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별로 보도날짜 순으로 코딩지침**에 따라 정성적으로 조사 및 분석

* 검색 키워드: “영세”, “취약”, “생계”, “근로자”, “노동자”, “사업주”, “사업장”, “직장”, “기업”, “회사”, “공장”, “사무실”, “업종”, “산업”, “직업”, “직종”, “집단노출”, “고용노동부”, “요양”, “콜센터”, “병원”, “클럽”, “리치웨이”, “케어센터”, “물류센터”, “방문” 등

** 코딩: 보도일자, 업종, 사업장명, 직종, 직무, 소재지, 감염 유입 및 확산 양상, 발생현황, 주요 감염 위험요인, 대응 시 문제점, 개선방안 등

- 국내외 문헌 고찰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근무환경(밀집 근무, 밀폐 공간 등), 업종, 직종, 직무,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지침, 논문, 산재발생 신청 및 승인 자료 등 국내외 문헌 조사

- 코로나19 사업장 발생 관련 보도자료 내용분석과 코로나19 취약 근로자 집단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집단 파악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집단 분류기준(안)을 통해 코로나 19 취약 근로자 집단 도출

2) 국내외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파악

- 국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기관 등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조사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미국 CDC, NIH, OSHA 및 NIOSH, 유럽연합, EU-OSHA, 유럽재단 유로파운드 (Eurofound),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안전보건청(HSE) 등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조사

3) 사업장의 감염병 대응 현황 파악

- 조사대상: 제조업과 건설업 각 5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총 10명. 단, 교육 요구에 한하여 서면 자문에 참여한 3개 제조업 사업장 보건관리자 각 1명을 추가하여 총 13명
- 조사내용 및 방법: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코로나19 건설업 대응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사업주와 근로자, 건설업, 회의, 국내출장 등)의 적용현황(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정보·지침 내용 보완, 관련 교육 요구, 기타 등) 등에 대해 개방형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각 지침 항목별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는 4점 리커트 척도도 작성하여 이메일 조사
- 조사자료 분석: 조사자료를 토대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질적 및 양적 자료분석

4)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

-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을 법령 및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안)과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안)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취약 근로자 집단, 국내외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현황 등의 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 제시
-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안)은 일반, 제조업, 건설업, 소규모사업장, 정신건강관리로 구분하여 제시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 근로자 집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요¹⁾

1) 정의

- ‘20.2.11 WHO에서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 COVID-19는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질병의 ‘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의 ‘19’를 의미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함

2) 병원체 및 병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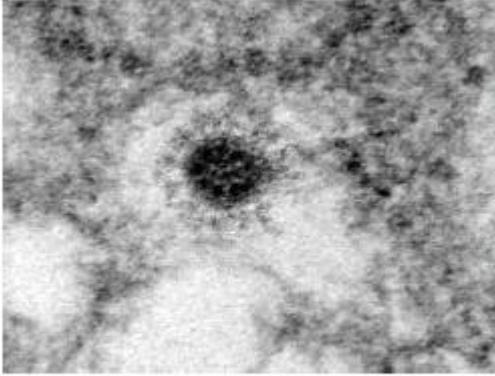
(1) 병원체

-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SARS-CoV-2)임
-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 양성 극성 단일 가닥(Positive-sense single-stranded) 외피 RNA 바이러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2판)(20.8.20)(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2020.8.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에 근거하여 작성함. 기술된 내용의 참고문헌은 원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30kb, enveloped, non-segmented, (+)ss RNA

- 바이러스 입자는 1개에 직경이 대략 0.05~0.2 μ 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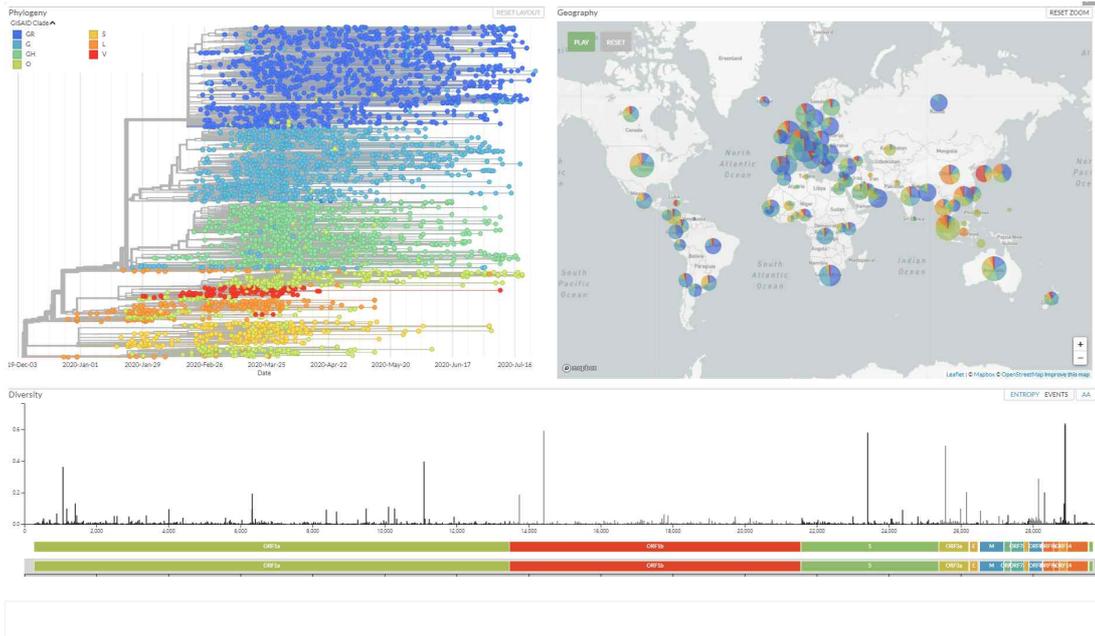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짐

- 현재 59,819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7.4.기준, GISAID)

* 1개('19.12.24.)→339개('20.1.31.)→1,567개('20.4.30.)→82,034개('20.8.13.)

8...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SARS-CoV-2 바이러스 계통 분석>

* 자료출처 : <https://Nextstrain.org>

코로나19 병원체의 GISAID 분류체계

- ◆ S, V, G clade 분류에서 L, S, V, G, GH, GR로 분류체계 변경(5월 20일)(세계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은 G clade 분류를 G, GH, GR로 세분화함)
- ◆ 각각의 clade(또는 group)은 특정 유전자의 특정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분류 * 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 (유전체 변이 분석 결과) 가장 유연관계가 가까운 박쥐코로나바이러스(BCoV) 유전자와 96.2% 동일하였고, SARS-CoV-2 유전체간에는 높은 유사성(>99%) 확인

- 환경에서 SARS-CoV-2의 생존기간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2) 병원소

- COVID-19 유행 초기 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나 매개체로 의심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음

3) 역학적 특징

(1) 잠복기 : 1 ~ 14일 (평균 5 ~ 7일)

(2) 감염재생산지수(R_0)

-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 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감염재생산지수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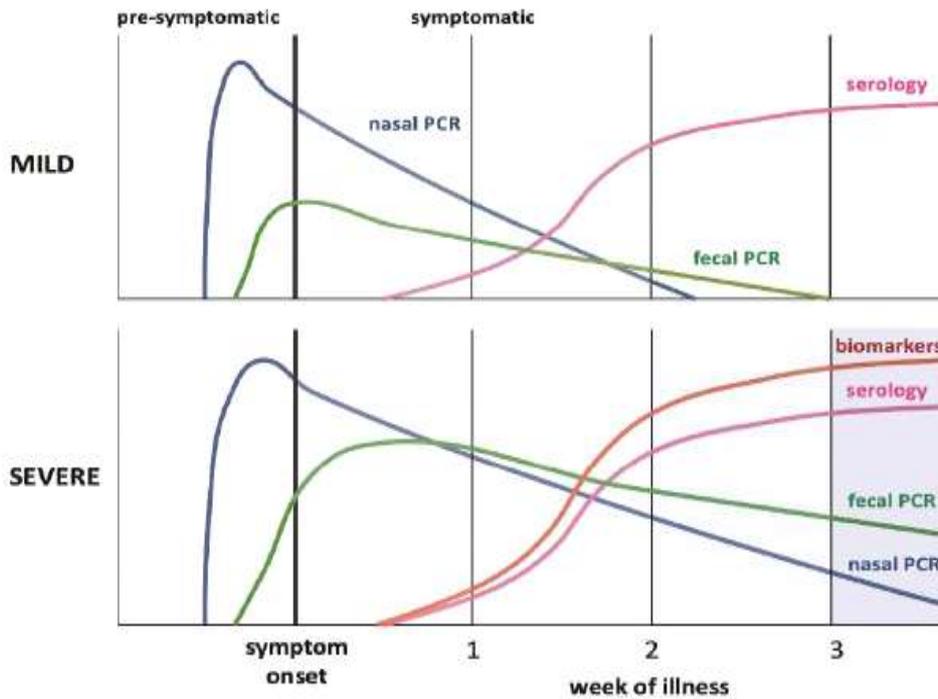
(3)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에어로졸 생성 기술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 기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4) 바이러스 검출

-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감염 첫 주 내에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 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



<환자 중증도에 따른 바이러스, 항체 및 바이오마커 검출 경과 차이>

-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양상과 질병 진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음
- 일부 연구에서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음
 - 단, 바이러스 검출과 감염 가능 기간에 대한 관련성의 근거는 없음
- 호흡기 검체 이외의 검체
 -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분변-구강 전파(또는 에어로졸화된 분변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고사례 없음
 - 호흡기 검체 이외의 체액으로부터 혈액, 뇌척수액, 심막액, 흉수, 태반조직,

소변, 정액, 침, 눈물, 결막 분비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바이러스가 감염 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음

* 체액내 바이러스 RNA 검출(검사에서 양성)이 감염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5)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일본의 연구에서는 31%,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50~75%로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은 4~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됨

(6) 집단감염

- 의료관련 감염
- 가족 모임
- 장기요양시설, 노숙인 보호소, 교도소
- 장기 항해: 유람선, 함선 등
- 집단 행사
- 노래방, 체육관
- 결혼식, 합창단 연습, 피트니스 교실
- 종교 모임 등

4) 임상적 특성

(1) 주요증상 및 징후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초기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임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2) 임상 중증도 분류

가) 경증

-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 없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확진환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예: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음

나) 폐렴: 성인과 청소년

-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은 있으나 중증폐렴 증후는 없으며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

다) 중증폐렴: 성인과 청소년

-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동반
 - 30회/분 이상의 호흡 수
 - 심한 호흡곤란

- 산소 투여 없이 산소 포화도 90% 이하

(3)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요인

- 65세 이상의 고령(특히, 요양시설)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면역억제자,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영국의 전향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저질환은 만성 심장질환(31%), 합병증이 없는 당뇨(21%), 만성폐질환(18%), 만성 신질환(16%) 등임
 - 미국에서도 동반 질병은 심혈관질환(32%), 당뇨(30%), 만성 폐질환(18%) 등임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률이 6배 더 높고, 사망률이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암(특히 혈액암, 폐암, 전이암 등)
 - 암환자는 면역억제 치료와 잦은 병원 방문으로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음
 - 암환자는 암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중증으로 갈 확률이 76% 더 높음
- 비만
 - 비만은 중증, 침습적 기계 환기로 이어지는 호흡부전,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
 - 프랑스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1.35배 높다고 보고
- 장기 이식
 - 장기이식 수혜자는 만성 면역억제로 인하여 일반 인구에 비해 임상진행이 더 빠르며 더 오래 지속되며, 중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음
- 흡연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1.91배 더 높으며, 이

는 흡연자의 기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과 관련있는 수용체인 ACE2(안지오텐신 전환 효소2)가 더 많이 발현되어있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4) 합병증

-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 정맥 혈전 색전증
- 심혈관계 합병증 : 심근염, 심부전, 부정맥,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급성 신장 손상
- 급성 간 손상
- 신경계 합병증 : 의식장애, 운동 실조증, 경련, 신경통, 골격근 손상, 피질 척수 징후, 수막염, 뇌염, 뇌막염 등
-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 다발성 장기부전
- 소아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파종성 혈관내응고, 패혈성 쇼크, 급성 호흡부전, 2차 세균감염(황색포도상구균 등), 임신 관련 합병증(태아곤란, 조산, 신생아의 호흡곤란,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증 등), 아스페르길루스증 등

(5) 치명률

- 세계 치명률은 3.56% (WHO, 8. 17. 16시 기준)
- 우리나라는 1.64% (9. 15. 0시 기준)

*참고)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WHO 8. 17. 기준; 중앙재난대책본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9. 15. 0시 기준

5) 진단

- 혈액검사결과는 코로나 19 질병 경과를 예측 및 사망을 예측하는데 정보 제공
- 또한, 일상적 검사결과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1) 혈액학적/생화학적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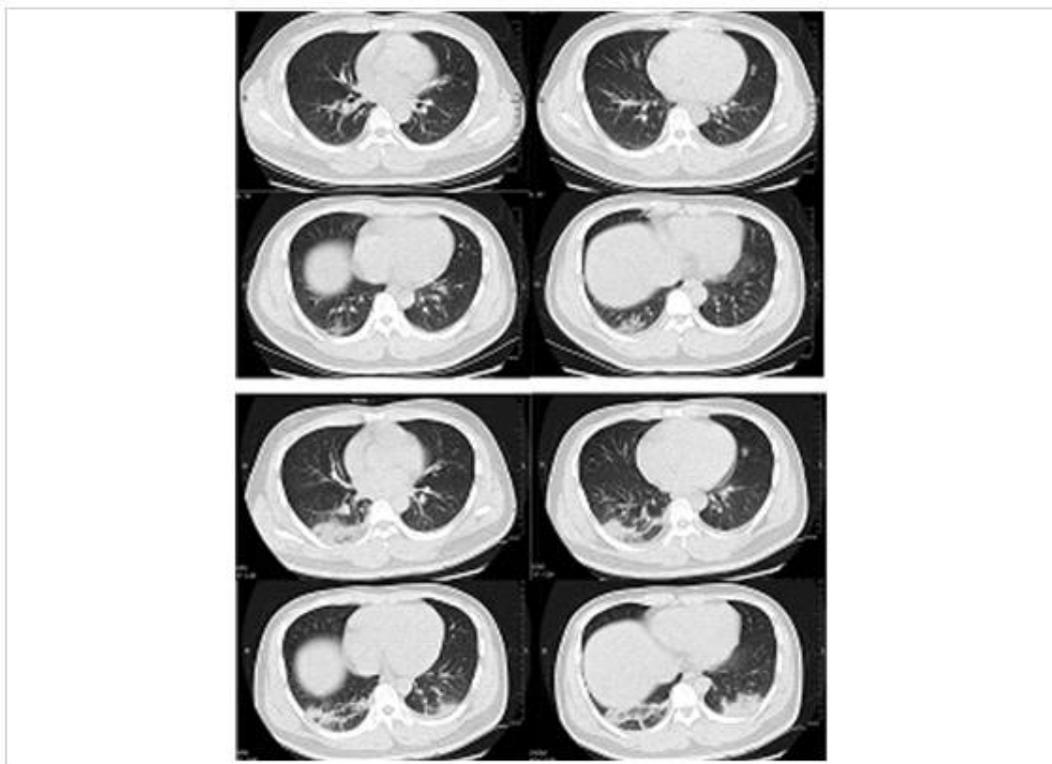
- 림프구 감소증은 코로나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혈액학적 검사소견으로 입원환자의 83% 이상에서 확인
-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증가증, 상승된 혈청 AST/ALT와 LDH, 높은 CRP와 페리틴 수치는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상승된 D-dimer와 림프구 감소증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
- PCT는 일반적으로 입원시 정상이나 ICU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증가할 수 있음
- 중증환자는 혈청에서 염증유발물질을 가지고 있어 면역조절장애를 시사

<코로나19 진행 경과에 대한 바이오마커>

혈액학적 검사소견	Lymphocyte count ↓, Neutrophil count ↑, Platelet count ↓
생화학적 검사소견	Albumin ↓, Creatinine ↑, LDH ↑, Cardiac troponin ↑, B-type natriuretic peptide ↑, O2 saturation ↓
염증 소견	CRP ↑, Ferritin ↑, Procalcitonin ↑, IL-6 ↑
응고 소견	D-Dimer ↑

(2) 흉부 검사

- 흉부검사는 가능한 이동식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격리실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촬영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감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송
- 폐렴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흉부 영상검사를 하며, 편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25%에서, 양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75%에서 발견



<환자 흉부검사 영상>

증상 발현 1일째(상단), 흉막 근처의 우측 우엽의 불투명도와 경화가 나타나고
증상 7일째 양측 폐의 불투명도와 경화가 나타난 32세 남성의 CT스캔

- 환자의 접촉자 중 무증상자의 진단이나 유증상자 진단에 RT-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 증상이 호전된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결정에 흉부 영상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또한, 흉부 영상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흉부 x-ray나 CT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권장하지 않으며, 선별검사나 진단을 위한 1차 검사로도 권장하지 않음
- 단, 코로나19 진단시 흉부검사를 권고하는 경우는
 - RT-PCR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가 지연될 때
 - RT-PCR 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될 때

6) 치료

-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 중증 경과에 따라 산소공급, 기계호흡이나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처치
- 현재 FDA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승인
- 그 외 칼레트라, 회복환자의 혈장, 면역글로불린, 덱사메타손 등의 약물을 치료에 사용

7) 예방 백신

-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현황

1) 국외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타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
- '20.1.30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20.3.11 WHO 세계적 대유행 “판데믹” 선언
- '20.9.16 9시 기준 931,948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29,429,872명의 확진자 발생

**<표 2-1> COVID-19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
감시 국가(2020년 10월 15일 기준)**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미국	7,728,436	46,308	213,626	335	2.76	2,348.35
인도	7,239,389	63,509	110,586	730	1.53	528.92
브라질	5,103,408	8,429	150,689	201	2.95	2,402.73
러시아	1,340,409	14,231	23,205	239	1.73	931.49
콜롬비아	919,083	7,767	27,985	151	3.04	1,845.55
아르헨티나	903,730	9,524	24,186	318	2.68	2,003.84
스페인	861,112	-	32,929	-	3.82	1,855.84
페루	851,171	1,800	33,357	52	3.92	2,587.15
멕시코	821,045	3,542	83,945	164	10.22	620.59
프랑스	728,745	12,981	32,679	90	4.48	1,112.59
남아프리카공화국	694,537	1,178	18,028	165	2.60	1,195.42
영국	634,924	17,232	43,018	143	6.78	947.65
이란	508,389	4,108	29,070	254	5.72	614.00
칠레	484,280	1,392	13,396	17	2.77	2,585.58
이라크	409,358	3,921	9,970	58	2.44	1,013.26
방글라데시	381,275	1,537	5,577	22	1.46	236.23
이탈리아	365,467	5,898	36,246	41	9.92	617.34
필리핀	344,713	1,897	6,372	40	1.85	318.88
인도네시아	340,622	3,906	12,027	92	3.53	126.39
사우디아라비아	340,089	474	5,087	19	1.50	997.33
터키	338,779	1,632	8,957	62	2.64	408.17
독일	334,585	5,132	9,677	43	2.89	406.05
파키스탄	319,848	531	6,588	8	2.06	156.33
카자흐스탄	144,218	-	2,136	-	1.48	775.37
스웨덴	100,654	-	5,899	-	5.86	996.57
일본	90,140	467	1,638	4	1.82	71.03
중국	85,622	11	4,634	0	5.41	6.03
우즈베키스탄	61,859	325	512	2	0.83	188.59
싱가포르	57,884	4	28	0	0.05	981.08
키르기스스탄	50,201	330	1,094	2	2.18	809.69
호주	27,317	31	899	1	3.29	108.83
말레이시아	16,880	660	163	4	0.97	51.94
태국	3,652	9	59	0	1.62	5.27
베트남	1,113	3	35	0	3.14	1.14
대한민국	24,988	110	439	1	1.76	48.20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국내

- '20.1.20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20.1.24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에서 2번째 환자 발생
- '20.1.27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 '20.2.18 대구 ○○○교회 관련 첫 확진환자 확인
- '20.2.20 청도 ○○병원 확진환자 사망 (국내 첫 사망사례 확인)
- '20.2.2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 '20.3.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 '20.5.6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 '20.8.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20.10.12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 '20.10.15. 0시 기준 총 누계 확진자 24,998명(인구 10만명당 발생률 48.20명)
- 국내발생 21,528명(86.1%), 해외유입* 3,470명(13.9%), 사망 439명(치명률 1.76%)
* 해외유입: 중국 외 아시아 1,737명, 아메리카 992명, 유럽 608명, 중국 24명 등

-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 및 사망 현황

성별 확진자 누계는 남자 11,615명(46.48%), 여자 13,373명(53.52%)이다. 연령별로는 20대 4,955명(19.83%), 50대 4,588명(18.36%), 60대 3,988명(15.94%) 순으로 발생이 많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0대 72.80명, 60대 62.78명, 70대 55.97명, 80세 이상 55.13명, 50대 52.94명 순으로 높았다.

성별 사망자 누계는 남자 233명(58.08%), 여자 206명(46.92%)이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222명(50.57%), 70대 143명(32.57%), 60대 47명(10.71%), 50대 21명(4.78%), 40대 4명(0.91%), 30대 2명(0.46%)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성별 치명율은 남자 2.01%, 여자 1.54%이었다. 연령별 치명율은 80세 이상 21.20%, 70대 7.08%, 60대 1.18% 순이었다.

**<표 2-2> COVID-19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2020.10.15. 0시 기준)**

구 분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사망 누계	(%)	치명률(%)
계		24,988**	(100)	48.20	439	(100)	1.76
성별	남성	11,615	(46.48)	44.91	233	(53.08)	2.01
	여성	13,373	(53.52)	51.47	206	(46.92)	1.54
연령	80세 이상	1,047	(4.19)	55.13	222	(50.57)	21.20
	70-79	2,019	(8.08)	55.97	143	(32.57)	7.08
	60-69	3,983	(15.94)	62.78	47	(10.71)	1.18
	50-59	4,588	(18.36)	52.94	21	(4.78)	0.46
	40-49	3,326	(13.31)	39.65	4	(0.91)	0.12
	30-39	3,070	(12.29)	43.58	2	(0.46)	0.07
	20-29	4,955	(19.83)	72.80	0	(0.00)	0.00
	10-19	1,372	(5.49)	27.77	0	(0.00)	0.00
	0-9	628	(2.51)	15.14	0	(0.00)	0.00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지역별 확진자 현황

지역별 확진자 누계는 대구 28.58%(7,141명), 서울 22.54%(5,632명), 경기 19.02%(4,752명), 경북 6.65%(1,571명) 순으로 많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율은 대구 293.09명, 경북 59.0명, 서울 57.86명, 경기 35.86명 순으로 높았다.

**<표 2-3> COVID-19 확진자 지역별 발생 현황
(2020.10.15. 0시 기준)**

지역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5,632	(22.54)	57.86
부산	546	(2.19)	16.00
대구	7,141	(28.58)	293.09
인천	987	(3.95)	33.39
광주	499	(2.00)	34.26
대전	413	(1.65)	28.02
울산	156	(0.62)	13.60
세종	78	(0.31)	22.79
경기	4,752	(19.02)	35.86
강원	232	(0.93)	15.06
충북	180	(0.72)	11.25
충남	500	(2.00)	23.56
전북	153	(0.61)	8.42
전남	176	(0.70)	9.44
경북	1,571	(6.29)	59.00
경남	297	(1.19)	8.84
제주	59	(0.24)	8.80
검역	1,616**	(6.47)	-
총합계	24,988**	(100)	48.20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지역별 확진자 및 주요 집단 발생사례

2020년 10월 15일 기준 24,999명의 누적 확진자 중 집단발생관련이 60%(15,006명)(신천지 관련 20.9%(5,214명), 집단발생 38.3%(9,560명), 해외유입 관련 0.9%(232명))이었다.

<표 2-4> 국내 COVID-19 지역별 확진자 및 주요 집단 발생사례 (2020.10.15.기준)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5,632	441	3,089	8	3,008	73	1,083	1,019	2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646명, 경기 394명, 22명 등)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1
부산	546	53	385	12	318	55	51	57	55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 * 클럽 관련(277명) * 리치웨이 관련(210명)
대구	7,141	88	5,369	4,512	853	4	935	749	0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 *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
인천	987	101	641	2	631	8	134	111	1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 서울 65명 * 부산 북구 해뜨락요양병원 * 부산 53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 * 경기 20명, 인천 1명, 충남 *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 * 서울 15명 * 인천 남동구 출덕펄 관련(7 * 인천 7명 * 인천 부평구 온라인투자회 * 인천 1명 * 대전 의정부시 마스터플러: * 경기 58명, 서울 3명 *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 * 서울 38명, 경기 9명, 인천 * 경기도 북부 군부대 관련(3 * 경기 37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정 * 대전 25명, 서울 1명, 전북 * 포천시 소양공동체요양원 * 경기 13명, 서울 4명, 인천 * 대전 일가족 식사 및 지인 * 대전 16명, 충남 2명, 경기 * 부산 부산진구 지인모임/의 * 부산 16명 * 경기 양주시 군부대 관련(6 * 경기 6명
광주	499	57	377	9	362	6	35	30	0	
대전	413	36	246	2	244	0	86	45	1	
울산	156	39	83	16	63	4	21	13	0	
세종	78	17	47	1	45	1	10	4	0	
경기	4,752	645	2,710	29	2,615	66	777	620	8	
강원	232	26	139	17	121	1	39	28	1	
충북	180	37	88	6	75	7	30	25	1	
충남	500	69	303	0	302	1	75	53	0	
전북	153	45	68	1	67	0	24	16	1	
전남	176	40	104	1	101	2	23	9	0	
경북	1,571	61	1,170	566	604	0	200	140	1	
경남	297	79	174	32	139	3	21	23	0	
제주	59	20	13	0	12	1	20	6	0	
검역	1,627	1,627	0	0	0	0	0	0	6	
합계	24,999 (%)	3,481 (13.9)	15,006 (60.0)	5,214 (20.9)	9,560 (38.2)	232 (0.9)	3,564 (14.3)	2,948 (11.8)	110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발생 주요 사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과 지방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발생 주요 사례는 <표 2-5-1~2>과 같다.

<표 2-5-1> 주요 COVID-19 사업장 발생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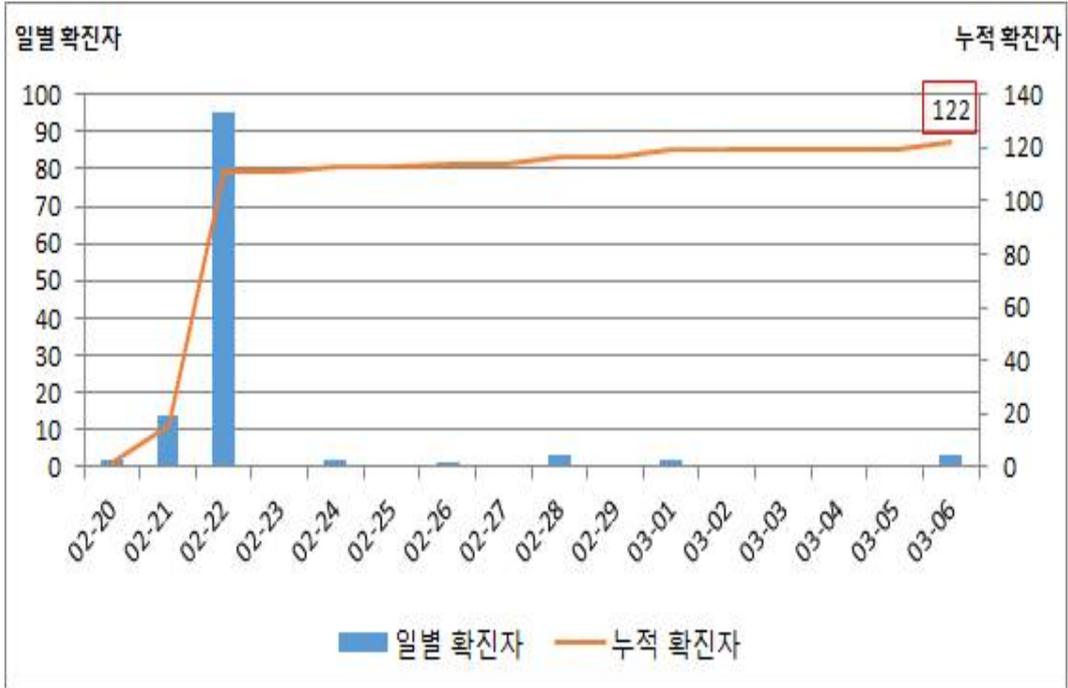
사업장명 (업종/의료기관종별)	사업장소 소재지	발생기간	확진자수	주요 위험요인
청도대남병원 (병원)	경상북도 청도군	2020.02.21.~ 2020.03.07	122명(환자 107명(사망자 7명 포함), 직원 14명, 가족접촉자 1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봉화 푸른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경상북도 봉화군	2020.03.04.~ 2020.03.21	68명(입소자 49명, 종사자 19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구로구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서울특별 시 구로구	2020.03.10.~ 2020.04.03	166명(동일 건물 직원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9명)	밀폐도, 밀집도, 관리도, 활동도, 지속도
한사랑요양병원(요 양병원)	대구광역 시 서구	2020.03.18~2 020.04.23.	128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실요양병원(요양 병원)	대구광역 시 달성군	2020.03.20.~ 2020.04.16	100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경산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2020.03.20.~ 2020.04.16	66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파티마병원 (종합병원)	대구광역 시 동구	2020.03.19.~ 2020.04.21	37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표 2-5-2> 주요 COVID-19 사업장 발생사례 2

사업장명 (업종/의료기관 관종별)	사업장소재지	발생기간	확진자수	주요 위험요인
제이미주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0.03.27.~202 0.04.21	196명(환자 182명, 직원 14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03.31.~202 0.04.16.	69명(환자 26명, 직원 17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6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이태원 클럽 (무도 유흥 주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05.08.~202 0.06.09.	277명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81명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쿠팡 물류센터 (일반 창고업)	경기도 부천시	2020.05.22.~202 0.06.16.	152명(물류센터근무자 84명, 접촉자 68명)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관리도
리치웨이(방 문판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06.04.~202 0.06.29.	210명(방문자 42명, 접촉자 168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성심데이케어 센터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0.06.12.~202 0.06.24.	47명(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전 서구 방문판매 (방문판매업)	대전광역시 서구	2020.06.17.~202 0.06.29.	78명(방문자 35명, 접촉자 43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표 2-6> 청도대남병원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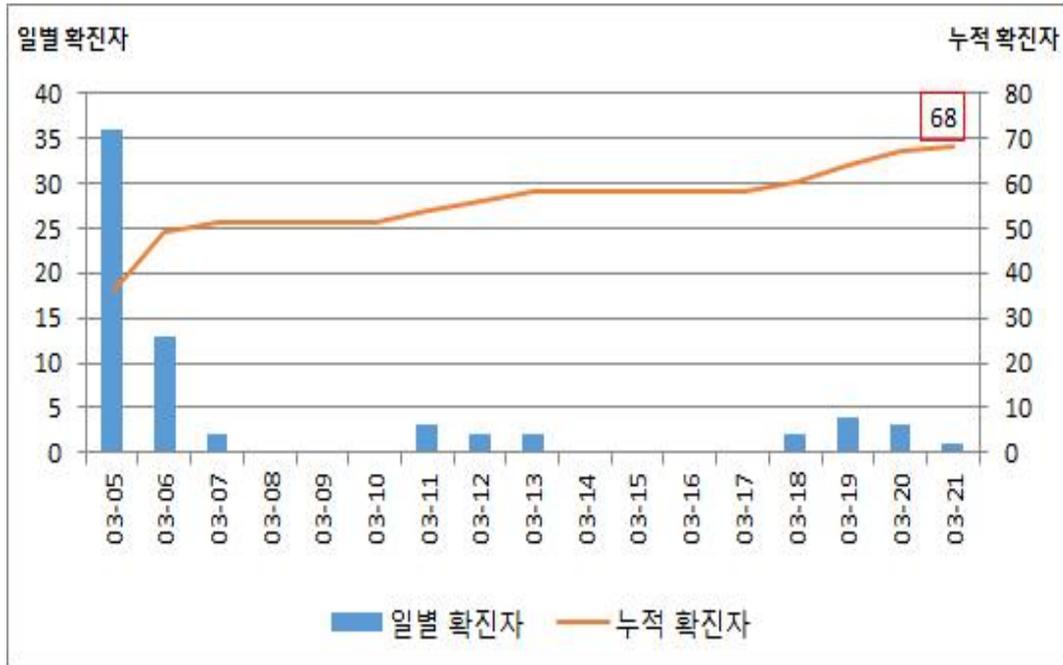
사업장명(의료기관종별)	청도대남병원 (병원)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2.21.~2020.03.06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2.21.~2020.03.07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2월 20일 2명 확진을 시작으로 21일 14명, 22일 95명이 확진되었으며 정신병동 중심으로 발생.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3월 1일 2명의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119명이 확진. 3월 6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청도대남병원관련 확진자는 총 122명(환자 107명(사망자 7명 포함), 직원 14명, 가족접촉자 1명)
주요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 차단 행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대응팀이 경상북도와 함께 감염원을 조사하고 방역조치 시행하고,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전수 검사 진행 병원 내 환자 발생이 정신병동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92명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병원 등 타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였고, 노출된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 중이며, 외래 진료와 신규 입원 중단 청도 대남병원은 청도군보건소와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에텐원(요양원) 등 4개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4개 기관의 직원과 입원 환자 등 총 600명 중 556명에 대한 전수 검사 진행 확진자 중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는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 정신병동 외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퇴원 후 자가격리 조치 2월 28일, 대남병원 정신환자 확진환자 총 60명중 17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중증환자 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경증환자 13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2월 29일, 확진환자(정신환자) 6명 추가 이송(경증환자 4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증환자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남대병원으로 각각 이송)하였고, 대남병원 정신환자 총 60명 중 23명 이송 완료 3월 1일, 확진환자(정신환자) 2명 추가 이송(중증환자 2명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남대병원으로 각각 이송) 대남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이동식 X-ray·산소농도측정기(10대)·인공호흡기(3대)·모니터(2대)를 투입 정신질환자 안전조치를 위한 창문 폐쇄 공사 시행 3월 2일, 확진환자(정신환자) 중 중증환자 2명을 김천의료원으로 이송 대남병원 잔류환자 31명 중 3월 4일자로 15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3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남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 6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0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국립 부곡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전원 조치 완료
대응 합의	전수 검사 시행 후,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정신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타병원 이송 등 적절히 대응



[그림 2-1] 청도대남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7> 봉화 푸른요양원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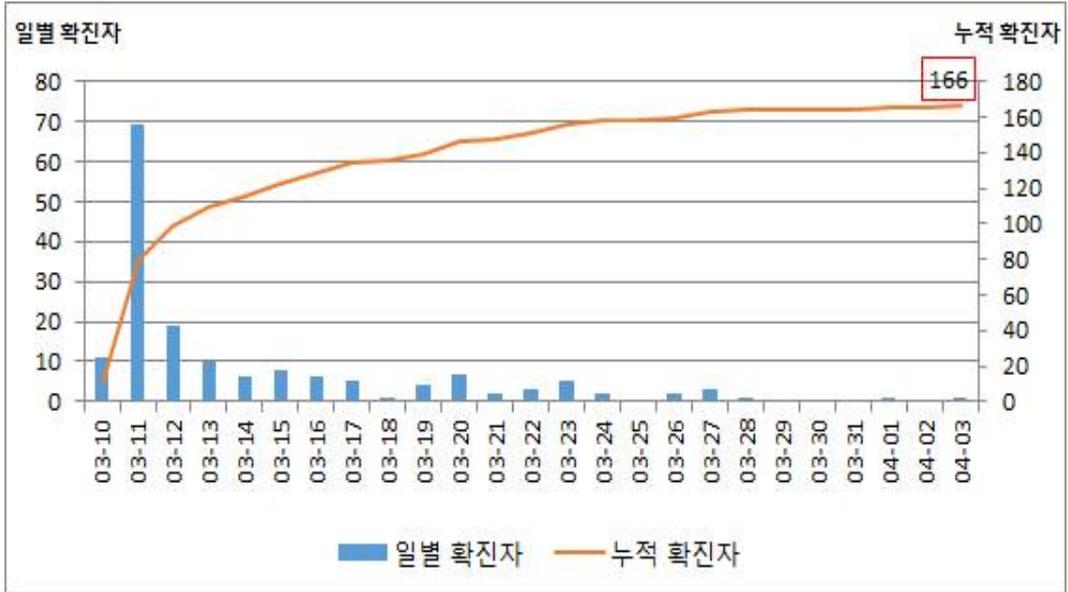
사업장명(업종)	봉화 푸른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05.~2020.03.21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04.~2020.03.21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4일 입소자 4명 확진. 3월 5일 총 36명 확진, 3월 6일 13명, 3월 7일 2명, 3월 11일 3명, 3월 12일 2명, 3월 13일 2명, 3월 18일 2명, 3월 19일 4명, 3월 20일 3명, 3월 21일 1명 총 68명(입소자 49명(98세 여성 사망자 1명(3월 5일 확진, 3월 20일 폐렴으로 사망)(입소자 74명의 66.2%) 포함), 종사자 19명(종사자 43명의 44.2%)이 확진
주요 위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명 전원(입소자 56명, 종사자 60명)에 대해 검체 채취하고 시설 격리 시행. 이 중 2명이 해성병원 입원 상태여서 해성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입원환자와 의료진 전체 검체 채취 • 3월 19일 음성 확인된 53명 중 50명이 시설, 병원, 자택 등에 격리 • 경상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573개소를 예방적 코호트 격리와 함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3월 22일까지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강제조치)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능동적 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시군 담당자 1명과 시설 1명씩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보고 체계 가동
대응 함의	2주간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함으로써 감염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



[그림 2-2] 봉화 푸른요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8> 구로구 콜센터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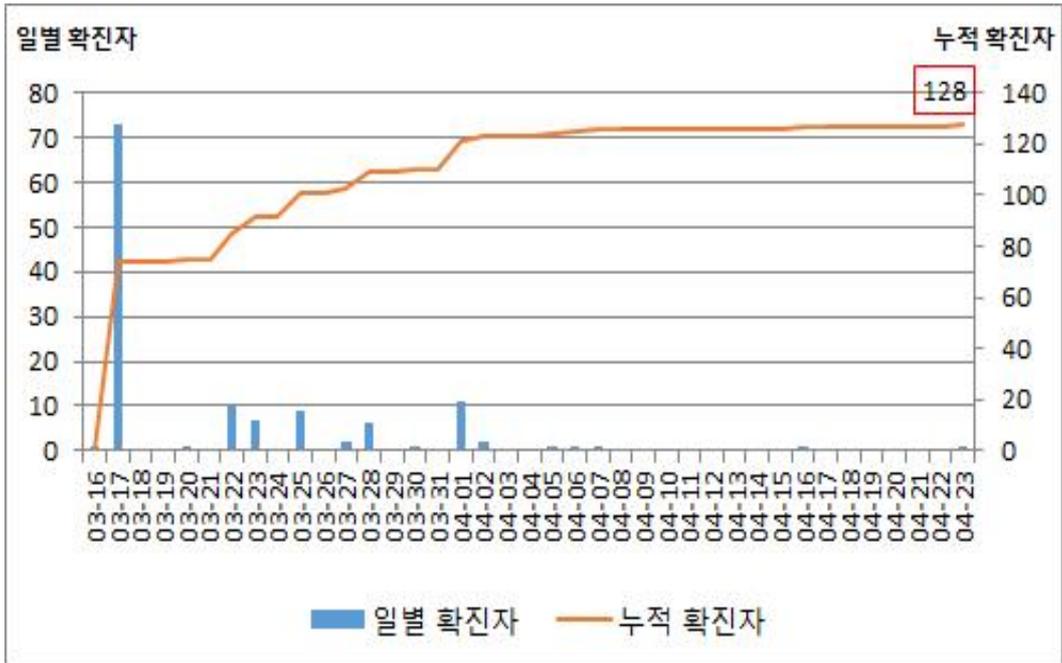
사업장명(업종)	구로구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10.-2020.04.03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3월 10일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확진자 11명을 시작으로 같은 건물 11층, 10층, 9층으로 확산되었고,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부천 생명수교회로 전파되면서 확산. 서울 98명, 인천 20명, 경기 48명이 확진되면서 4월 3일 마지막 확진자 1명을 끝으로 총 166명(동일 건물 직원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9명)이 확진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0일) - 서울 7명, 경기 4명으로 총 11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0일) - 서울 6명,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7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89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54명으로 총 146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1일) - 서울 46명, 인천 14명, 경기 9명 추가 확진으로 총 6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1일) - 서울 1명, 인천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2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90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55명으로 총 148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2일) - 서울 17명, 인천 1명,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9명 확진(직원 80명, 접촉자 19명으로 총 9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2일) - 서울 1명, 경기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3명 확진으로 전체 151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3일) - 서울 4명, 인천 2명, 경기 4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명 확진(직원 82명, 접촉자 27명으로 총 10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3일) - 서울 2명, 경기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5명 확진으로 전체 156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4일) - 경기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6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82명, 접촉자 33명으로 총 115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4일) - 경기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2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1명으로 총 158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5일) - 서울 2명, 경기 6명 확진으로 총 8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6일) - 서울 1명,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2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3명으로 총 160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6일) - 서울 3명, 인천 1명, 경기 2명으로 추가 확진으로 총 6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83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43명으로 총 12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7일) - 경기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3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6명으로 총 163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7일) - 서울 3명, 인천 1명,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5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85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46명으로 총 134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8일) -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전체 164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8일) -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일) - 서울 1명 추가 확진으로 전체 165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19일) - 서울 3명, 경기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4명 확진(동일 건물 직원 11층 87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49명으로 총 13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3일) - 서울 1명 추가 확진으로 전체 166명 확진 	
	주요 위험 요인	밀폐도, 밀집도, 관리도, 활동도, 지속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 진행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7-9층)에 근무 중인 직원 553명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 3월 13일, 9층 콜센터 직원 1명과 10층에 근무하는 타 회사 직원 1명이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 진행. 13-18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18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3월 14일,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교회 종교행사 등을 통해 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 진행 	
	대응 시 문제점	콜센터 특성 상 직원들간의 밀집 정도가 높으며,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후 근무 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그림 2-3] 구로구 콜센터 COVID-19 확진자 수

<표 2-9> 한사랑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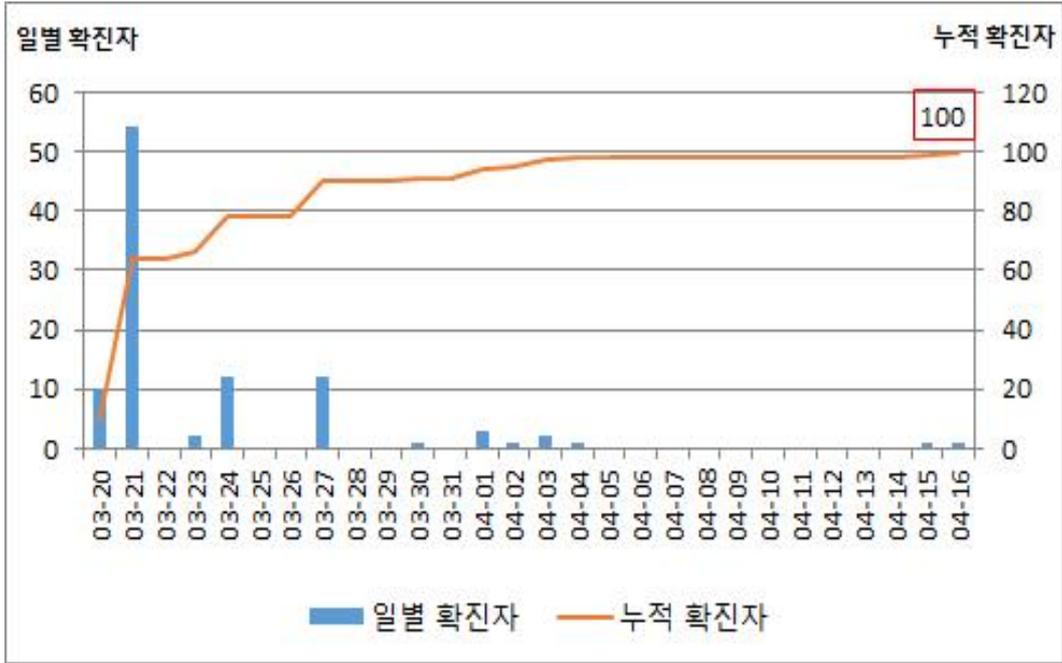
사업장명 (의료기관종별)	한사랑요양병원(요양병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16.~2020.04.23.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18~2020.04.23.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17명과 환자 57명, 총 74명이 3월 18일 확진 판정 받음. 3월 22일 10명, 3월 25일 9명, 4월 1일 11명이 확진 판정 받았으며, 4월 23일 1명 확진을 마지막으로 총 128명이 확진
주요 위험 요소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발열,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
대응 시 문제점	고위험군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였으나, 발생 후 병실은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환자 재배치나 병실 격리 등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음



[그림 2-4] 한사랑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0> 대실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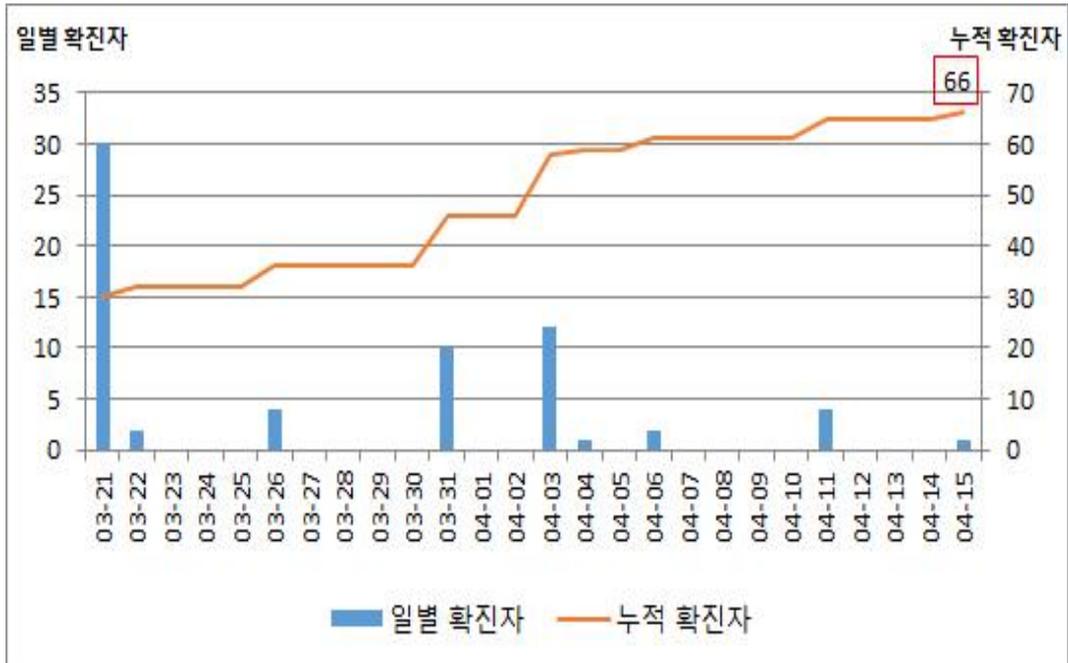
사업장명 (의료기관종별)	대실요양병원(요양병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20.~2020.04.16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20.~2020.03.21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3월 20일 10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3월 21일 54명의 확진자가 발생. 3월 24일 12명, 3월 27일 12명의 확진자 발생. 그 후 4월 16일 마지막으로 1명이 확진. 최종 100명 확진자 발생
주요 감염위험 요소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 6,7층 입원환자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등 방역조치 - 엘리베이터 별도 운행으로 층간이동을 금지 - 동일 건물 내 8층에 소재한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 대구에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병원 근무 간병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대응 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에 위치한 요양병원 자체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 및 방역 미실시 -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왕래하거나, 엘리베이터 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림 2-5] 대실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1> 경산 서요양병원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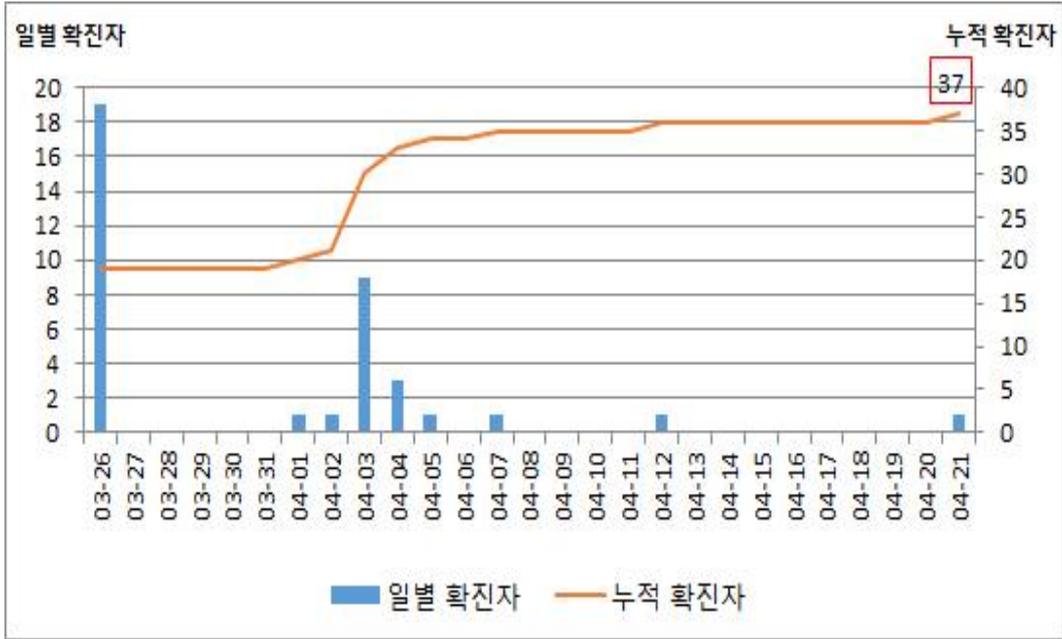
사업장명(의료 기관종별)	경산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21.~2020.04.16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20.~2020.04.16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3월 20일 개인이 실시한 검사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최초 확진. 3월 21 총 30명 확진, 3월 22일 2명, 3월 26일 4명, 3월 31일 10명, 4월 3일 12명, 4월 4일 1명, 4월 6일 2명, 4월 11일 4명, 4월 15일 1명을 마지막으로 최종 66명이 확진
주요 위험 요소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320명(입소자 189명, 종사자 131명) 검사 실시 ▪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설 전체 코호트 조치. 이후 확진자와 증상에 따라 환자 재분류 후 입원격리 시행 ▪ 경산지역 요양병원 11개소 2,915명(환자 1,717명, 종사자 1,198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대응 합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설 전체 코호트 조치를 빨리 시행하였고, 환자 재분류 후 입원격리로 환자간의 감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잘 대응함



[그림 2-6] 경산 서요양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2> 파티마병원 COVID-19 발생현황

사업장명 (의료기관종별)	파티마병원 (종합병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26.~2020.04.21.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19.~2020.04.21.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9명(환자 10명, 직원 5명, 보호자 4명)의 확진자 발생. 확진자들은 대부분 71병동과 72병동에서 발생하였고 4월 21일 마지막으로 1명(의료진)의 확진자 발생하여 총 37명이 확진
주요 위험 요인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대응 방법	확진자들은 대부분 71병동과 72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병동에 대해서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시행
대응 시 문제점	확진자들 주로 발생한 병동폐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의료진을 포함한 확진자들의 병원 내 다른 시설 접촉에 대한 관리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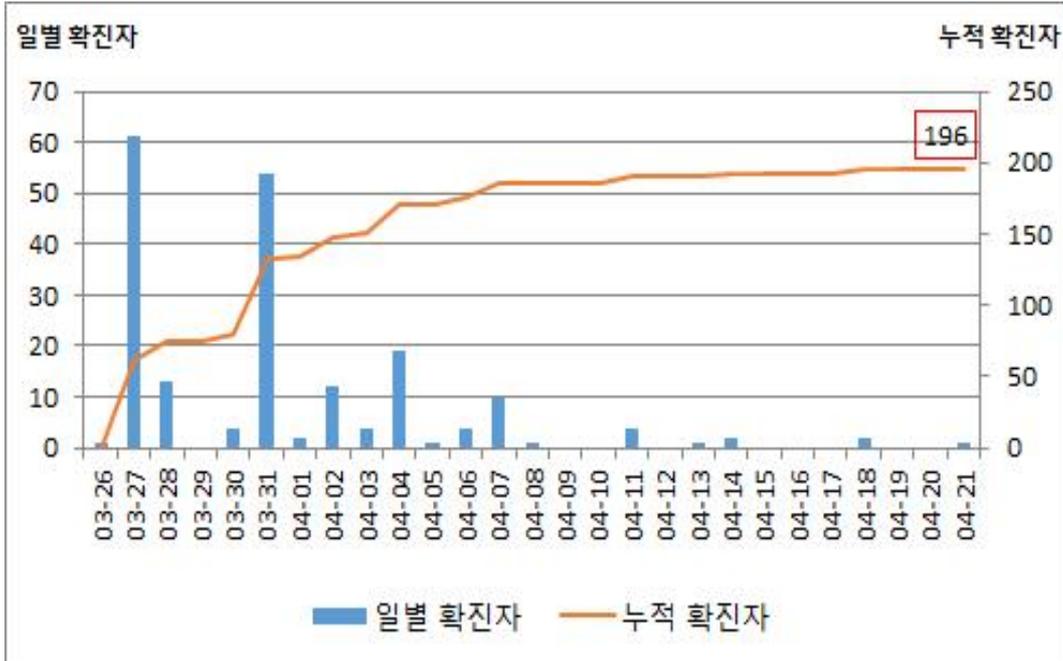


※ 4월 1일과 4월 3일 확진자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것임

[그림 2-7] 파티마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3> 제이미주병원 COVID-19 발생현황

사업장명 (의료기관종별)	제이미주병원(병원)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27.~2020.04.21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 2020.03.28.~2020.04.07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p>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3월 21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3월 24일 입원환자 1명이 증상이 발생하여 3월 26일에 확진. 3월 27일 61명, 3월 31일 54명이 확진 받았으며, 4월 21일 1명을 마지막으로 환자 182명, 직원 14명으로 총 196명 확진자 발생</p>
주요 위험 요소	<p>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p>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건물전체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1주일에 2번씩 재검사 실시 ▪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실시 ▪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159명)에 대해 전수 검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하고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진행
대응 시 문제점	<p>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발열,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제이미주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원은 물론, 소규모의 병원에도 적용시켜 종사자 및 방문객을 통제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 대응책이 나와 있지 않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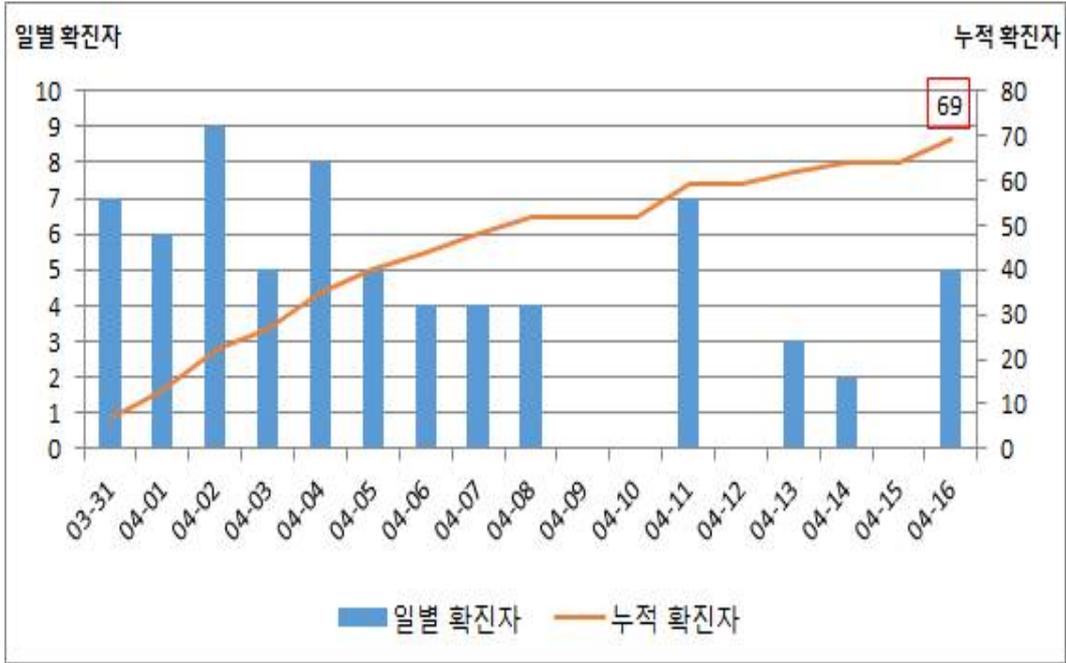


[그림 2-8] 제이미주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4> 의정부 성모병원 COVID-19 발생현황

사업장명 (의료기관종별)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31.~2020.04.16.	
감염유입 및 확산 양상	3월 29일부터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되어 4월 16일까지 환자 26명, 직원 17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6명이 확진되어 총 69명이 확진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31일) -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원환자 4명, 종사자 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7일) -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48명 확진(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일) -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3명 확진 (환자 5명 (사망 1명), 직원 6명, 환자 가족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8일) -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52명 확진(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2일) -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22명 확진(환자 10명, 직원 7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5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1일) - 4월 8일에서 10일까지 자가격리자 중 7명이 추가로 총 59명 확진(환자 21명, 직원 16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3일) -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27명 확진(환자 10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3일) - 환자1, 환자 보호자1, 기타 접촉자1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62명 확진 (환자 22명, 직원 16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4일) -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5명 확진(환자 13명, 직원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 1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4일) - 격리 중이던 2명(환자)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64명 확진 (환자 24명, 직원 16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5일) - 5명(강원에서 발생)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40명 확진(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16일) - 환자2, 직원1,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2이 추가 확진되어 총 69명 확진(환자 26명, 직원 17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6일) -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44명 확진(환자 16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5명)	
주요 위험 요인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대응 방법	입원 중인 환자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하여 발생현황 및 확진자 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의 집단감염관련 표와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이 상이하여 세부 내용에 따름



[그림 2-9] 의정부 성모병원 COVID-19 확진자 수

<표 2-15-1>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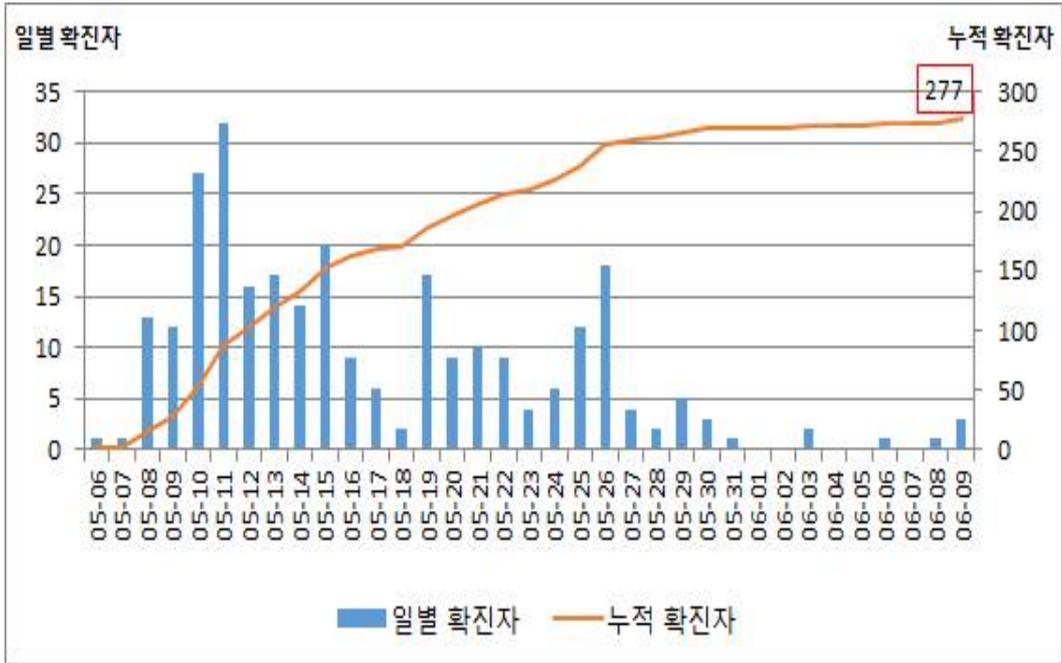
사업장명 (업종)	이태원 클럽 (무도 유흥 주점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5.08.~2020.06.09.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5월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자가 1명 확인되면서 클럽방문자와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대거 감염. 총 277명(클럽 방문자가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181명) 확진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8일) - 경기도 용인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1명 확진(5월 6일) - 지인 1명 확진(5월 7일) - 동료 1명, 이태원 관련 12명(외국인 3명, 군인 1명 포함)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5명의 확진(서울 10명, 인천 1명, 경기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3일) - 17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9명 확진 - 인천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인 학원 강사의 접촉자 8명(학생 6, 동료 1, 학부모 1)이 확진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 - 지역별 : 서울 69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이태원 클럽 방문 7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43명 -연령별 : 19세 이하 11명, 20대 73명, 30대 23명, 40대 6명, 50대 3명, 60세 이상 3명 - 성별 : 남자 102명, 여자 1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9일) -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2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 - 감염경로별 : 지표환자·동료 2명,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4일) - 14명 추가 확진으로 총 133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73명, 경기 25명, 인천 18명, 충북 8명, 부산 4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82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51명 - 연령별 : 18세 이하 13명, 19~29세 83명, 30대 23명, 40대 7명, 50대 4명, 60세 이상 2명 - 성별 : 남자 112명, 여자 2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0일) - 27명 추가 확진으로 총 54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이태원 클럽 직접방문 관련 4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기타 접촉자 1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5일) - 20명 추가 확진으로 총 153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87명, 경기 26명, 인천 22명, 충북 9명, 부산 4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0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63명 - 연령별 : 18세 이하 15명, 19~29세 93명, 30대 27명, 40대 8명, 50대 5명, 60세 이상 5명 - 성별 : 남자 127명, 여자 2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1일) - 32명 추가 확진으로 총 86명 확진 -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 이태원 클럽 방문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6일) - 9명 추가 확진으로 총 16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0명, 경기 31명, 인천 23명, 충북 9명, 부산 4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88명(일부 재분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4명 - 연령별 : 18세 이하 16명, 19~29세 100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6명, 60세 이상 5명 - 성별 : 남자 133명, 여자 2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2일) - 16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이태원 클럽 방문 7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7일) -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168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3명, 경기 33명, 인천 23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전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89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9명 - 연령별 : 18세 이하 17명, 19~29세 102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6명, 60세 이상 5명 - 성별 : 남자 136명, 여자 32명

<표 2-15-2>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2

발 생 현 황	<p>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170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3명, 경기 33명, 인천 25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전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89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81명 - 연령별 : 18세 이하 17명, 19~29세 102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6명, 60세 이상 7명 - 성별 : 남자 137명, 여자 33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225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6명, 경기 58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29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6명, 19~29세 122명, 30대 35명, 40대 19명, 50대 12명, 60세 이상 11명 - 성별 : 남자 178명, 여자 47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 추가 확진으로 총 18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7명, 경기 37명, 인천 33명, 충북 9명, 부산 4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94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0명, 19~29세 111명, 30대 27명, 40대 13명, 50대 7명, 60세 이상 9명 - 성별 : 남자 150명, 여자 37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명 추가 확진으로 총 23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2명, 경기 59명, 인천 45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41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8명, 19~29세 124명, 30대 35명, 40대 22명, 50대 16명, 60세 이상 12명 - 성별 : 남자 183명, 여자 54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명 추가 확진으로 총 196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0명, 경기 41명, 인천 35명, 충북 9명, 부산 4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5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01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3명, 19~29세 116명, 30대 28명, 40대 13명, 50대 7명, 60세 이상 9명 - 성별 : 남자 159명, 여자 37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명 추가 확진으로 총 255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27명, 경기 59명, 인천 45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59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8명, 19~29세 128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18명, 60세 이상 23명 - 성별 : 남자 192명, 여자 63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추가 확진으로 총 206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1명, 경기 45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5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11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5명, 19~29세 118명, 30대 29명, 40대 17명, 50대 8명, 60세 이상 9명 - 성별 : 남자 165명, 여자 41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추가 확진으로 총 25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29명, 경기 59명, 인천 47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63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8명, 19~29세 129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19명, 60세 이상 25명 - 성별 : 남자 194명, 여자 65명
	<p>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명 추가 확진으로 총 215명 확진 (인천시 비전프라자 탑코인 노래방 방문 확진자(5.19일 확진, 택시기사, 돌잔치에서 사진기사로 활동)가 돌잔치 방문자 9명에게 전파) - 지역별 : 서울 102명, 경기 52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5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20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5명, 19~29세 120명, 30대 31명, 40대 17명, 50대 11명, 60세 이상 11명 - 성별 : 남자 170명, 여자 45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261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1명, 경기 59명, 인천 47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65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8명, 19~29세 130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19명, 60세 이상 26명 - 성별 : 남자 196명, 여자 65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추가 확진으로 총 21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3명, 경기 55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경남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5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24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5명, 19~29세 121명, 30대 32명, 40대 18명, 50대 12명, 60세 이상 11명 - 성별 : 남자 173명, 여자 46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추가 확진으로 총 266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3명, 경기 59명, 인천 49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0명 - 연령별 : 18세 이하 28명, 19~29세 131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21명, 60세 이상 28명 - 성별 : 남자 200명, 여자 66명

<표 2-15-3> 이태원 클럽 COVID-19 발생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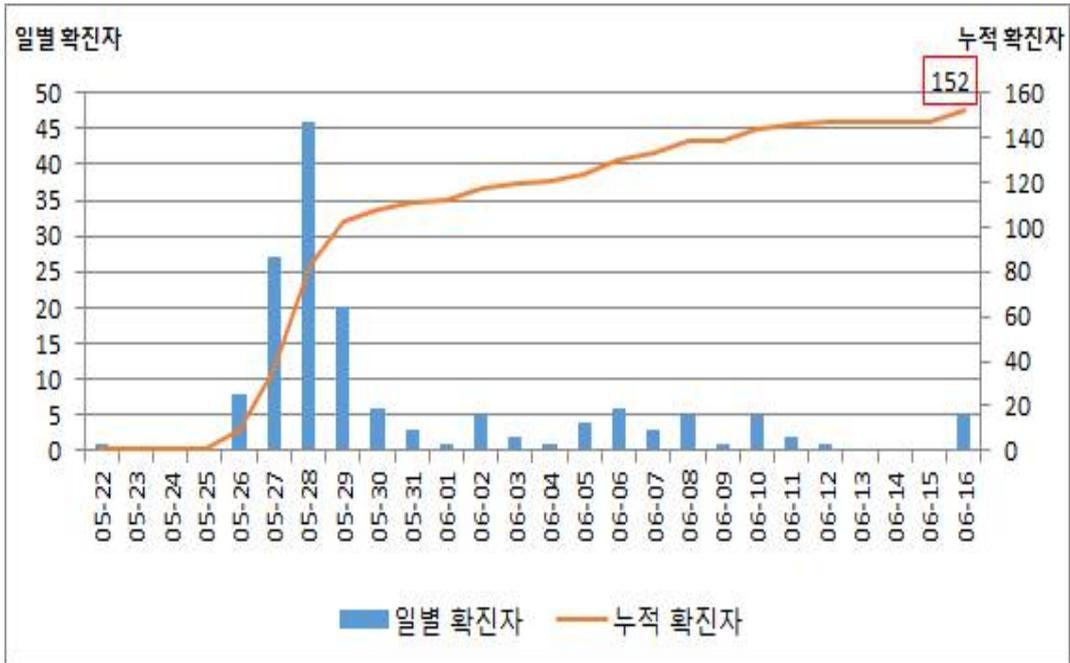
발생현황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3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26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3명, 경기 59명, 인천 52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3명 - 연령별 : 18세 이하 30명, 19~29세 132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21명, 60세 이상 28명 - 성별 : 남자 202명, 여자 67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273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5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7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3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270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3명, 경기 59명, 인천 53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4명 - 연령별 : 18세 이하 30명, 19~29세 132명, 30대 36명, 40대 23명, 50대 21명, 60세 이상 28명 - 성별 : 남자 202명, 여자 68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274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6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8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3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27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4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76명 	<p>*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27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81명
주요 위험 요인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 유흥시설·주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일행이 아닌 사람과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 책임자와 종사자는 시설 환기를 자주 시키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며,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할 것을 요청 인천광역시외의 경우 클럽 관련 전파가 코인노래방, PC방, 택시 탑승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부는 5월 6일~19일 사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연수구 서울휘트니스 인천점(세경아파트상가 2층), 미추홀구 세움학원(금강빌딩 3층)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 인천광역시 비전프라자 빌딩 내 코인노래방 및 PC방에 대한 환경 위험평가 결과, 좁고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를 통해 비말이 많이 생성되어 전파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모든 시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시행 	



[그림 2-10] 이태원 클럽 COVID-19 확진자 수

<표 2-16> 쿠팡 물류센터 COVID-19 발생현황

사업장명(업종)	쿠팡 물류센터 (일반 창고업)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5.22~2020.06.16.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가 미추홀구 보습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물류센터로 이어지면서 첫 확진자 발생. 6월 16일 마지막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역별로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이 발생하였고, 감염경로별로는 물류센터근무자 84명, 접촉자 68명으로 총 152명이 확진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2일) - 경기도 부천시 라온파티를 방문한 첫 확진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4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20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55명, 인천 44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7명, 접촉자 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6일) - 8명 추가 확진으로 총 9명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5일) - 4명 추가 확진으로 총 124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57명, 인천 46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9명, 접촉자 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7일) - 27명 추가 확진으로 총 36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10명, 인천 22명, 서울 4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직원 32명, 접촉자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6일) -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130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0명, 인천 49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9명, 접촉자 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8일) - 46명 추가 확진으로 총 82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27명, 인천 38명, 서울 17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직원 63명, 접촉자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7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133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3명, 인천 49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9명, 접촉자 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9일) - 20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2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42명, 인천 41명, 서울 19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직원 72명, 접촉자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8일) - 5명 추가 확진으로 총 138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5명, 인천 52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3명, 접촉자 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30일) -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8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47명, 인천 42명, 서울 19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3명, 접촉자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9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39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4명, 인천 54명, 서울 21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3명, 접촉자 5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31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1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48명, 인천 44명, 서울 19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5명, 접촉자 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0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5명이 확진되어 총 144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6명, 인천 55명, 서울 23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3명, 접촉자 6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2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50명, 인천 43명, 서울 19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4명, 접촉자 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1일)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되어 총 146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6명, 인천 56명, 서울 24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3명, 접촉자 6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일) - 5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7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54명, 인천 44명, 서울 19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4명, 접촉자 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2일) -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되어 총 147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7명, 인천 56명, 서울 24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3명, 접촉자 6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3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9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54명, 인천 45명, 서울 20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74명 , 접촉자 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6일) - 5명 추가 확진으로 총 152명 확진 - 지역별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감염경로별 : 물류센터근무자 84명, 접촉자 68명 	
	주요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관리도 	
	대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2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마스크 착용 필수) 받은 후 자가격리, 가족 중 학생 및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족 중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근무제한을 요청 ■ 해당 물류센터에서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자가격리 및 검사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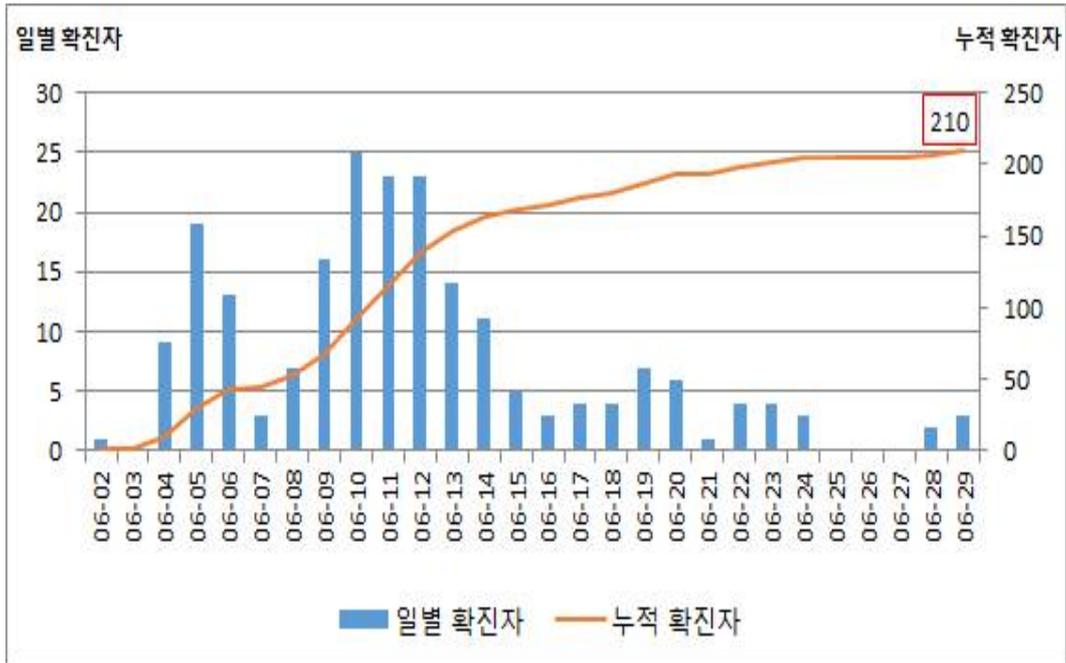
[그림 2-11] 쿠팡 물류센터 COVID-19 확진자 수

<표 2-17-1> 리치웨이 COVID-19 발생현황 1

사업장명(업종)	리치웨이(방문판매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6.04.~2020.06.29.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6월 2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이 발생. 감염경로별로 방문자 42명, 접촉자 168명으로 총 210명이 확진. 추가 전파는 교회 및 어학원, 쉼터 등 다양.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4일) - 6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명 확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0일) - 25명 추가 확진으로 총 93명 확진 - 역학조사 결과 SJ 투자회사 콜센터에서 6.7일 확진관정을 받은 직원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어 SJ 투자회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 8명도 리치웨이 관련으로 재분류 - 지역별 : 서울 56명, 경기 24명, 인천 9명, 충남 2명, 강원 2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6명, 접촉자 5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5일) - 19명 추가 확진으로 총 2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1일) - 23명 추가 확진으로 총 116명 확진 - 역학조사 결과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 확진자(6.3일)가 5.21일 리치웨이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 확진자 9명도 리치웨이 관련으로 재분류 - 지역별 : 서울 64명, 경기 30명, 인천 18명, 충남 2명, 강원 2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9명, 접촉자 7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6일) - 13명 추가 확진으로 총 4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2일) - 23명이 추가 확진으로 총 13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78명, 경기 39명, 인천 18명, 충남 2명, 강원 2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0명, 접촉자 9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7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45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8명, 충남 2명, 강원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3일) - 14명 추가 확진으로 총 153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86명, 경기 43명, 인천 20명, 충남 2명, 강원 2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0명, 접촉자 11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8일) - 7명 추가 확진으로 총 5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31명, 경기 10명, 인천 8명, 충남 2명, 강원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3명, 접촉자 1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4일) - 1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64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89명, 경기 50명, 인천 20명, 강원 3명, 충남 2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0명, 접촉자 12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9일) - 16명 추가 확진으로 총 68명 확진 - 그 중 리치웨이를 방문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중국동포교회 쉼터 거주자가 6.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동일 쉼터 거주자 3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추가로 확진 - 지역별 : 서울 40명, 경기 17명, 인천 8명, 충남 2명, 강원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3명, 접촉자 35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5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69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2명, 경기 50명, 인천 21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28명

<표 2-17-2> 리치웨이 COVID-19 발생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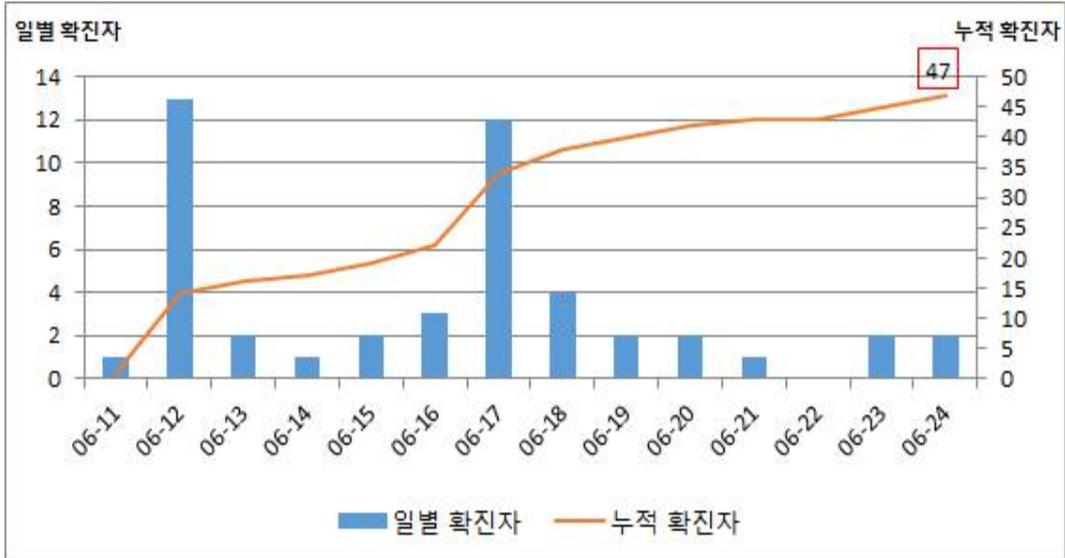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6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7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2명, 경기 53명, 인천 21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3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3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0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4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6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7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76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6명, 경기 53명, 인천 21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35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4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05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7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6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8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80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99명, 경기 54명, 인천 21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3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3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02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4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6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9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8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3명, 경기 55명, 인천 23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4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4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05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7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6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0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93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7명, 경기 56명, 인천 24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5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07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9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6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1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94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08명, 경기 56명, 인천 24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5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9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210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강원 4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2명, 접촉자 168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2일) - 격리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98명 확진 - 지역별 : 서울 112명, 경기 56명, 인천 24명, 강원 3명, 충남 3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41명, 접촉자 157명	
	주요 위험요인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대응 방법	업체 직원과 업체 방문자에 대한 검사진행하였고,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촌빌딩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	



[그림 2-12] 리치웨이 COVID-19 확진자 수

<표 2-18> 성심데이케어센터 COVID-19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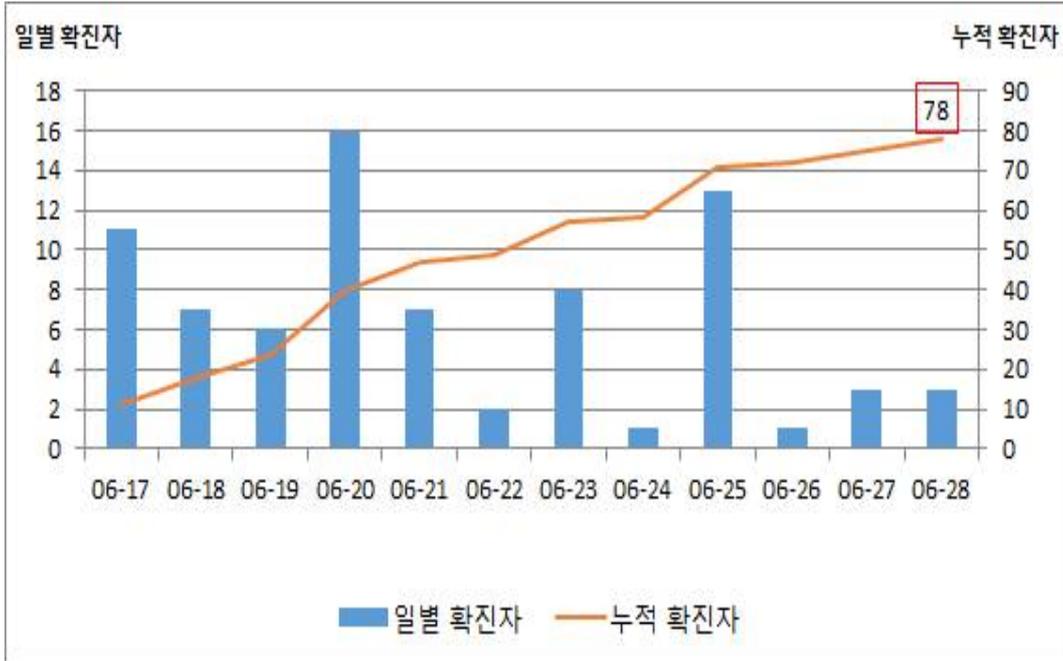
사업장명 (업종)	성심데이케어센터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도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6.12.~2020.06.24.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6월 1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지속되었고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으로 총 47명 확진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2일) - 6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12일 직원 2명, 이용자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4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12명, 직원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8일) -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38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3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16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12명, 직원 2명, 가족 및 친척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9일) -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40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4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17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13명, 직원 2명, 가족 및 친척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0일) -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42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5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19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14명, 직원 2명, 가족 및 기타 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1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43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6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22명 확진 - 현황 :이용자 16명, 직원 2명, 가족 및 기타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3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45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7일) -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34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3명, 가족 및 기타 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4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47명 확진 - 현황 :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주요 위험요인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응 방법 ▪ 접촉자 포함 88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13명을 제외한 46명은 음성으로 확인 ▪ 고령층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이용시설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	



[그림 2-13] 성심데이케어센터 COVID-19 확진자 수

<표 2-19> 대전 서구 방문판매 COVID-19 발생현황

사업장명(업종)	대전 서구 방문판매 (방문판매업)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06.17.~2020.06.29.	
감염유입 및 확산양상	6월 17일 대전시에서 방문판매 관련하여 11명이 확진되었고, 6월 28일까지 지속. 총 7개 지역으로 대전 53명, 충남 10명, 서울 8명, 전북 3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이 확진 받았으며 방문자 35명, 접촉자 43명으로 총 78명이 확진	
발생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7일) - 대전시에서 방문판매 관련 11명 확진 - 현황 : 방문자 4명, 접촉자 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3일) - 8명 추가 확진으로 총 57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39명, 충남 8명, 서울 4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1명, 접촉자 2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8일) - 7명 추가 확진으로 총 18명 확진 - 현황 : 방문자 12명, 접촉자 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4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58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40명, 충남 8명, 서울 4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1명, 접촉자 2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19일) - 6명 추가 확진으로 총 24명 확진 - 현황 : 방문자 12명, 접촉자 1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5일) - 13명 추가 확진으로 총 71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51명, 충남 9명, 서울 5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5명, 접촉자 3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0일) - 16명 추가 확진으로 총 40명 확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6일) - 1명 추가 확진으로 총 72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52명, 충남 9명, 서울 5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5명, 접촉자 37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1일) - 7명 추가 확진으로 총 47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32명, 광주 1명, 전북 2명, 서울 4명, 경기 1명, 세종 2명, 충남 5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7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75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52명, 충남 10명, 서울 6명, 전북 3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5명, 접촉자 4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2일) - 2명 추가 확진으로 총 49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34명, 충남 5명, 서울 4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월 28일) - 3명 추가 확진으로 총 78명 확진 - 지역별 : 대전 53명, 충남 10명, 서울 8명, 전북 3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 감염경로별 : 방문자 35명, 접촉자 43명
	주요 위험 요인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대응 방법	밀접·밀폐·밀집의 3가지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 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	



[그림 2-14] 대전 서구 방문판매 COVID-19 확진자 수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집단 분류 국내외 사례

1)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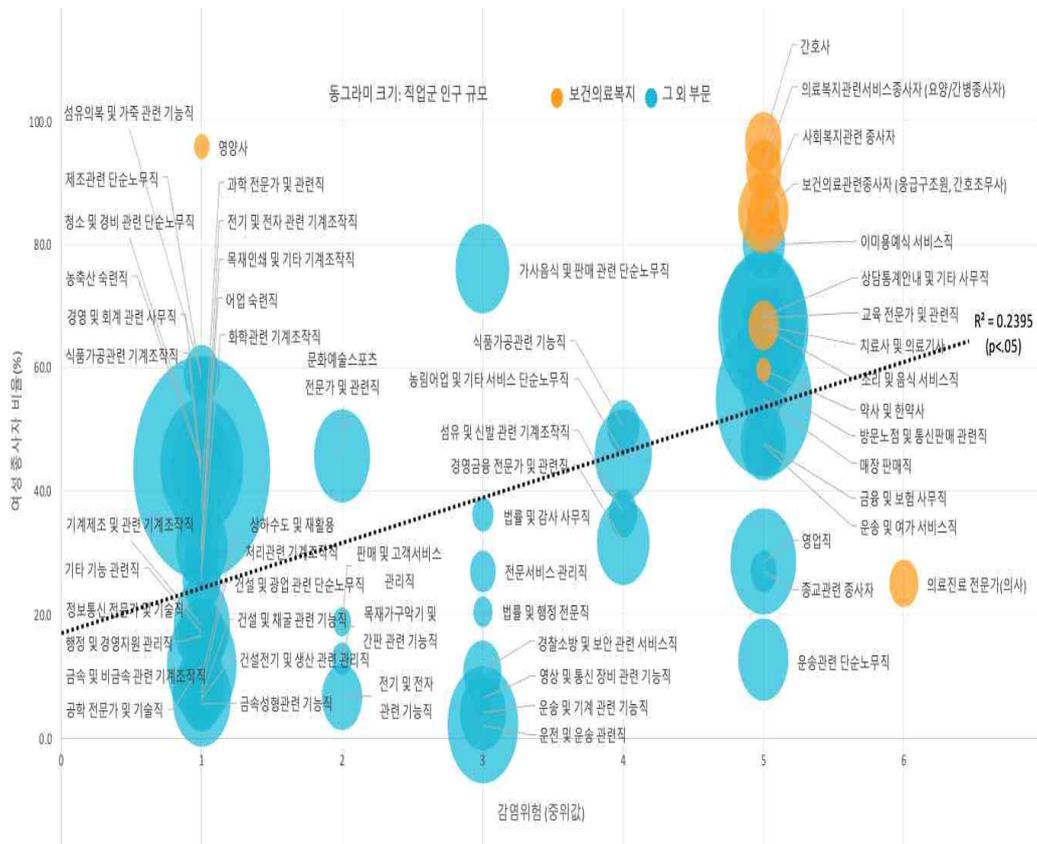
2017년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연계하여 코로나19 취약직종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Lee & Kim, 2020). 근로환경조사는 ‘귀하가 하는 일에는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환자나 대중 접촉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①근무시간 내내 ②거의 모든 근무시간 ③근무시간 3/4 ④근무시간 절반 ⑤근무시간 1/4 ⑥거의 노출 안 됨 ⑦ 절대 노출 안 됨’의 7단계 답변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출시간에 따라 0점 ~ 6점을 할당하여 직업군별로 감염위험 점수(중위값)를 산출하여 사용했다. 다음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각 직업군별 노동인구 규모를 산출했다.

<표 2-20>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중위값)와 종사자 인구 규모 추정

부문	표준직업분류	위험점수 ¹	전체(명) ²	여성(%) ²
보건 의료 복지	의료진료 전문가 (의사)	6	145,878	25.1
	약사 및 한약사	5	35,541	59.7
	간호사	5	227,168	96.5
	치료사 및 의료기사	5	158,096	66.7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5	186,996	84.9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5	430,185	85.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요양/간병종사자)	5	222,830	92.3
그 외	영양사	1	37,812	95.8
	종교관련 종사자	5	111,556	26.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	1,235,726	67.9
	금융 및 보험 사무직	5	354,937	47.8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5	313,483	68.1
	이미용예식 서비스직	5	308,603	79.9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5	249,609	47.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1,415,853	66.6
	영업직	5	737,803	28.6
	매장 판매직	5	1,576,184	54.9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5	384,429	57.6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5	426,099	1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4	473,382	31.8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4	178,102	50.4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4	138,160	36.4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4	544,583	45.9
	전문서비스 관리직	3	109,368	27.0
	법률 및 행정 전문직	3	64,662	20.5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	81,923	36.2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	245,764	10.9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	358,365	4.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3	65,052	6.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	868,592	2.1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3	497,271	76.0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직	2	54,666	18.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	547,027	46.7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	73,208	12.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2	279,374	6.6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	74,630	16.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	45,269	6.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	99,892	36.8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	367,406	16.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	846,303	11.8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	3,171,132	43.7
	농축산 숙련직	1	1,155,422	44.3
	어업 숙련직	1	58,959	26.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	221,280	59.0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1	218,049	5.6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	595,404	6.4
	기타 기능 관련직	1	148,804	17.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1	121,563	41.4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	239,152	25.5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1	254,918	12.7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1	542,978	18.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1	440,371	30.9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	37,583	9.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1	197,719	30.3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1	339,473	7.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1	123,769	57.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	615,971	44.7	
입업 숙련직	0	5,351	13.4	

* 자료: ¹직업군별 감염위험 중위값, 제 5차 근로환경조사(2017) ²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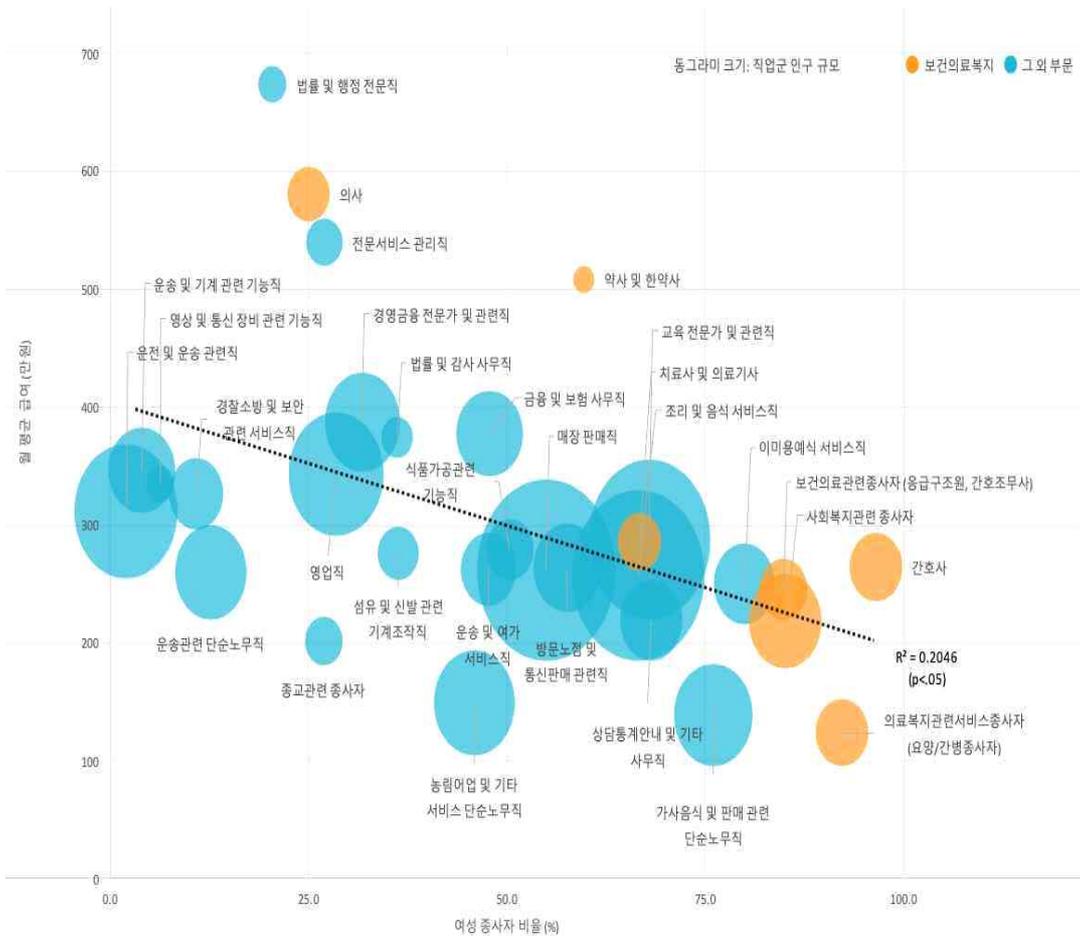
[그림- 2-15]을 보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감염위험이 크다는 점과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2-15]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와 여성 비율(%)

한편 감염위험 점수 3점 이상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여성 종사자 비율과 월 평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군일수록 월 평균 임금이 낮았는데, 특히 요양/간병종사자는 92.3%가 여성이며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만 월 평균 소득은 124만원으로 매우 낮았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예: 가사

및 육아도우미) 또한 종사자의 76%가 여성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139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패널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2-16] 감염 고위험 직업군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월 평균 급여

젠더 불평등은 고용 형태에서도 관찰된다. 제 5차 근로환경조사(2017)에서 감염 고위험 직업군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복지와 그 외 업종 모두에서 남성에서 자영업자, 사업주 비중이 더 높고, 여성에서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2-21>.

<표 2-21> 고위험 직업군의 고용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빈도)

부문	고용형태	전체		남자		여자	
		N*	%	N*	%	N*	%
보건 의료 복지	사업주	106,472	6.1	71,984	21.4	34,488	2.4
	자영업자	41,606	2.4	28,353	8.4	13,253	0.9
	무급가족노동자	4,104	0.2	0	0.0	4,104	0.3
	상용직	1,356,084	77.4	216,140	64.2	1,139,944	80.5
	임시직	202,193	11.5	19,390	5.8	182,803	12.9
	일용직	42,401	2.4	621	0.2	41,780	2.9
	전체	1,752,860	100	336,488	100	1,416,372	100
그 외 부문	사업주	1,033,972	8.2	704,234	10.8	329,739	5.4
	자영업자	2,651,095	21.0	1,534,335	23.5	1,116,760	18.4
	무급가족노동자	506,650	4.0	57,424	0.9	449,226	7.4
	상용직	6,406,690	50.9	3,536,719	54.2	2,869,970	47.2
	임시직	1,603,717	12.7	540,751	8.3	1,062,966	17.5
	일용직	395,896	3.1	146,284	2.2	249,612	4.1
	전체	12,598,019	100.0	6,519,747	100.0	6,078,272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 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2-22>.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하였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였다.

<표 2-2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안)

주요 지표	위험도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표 2-2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결과

구분	시설	
고위험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감성주점,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뷔페
중위험	학원(300인 미만)	멀티방·DVD방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게임장·오락실	건설현장 구내식당
	일반주점	기업 내 구내식당
	워터파크	국제·연안여객선
	종교시설	고시원
	결혼식장(실내)	견본주택
	공연장(뮤지컬, 연극)	야구장, 축구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물류창고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지노업장	카페
	키즈카페	장례식장
놀이공원		
저위험	쇼핑몰(백화점, 아울렛 등)	낚시어선업
	이·미용실, 네일숍, 마사지숍	고속도로휴게소
	도서관(열람실)	스터디카페
	숙박업소	안마원·안마시술소
	박물관·미술관	슈퍼마켓
	소매점(안경점, 문구점, 옷가게 등)	레저선박
	식당(배달, 포장)	산후조리원
	도서관(대여)	수산물냉동·냉장시설
	야영장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다.

*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표 2-24>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구분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주요 지표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보조 지표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부록 2)’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2)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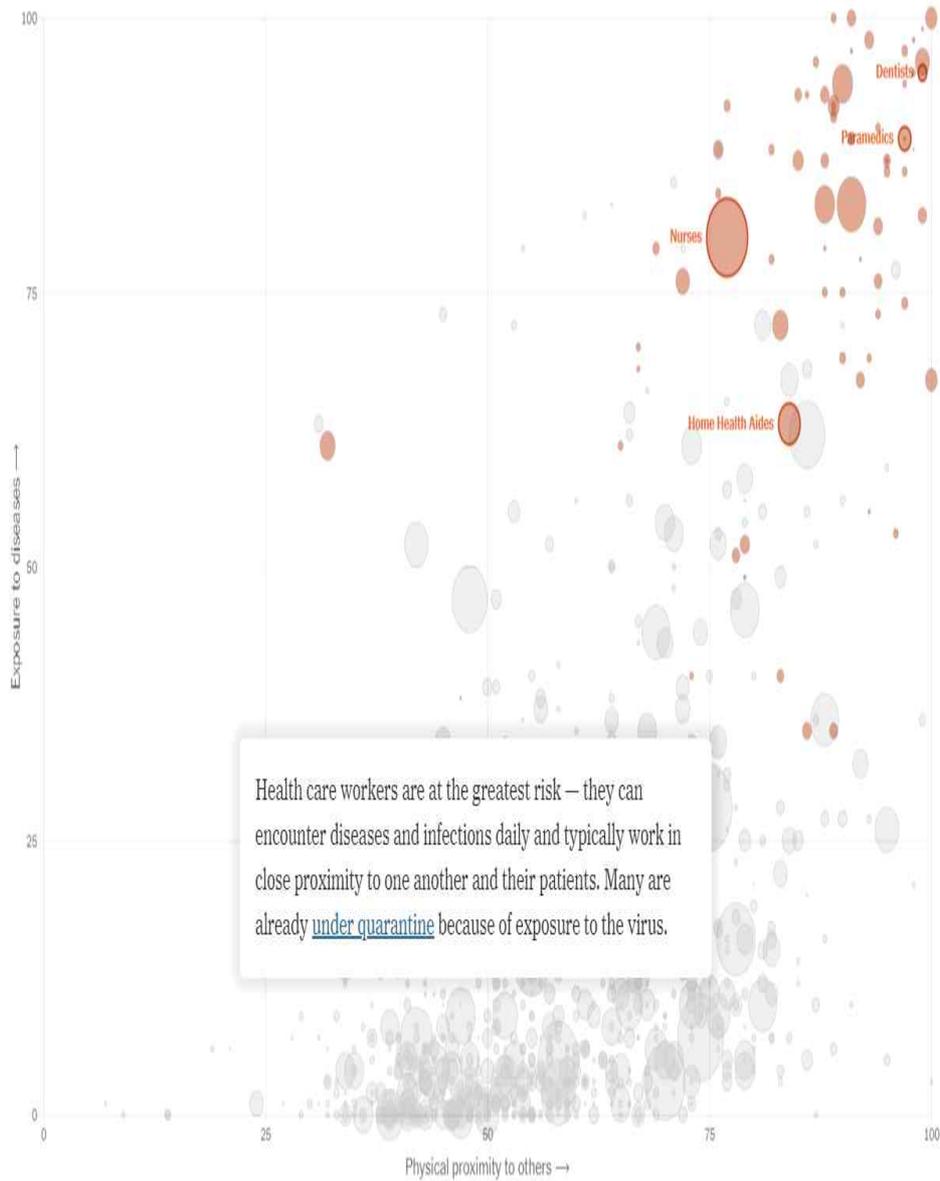
미국의 일간지 'New York Times'(뉴욕타임즈, 이하 NYT)가 3월15일 각 '직업군'에 따른 '소득'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²⁾. 결과표로 제시한 자료에서 가로축(X)은 타인과의 접근 거리를 의미하며, 세로축(Y)은 질병과 감염의 노출 수준을 의미한다. 아래 도표에서 버블(불방울)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양한 직업의 위험 수준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O*NE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이거나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중위 소득 이하의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재택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소득 하위 25%의 노동자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9.2%에 불과하였으며, 질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잃지 않기 위해 직장으로 향하고 있어 이는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위험한 직종 순위로는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고 환자와 가장 근접하여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 대상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응급구조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는 교사 및 출납원,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등 서비스업 직종이 위험 순위로 나타났다.

2)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3/15/business/economy/coronavirus-worker-risk.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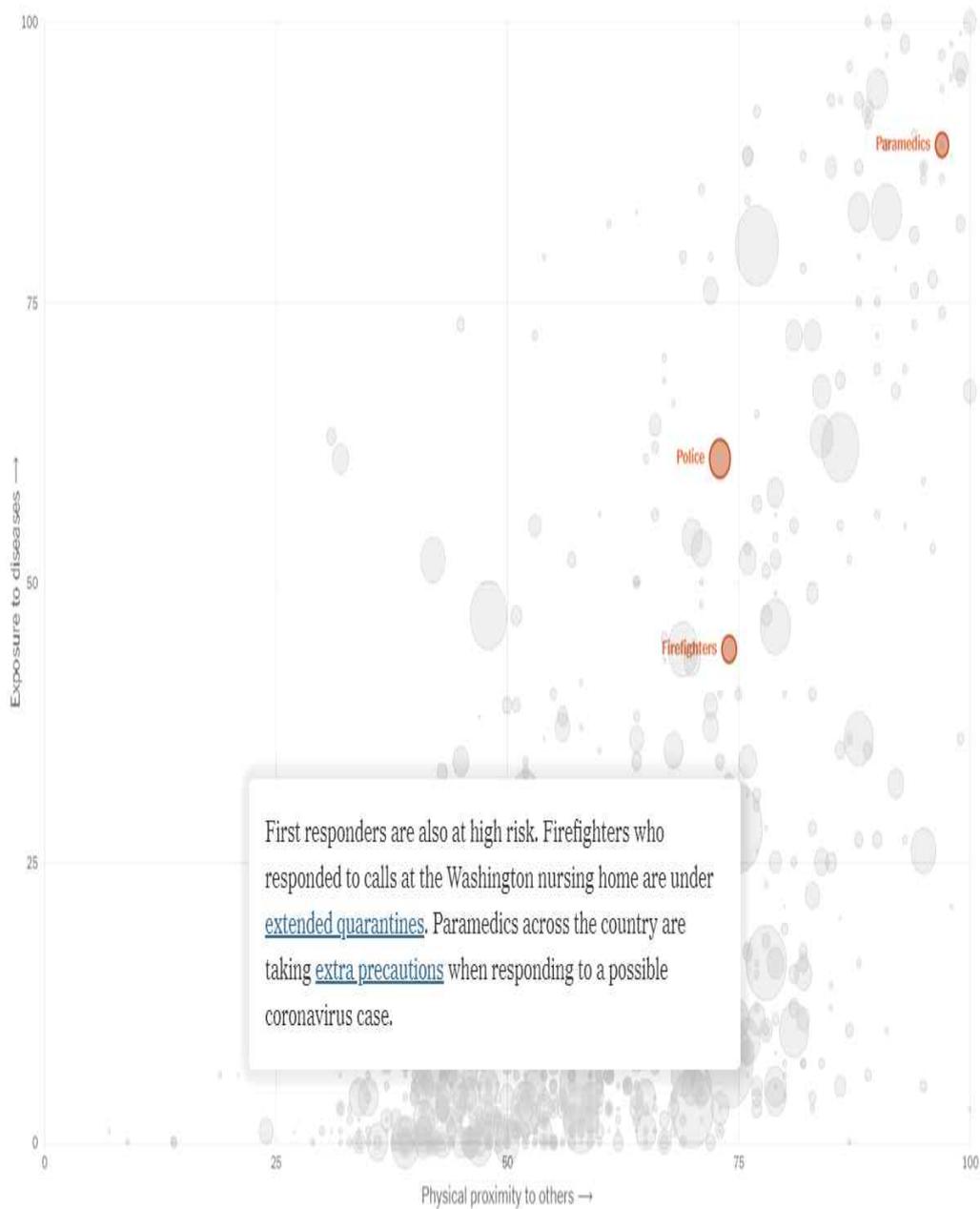
유급 휴직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비율			소득 백분위별 재택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비율	
Group	Sick leave	Personal leave	소득 백분위수	백분율
All workers	74%	45%	하위 25	9.2%
Nurses	92%	68%	25-50	20.1%
Teachers	86%	62%	50-75	37.3%
Service industry workers	56%	28%	상위 25	61.5%
Sales workers	65%	40%		
Full-time workers	85%	54%		
Part-time workers	40%	18%		
Top25 percent of earners	92%	63%		
Bottom 25 percent of earners	4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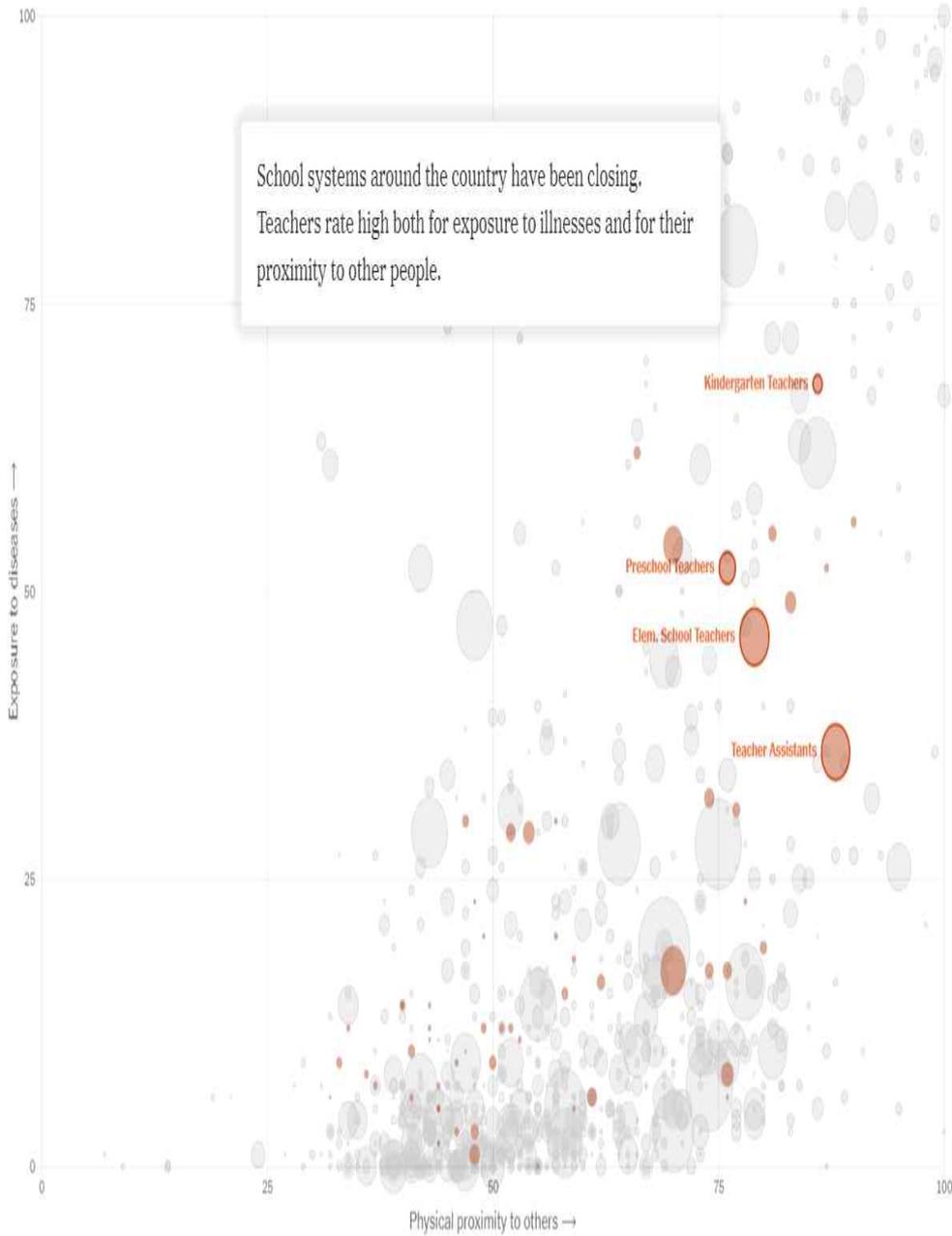
[그림 2-17] 의료 종사자들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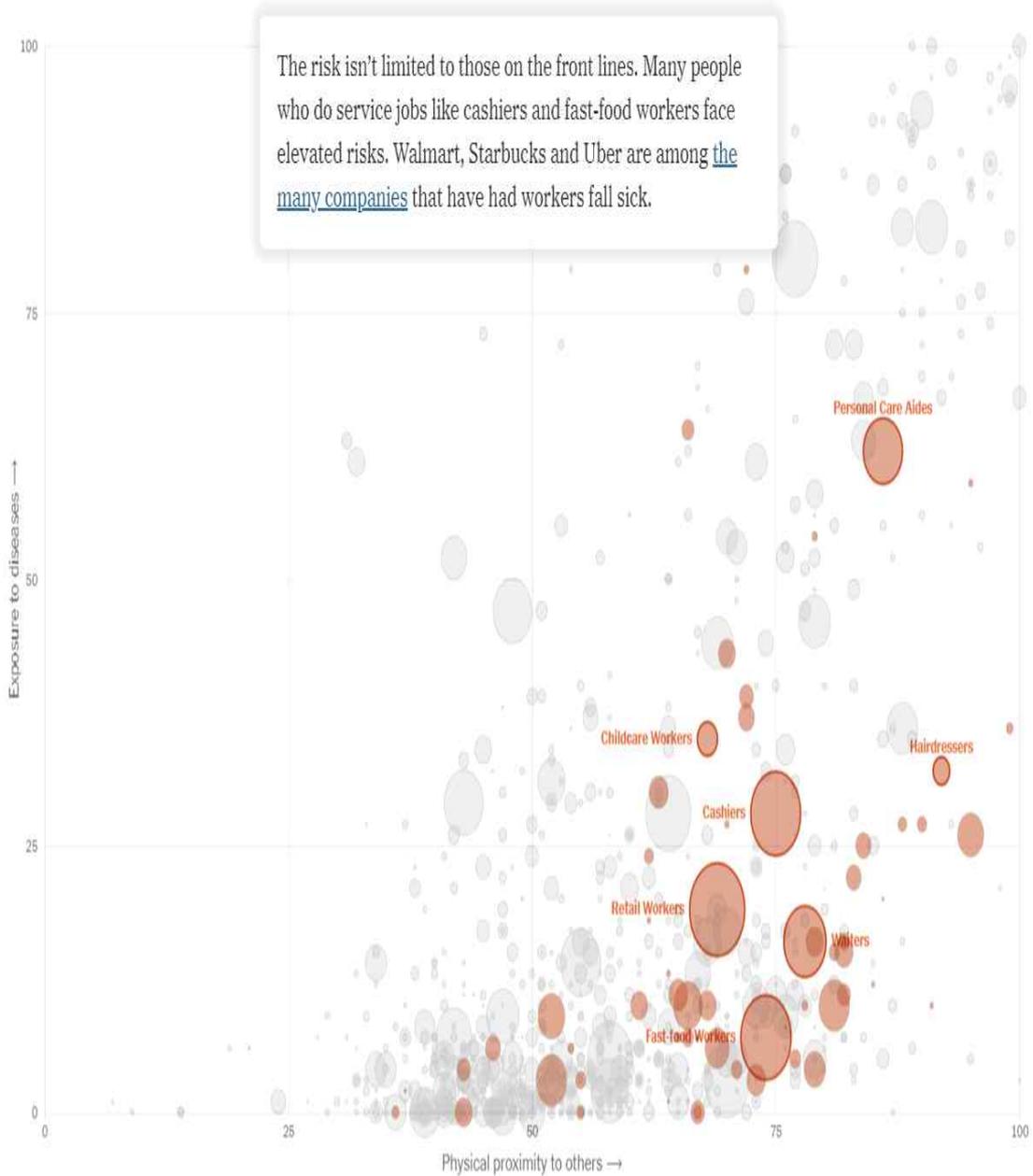
[그림 2-18] 간병인 및 재택 건강보조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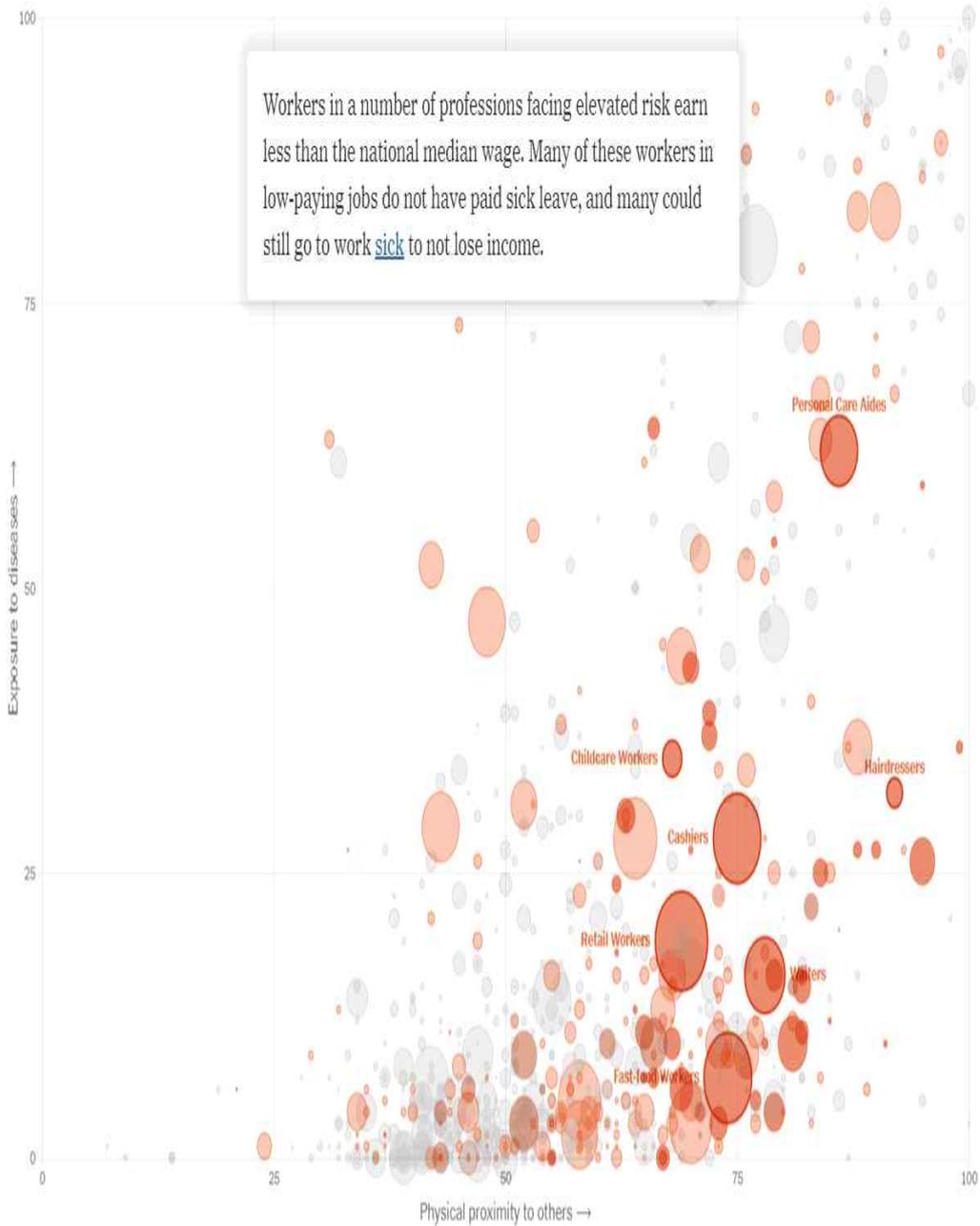
[그림 2-19] 소방관 및 구급대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그림 2-20] 교사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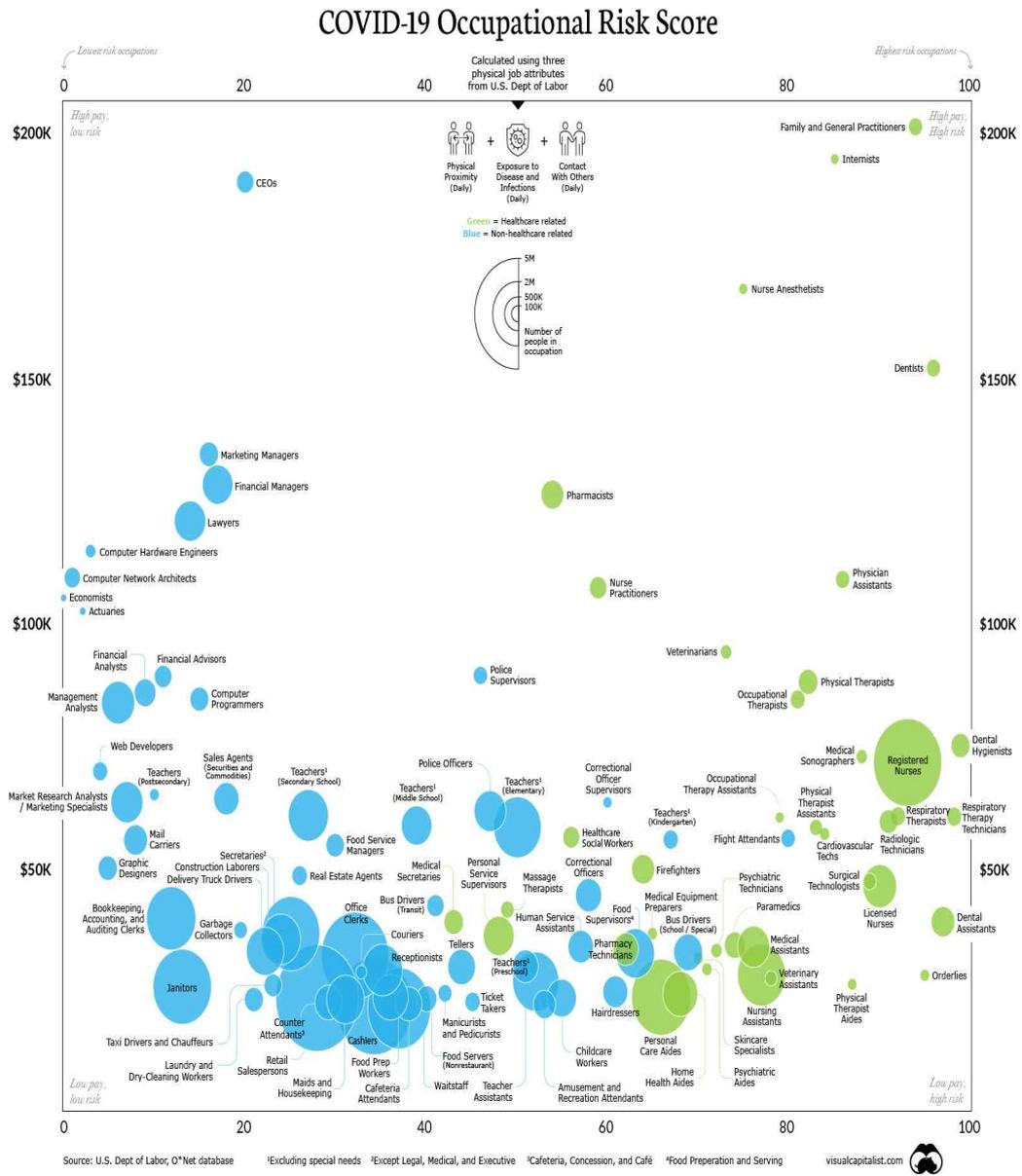
[그림 2-21]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그림 2-22] 저임금 근로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관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는 미국의 직업정보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한 'COVID-19 위험 직업 점수' 분석하였다. 직업 정보 네트워크(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의 데이터를 활용 COVID-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 측정하였는데,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물리적 직업속성에 대한 데이터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 타인과의 접촉 여부 ▲ 물리적 거리 ▲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정도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속성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하여 0과 100사이 점수 산출하였다. 이는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만 하는지, 일할 때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질병이나 감염 등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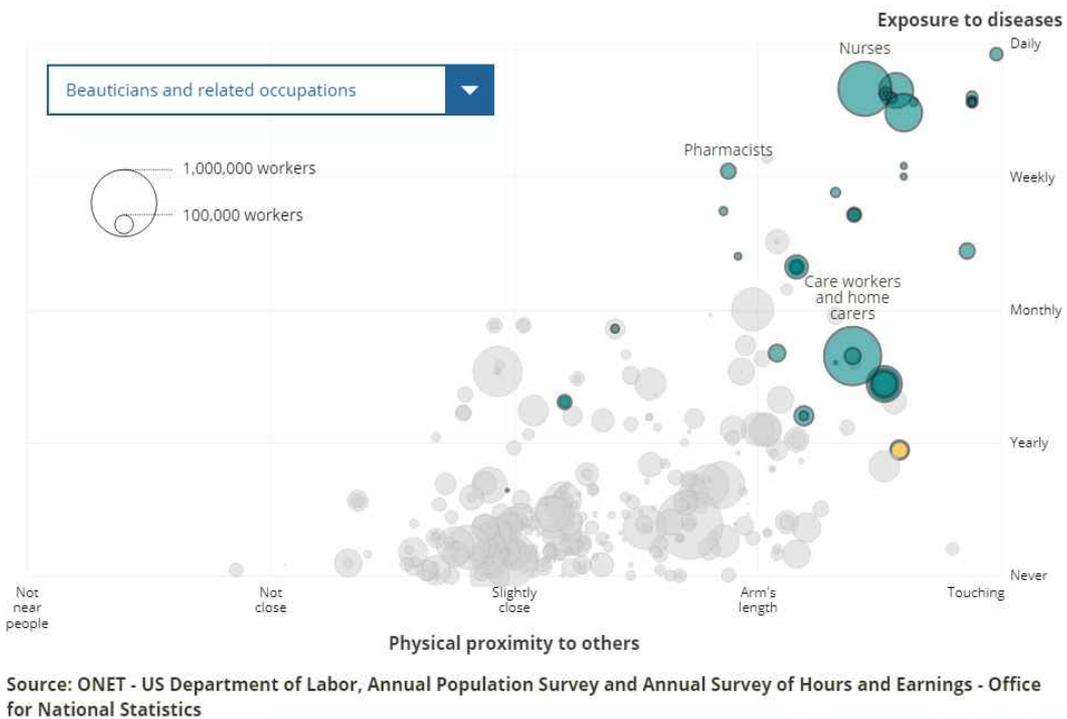
총 996개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위험점수(Risk Score)는 30.2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미국 내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종사하며 잘 알려져 있는 직종 100개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치위생사가 고위험직종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범주에서 모두 거의 100점을 얻었으며 총 99.7점으로 나타났다. 중위험직종은 버스운전기사와 같은 운송 근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물리적 근접성과 질병에의 노출은 낮으나, 일반 대중과 지속적 접촉도가 높은 직종으로 평가되었다. 감염 위험이 가장 낮은 저 위험 직종은 경제학자였으며, 이들은 가장 안전한 직종 중 하나로 물리적 근접성과 질병에의 노출의 두 가지 범주에서 0점을 얻었다.



[그림 2-23] 직종별 COVID-19 위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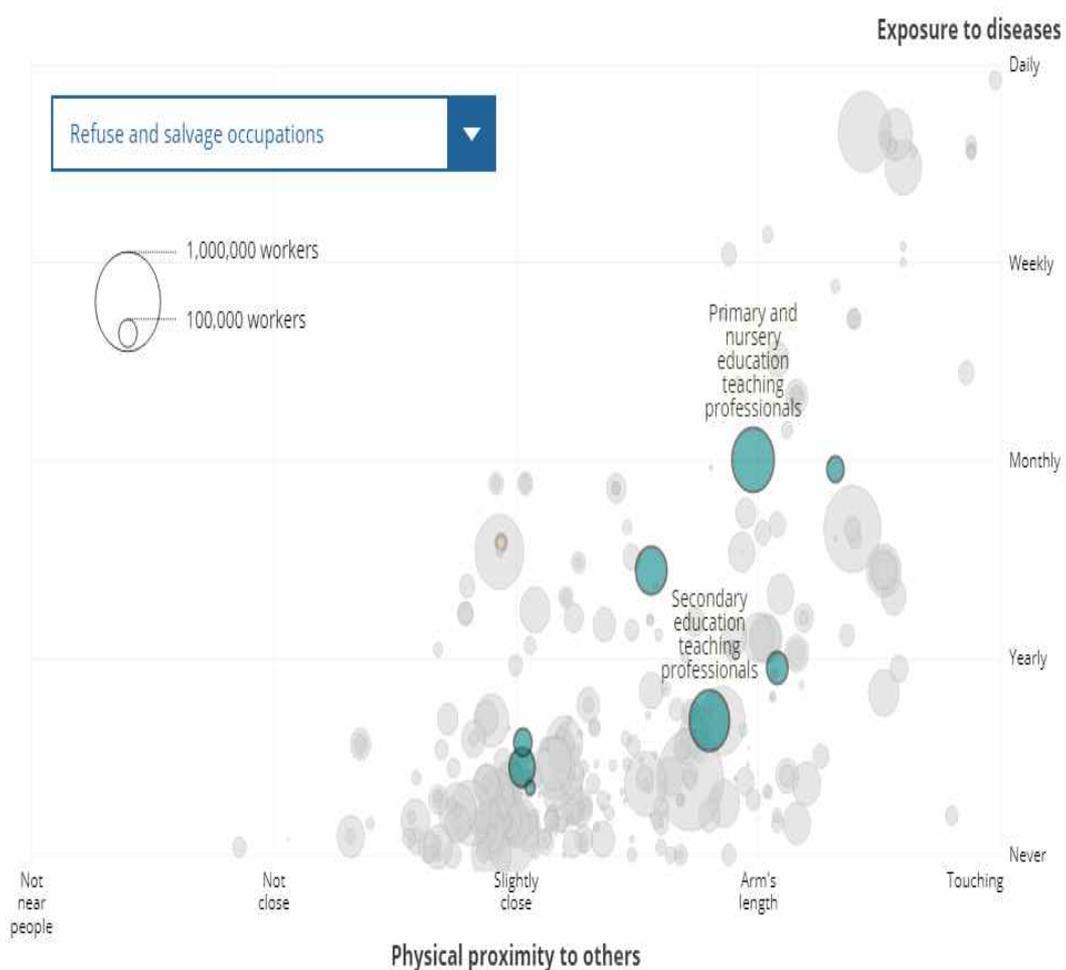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색인종일수록 코로나 노출 가능성이 높고 타인과 접촉 확률이 높은 필수 유지 부문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Hawkins, 2020)

영국 통계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위험직종 및 COVID-19로 사망한 노동인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미국의 분석에 근거하여 직종별 질병에의 노출과 타인과의 물리적 근접성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로 제시한 표에서 세로축(Y)축은 질병에의 노출을 나타내고, 가로축(X)은 타인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대다수가 건강관리 전문 직종 즉, 의료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의료종사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교육 분야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료 종사자보다 질병에 대한 노출이 적지만, 초등 및 보육 교육 전문가 및 특수 교육 전문가는 학생과 밀접한 관계에서 일하며 중등 또는 고등교육 전문가보다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Source: ONET - US Department of Labor, Annual Population Survey and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그림 2-25] 교육관련 종사자의 질병에의 노출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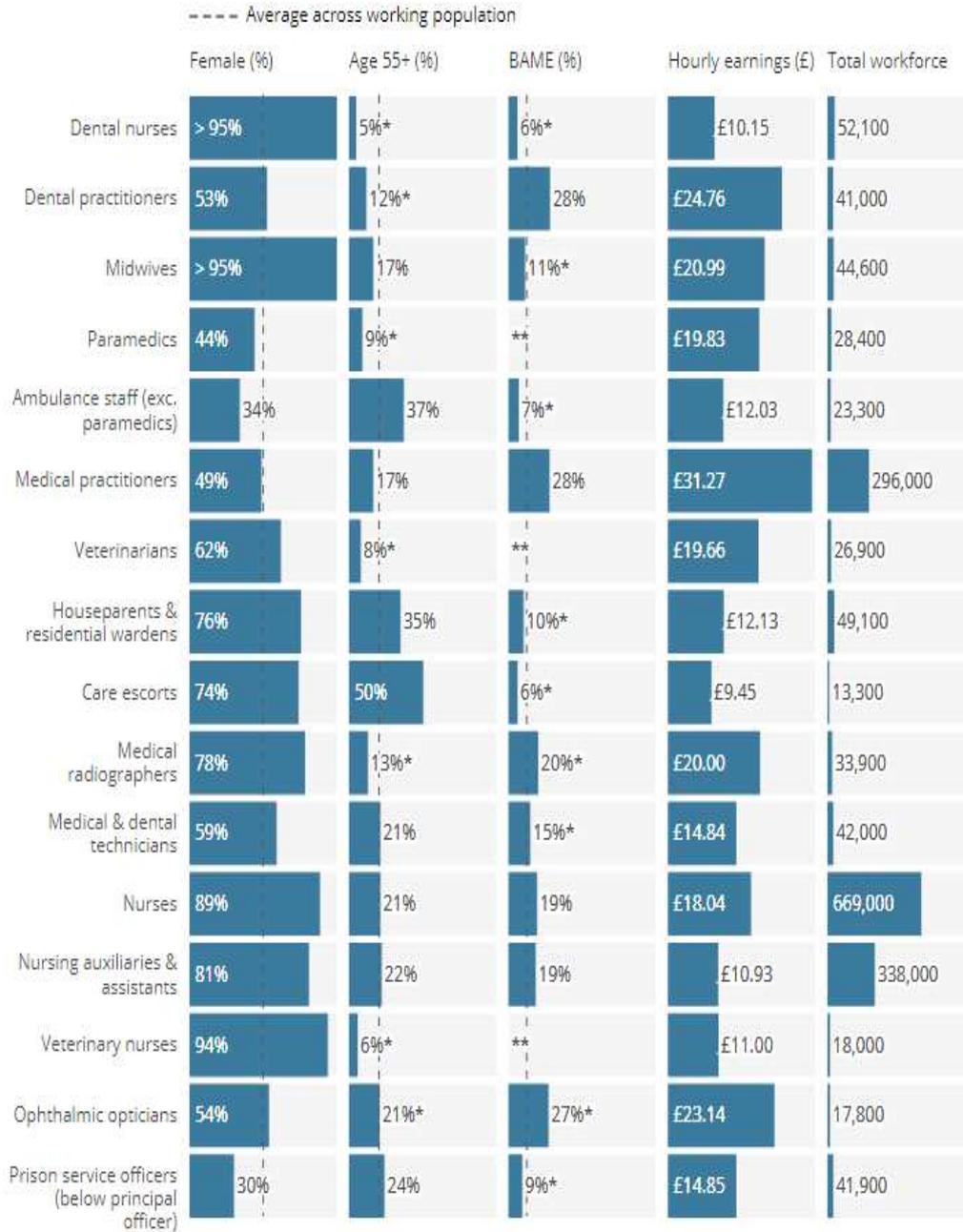
이 분석에서는 질병에 대해 가장 근접하고 노출정도가 높은 직업군 16개를 제시하였는데,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75%가 여성근로자였다.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으로 이는 영국의 노동인구와 동일한 비율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구급대원을 제외한 구급차 직원, 가정주부(주거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담당하는 성인)와 주거지 병동 노동자, 교도관 등의 직종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근로자가 질병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사람 근처에서 일하지 않는 직업은 예술가, 마케팅 전문가, 농업기계 운전자 등이 있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11%가 흑인 및 소수민족(BAME)인데 반해,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는 20%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 근로자들은 치과의사(28%), 의료전문가(28%) 및 안과 검안의(27%)등으로 4분의 1 남짓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 방사선사, 간호 보조원, 의료 및 치과 기술자 등 4개 직종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사망한 노동인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달 20일까지 집계된 취업연령대(20~65세) 코로나19 사망자 2,494명의 직군 및 직업을 분석한 것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 19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9.9명, 여성이 5.2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간병인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간병에 종사하는 남성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4명, 여성은 9.6명이었다. 이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요인으로는 개인용보호구(PPE)에 대한 부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간호사와 의사를 포함한 보건전문가들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 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COVID-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약 근로자 집단

코로나19의 감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로는 말하기, 노래하기, 소리지르기, 기침, 재채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상황과 대면서비스나 의료적인 케어, 사물에 대한 공용사용 등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 환경적인 요인으로 일하는 장소가 실내인가, 실외인가, 폐쇄된 공간인가 개방된 공간인가, 작업자간의 거리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함께 일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업무적으로 대면하는 사람이 불특정 개인인가, 특정된 개인인가 등이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감염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전파차단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자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은 자가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환자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의 심각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과중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휴식과 심리적인 안정 등의 대처가 특별히 필요할 수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위험집단에 대한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을 <표 2-25>과 같이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위험집단 평가지표는 작업장 위험 3개 지표, 업무상 위험 8개 지표, 개인적 위험 2개 지표, 총 13개 지표이며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위험도 평가 점수는 0점에서 50점이다.

<표 2-25> 코로나19 근로자 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

영역별	요인	위험도			가중치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작업장 위험	공간의 밀폐 정도(밀폐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2
	보건관리도	보건관리자 배치	보건대행 이용	보건관리자/보건대행 미비	1
	방역수칙 준수 여부(관리도)*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2
업무상 위험	비말발생 가능성(활동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2
	사람 간 밀집 정도(밀집도)*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2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2
	이용자의 규모 수(군집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2
	이용자 체류 시간(지속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2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거의 없음	짧은 시간 접촉	오랜 시간 접촉	3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1
	업무과중**	거의 없음	다소 과중	매우 과중	1
개인적 위험	고위험군*** 비율	5% 미만	5-9%	10% 이상	3
	집단생활 근로자 비율	5% 미만	5-9%	10% 이상	2

* 중앙방역대책본부 시설 위험도 평가지표와 동일

**의료인, 택배기사, 마스크제조공장, 소독제품제조공장, 시설관리자 등이 업무과중이 높음

***65세 이상, 당뇨, 만성질환(간, 신장, 폐, 심혈관),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만성질환이 있는 자,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위험도 평가기준: 가중치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계산한 점수가 11점 이하: 저위험, 12-23점: 중위험, 24-35점: 고위험, 36-50점인 경우 초고위험
- ★코로나19 근로자 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이며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

주요 국내 COVID-19 발생 사업장을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안)<표 2-25>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요양원 등 보건의료 시설이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유흥업소,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콜센터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안)에 따른 위험집단 기준은 24점 이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COVID-19 발생 사업장들의 평균 코로나19 위험점수가 약 32점이고 이들 사업장들이 상당 규모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최저점수인 22점을 초과하는 점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안)에 포함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설 위험도 6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가 24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진은 0-11점 저위험, 12-23점 중위험, 24-35점 고위험, 36-50점 초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후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을 활용하면서 위험집단 분류기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표 2-26>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장명 (업종/의료기관종별)	발생기간	확진자수	사업장 COVID-19 위험도 점수
청도대남병원 (병원)	2020.02.21.~2020.03.07	122명	37
봉화 푸른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020.03.04.~2020.03.21	68명	37
구로구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20.03.10.~2020.04.03	166명	21
한사랑요양병원(요양병원)	2020.03.18~2020.04.23.	128명	37
대실요양병원(요양병원)	2020.03.20.~2020.04.16	100명	37
경산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2020.03.20.~2020.04.16	66명	37
파티마병원 (종합병원)	2020.03.19.~2020.04.21	37명	29
제이미주병원(병원)	2020.03.27.~2020.04.21	196명	31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	2020.03.31.~2020.04.16.	69명	29
이태원 클럽 (무도 유흥 주점업)	2020.05.08.~2020.06.09.	277명	32
쿠팡 물류센터 (일반 창고업)	2020.05.22.~2020.06.16.	152명	32
리치웨이(방문판매업)	2020.06.04.~2020.06.29.	210명	25
성심데이케어센터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020.06.12.~2020.06.24.	47명	33
대전 서구 방문판매 (방문판매업)	2020.06.17.~2020.06.29.	78명	25

<표 2-27> 코로나19 근로자 취약집단 위험도 평가지표(안)에 따른 상세 평가 결과

사업장명	위험도 평가지표													위험도 총점
	공간의 밀폐정도*	보건관리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비말발생가능성*	사람간밀집정도*	타인접촉정도	이용자의 규모·수*	이용자체류시간*	질병과감염에의노출	물품공유정도	업무과중**	고위험군*** 비율	집단생활근로자비율	
	2	1	2	2	2	2	2	2	3	1	1	3	2	
청도대남병원(병원)	1	2	2	1	1	1	1	2	2	1	0	2	2	37
봉화 푸른요양원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1	2	2	1	1	1	1	2	2	1	0	2	2	37
구로구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	2	1	2	2	0	1	2	0	2	0	0	0	22
한사랑요양병원(요양병원)	1	2	2	1	1	1	1	2	2	1	0	2	2	37
대실요양병원(요양병원)	1	2	2	1	1	1	1	2	2	1	0	2	2	37
경산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1	2	2	1	1	1	1	2	2	1	0	2	2	37
파티마병원(종합병원)	1	0	0	1	1	1	1	2	2	1	0	2	1	29
제이미주병원(병원)	1	2	0	1	1	1	1	2	2	1	0	2	1	31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	1	0	0	1	1	1	1	2	2	1	0	2	1	29
이태원 클럽 (무도 유흥 주점업)	2	2	2	2	2	2	2	2	0	2	0	0	0	32
쿠팡 물류센터 (일반 창고업)	2	2	2	1	2	2	2	2	0	2	2	0	0	32
리치웨이(방문판매업)	1	2	1	2	2	2	1	2	0	1	0	0	0	25
성심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1	2	2	1	1	1	1	2	2	1	0	2	0	33
대전 서구 방문판매 (방문판매업)	1	2	1	2	2	2	1	2	0	1	0	0	0	25

* 중앙방역대책본부 시설 위험도 평가지표와 동일

**의료인, 택배기사, 마스크제조공장, 소독제품제조공장, 시설관리자 등이 업무과중이 높음

***65세 이상, 당뇨, 만성질환(간, 신장, 폐, 심혈관),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만성질환이 있는 자,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Ⅲ.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지침

1. 국내

1) 법령 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한다.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은 <부록 4>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 부 의 책 무	제4 조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6.>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

용하여야 한다.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2) 사업장 및 근로관련 지침³⁾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20.4.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20.3.10.) (고용노동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6판)(20.2.24.) (고용노동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20.2.17.) (고용노동부)
-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20.9.7.) (고용노동부)
-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2판)(20.8.24.) (고용노동부)

3)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에서 게시한 코로나(COVID)-19 지침 및 참고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및 근로관련 지침을 추가로 검색하여 작성함. 사업장 및 근로관련 지침 외의 국내 다른 지침 개발현황은 <부록 4>에서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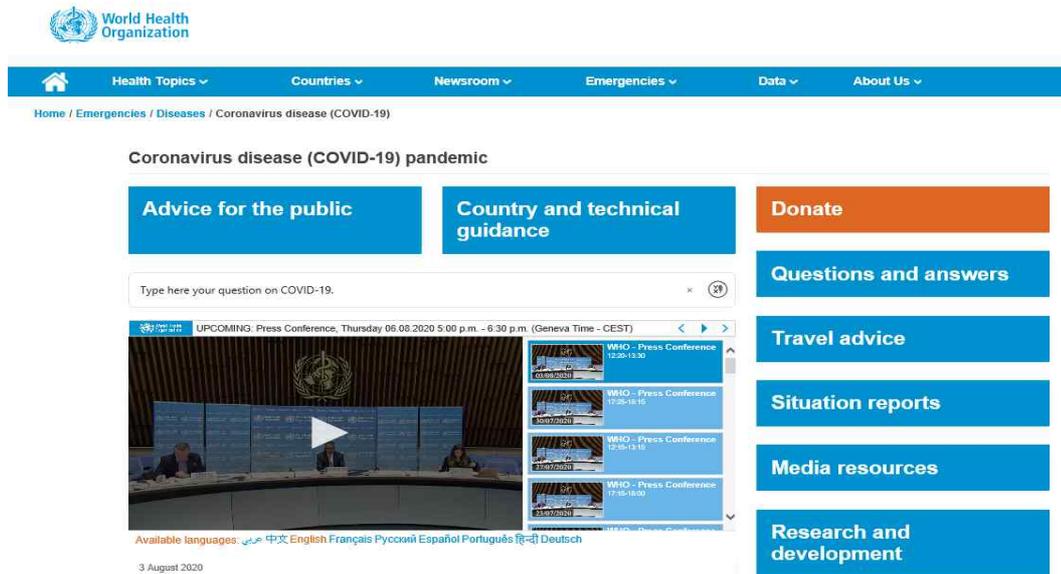
-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20.3.23.)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2판)(20.3.1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1-1판)(20.3.16.)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20.3.12.)
-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2판(상세본)(2020.04)(산업통상자원부)
-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연속성계획 표준안(2판)(2020.04)(산업통상자원부)
- 24시간 가동업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2020.04)(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판)(2020.3.31.)(국토교통부)
- COVID-19와 식품안전-식품업체를 위한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록 5> 참조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Ⅱ)(20.3.1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0.2.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 국외

국외 코로나19 대응의 동향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노동기구 (ILO), 미국 CDC, NIH, OSHA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유럽연합, EU-OSHA, 유럽재단 유로파운드 (Eurofound), 영국 안전보건청 (HSE)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크게 ‘대중을 대상으로 한 조언(Advice for the public)’, ‘국가별 그리고 기술적 가이드’, ‘Q and A’, ‘여행에 대한 조언’, ‘사례보고서’, ‘미디어 자원’, ‘연구와 개발’, ‘전략과 기획’, ‘수행’, ‘잘못된 상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그림 3-1]. 또한 대중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동영상자료, 인포그래픽 형태의 포스터, 정보소식지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3-1]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메인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는 대중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 안전한 손세정제 사용, 건강하게 가정에 머무르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과 타인 보호, WHO에 질문하기, 가정에서의 돌봄, 임신과 수유, 스트레스 대응’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2].

예를 들면 ‘건강하게 가정에 머무르기’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로 지내기,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육아, 금연, 정신건강의 측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과 타인 보호’의 경우 손씻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과 타인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HO는 COVID-19 관련 일상생활 지침⁴⁾으로 ‘출장 시 주의사항’, ‘올바른

4)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

마스크 착용 방법', '스트레스 대응법',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 자녀에 대한 조력 방안'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작성·배포하고 있다.

WHO는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으로 COVID-19 집단발병 시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고려사항(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considera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 제시된 고려사항은 WHO의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담당부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COVID-19 발병 시 서로 다른 대상군에서 정신적, 심리사회적 안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메시지로 개발되었다.

WHO는 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은 어떠한 특징 혹은 특정 질환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집단사이의 부정적 연관성을 의미한다. 질환 발병 시 이는 사람들이 질병과의 인식된 연관성으로 인해 꼬리표가 달리거나, 정형화되거나, 차별받거나, 별도로 취급되거나 신분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들의 돌봄 제공자, 가족, 친구와 지역사회에 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COVID-19 발병은 특정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바이러스와 접촉한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COVID-19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COVID-19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Getting your workplace ready for COVID-19: How COVID-19 spreads) 지침에는 COVID-19 확산 방법,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조언, 사업장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COVID-19에 대비한 사업장의 준비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HealthyAtHome

Staying physically active

Healthy diet

Healthy parenting

Quitting tobacco

Mental health

Protect yourself and others from getting sick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when hands are visibly dirty

If your hands are not visibly dirty, frequently clean them by using alcohol-based hand rub or soap and water

[Download](#)

Protect yourself and others from getting sick

Wash your hands

- after coughing or sneezing
- when caring for the sick
- before, during and after you prepare food
- before voting
- after toilet use
- when hands are visibly dirty
- after handling animals or animal waste

[Download](#)

Protect others from getting sick

When coughing and sneezing cover mouth and nose with flexed elbow or tissue

Throw tissue into closed bin immediately after use

Clean hands with alcohol-based hand rub or soap and water after coughing or sneezing and when caring for the sick

[Download](#)

Ask WHO

Yes. Respiratory viruses can be passed by shaking hands an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Greet people with a wave, a nod or a bow instead.

Should I avoid shaking hands because of the new coronavirus?

[Download](#)

[그림 3-2] WHO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홈페이지

2)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는 코로나19와 노동의 세계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⁵⁾를 주제로 별도의 웹포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뉴스(Latest news), 국제적 영향 및 정책 권고사항(Global impact & policy recommendations), 주제 분석과 실제적 조언(Thematic analysis & practical advice), 사회 부문별·국가별 대응과 제안(Sectoral impact, responses, and recommendations), 국가별 정책 대응(Country policy responses), 프로젝트(Projects), 미디어센터(Media centre) 등을 제공한다[그림3-3].



[그림 3-3] ILO의 ‘코로나19와 노동의 세계’ 별도 웹 포털페이지

5) <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lang--en/index.htm>

최근 뉴스 코너는 COVID19의 대유행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응, 근로자와 사업주 단체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의 뉴스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 영향 및 정책 권고사항 코너는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COVID19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COVID19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ILO Policy Brief에는 “COVID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책 틀”이 최근 제공되었다.

ILO Monitor는 통계 분석 및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 항목(ILO Monitor)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 국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ILO Monitor는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로 황폐해진 사회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ILO Monitor는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 및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2020년 상반기 동안 노동시간 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자 및 노동자의 수와 이들이 속한 산업부문을 파악하였다.

ILO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으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일자리·임금 지원,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조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담화 수행”의 4가지 주제를 정책 수립의 길잡이로 제시하고 있다.

ILO는 코로나19 감염증의 발병 및 확산이 전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산업별 영향 및 대응책 등을 담은 보고서 ‘국제노동기구 업종별 요약 보고서 (ILO Sectoral Brief)’ 발표를 통해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그림 3-4-1, 2]. 보고서로 발간된 주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해운업 및 어업, 식품 소매업, 보건, 농업 및 식품

안전, 교육, 섬유·의류·가죽 및 신발산업, 민간 항공업, 응급의료서비스, 관광업, 미디어와 문화, 목재제품 제조업, 공공서비스업, 도로수송업”으로 총 14개 분야·업종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업종별 사례(손실)를 소개하고,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국가별 정부, 노동자, 사업장을 위한 대응책, 그리고 ILO 권고 등을 수록하였다.

		
미디어와 문화	목재제품 제조업	공공서비스업
		
도로수송업	응급의료서비스	자동차 제조업
		
식품 소매업	섬유·의류·가죽 및 신발산업	민간 항공업

[그림 3-4-1] ILO의 14개 업종별 요약보고서 1

		
<p>보건</p>	<p>교육</p>	<p>해운업 및 어업</p>
		
<p>관광업</p>	<p>농업 및 식품안전</p>	

[그림 3-4-2] ILO의 14개 업종별 요약보고서 2

ILO는 전 세계 188개국 및 지역별 코로나 대응 정책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ILO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은 4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었다.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일자리·임금 지원,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담화 수행”의 4가지 주제를 정책 수립의 길잡이로 제시하고 있다. 실용적 제언을 담은 브리프 형태의 발간물도 주 1회 이상 게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20년 4월 28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주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선정하였으며, 대유행 상황 속 감염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부분에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권고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사고의 위험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호복과 보호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작업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ILO는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ILO의 정책 틀을 경제와 고용 활성화, 기업, 고용, 소득 지원,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부문간 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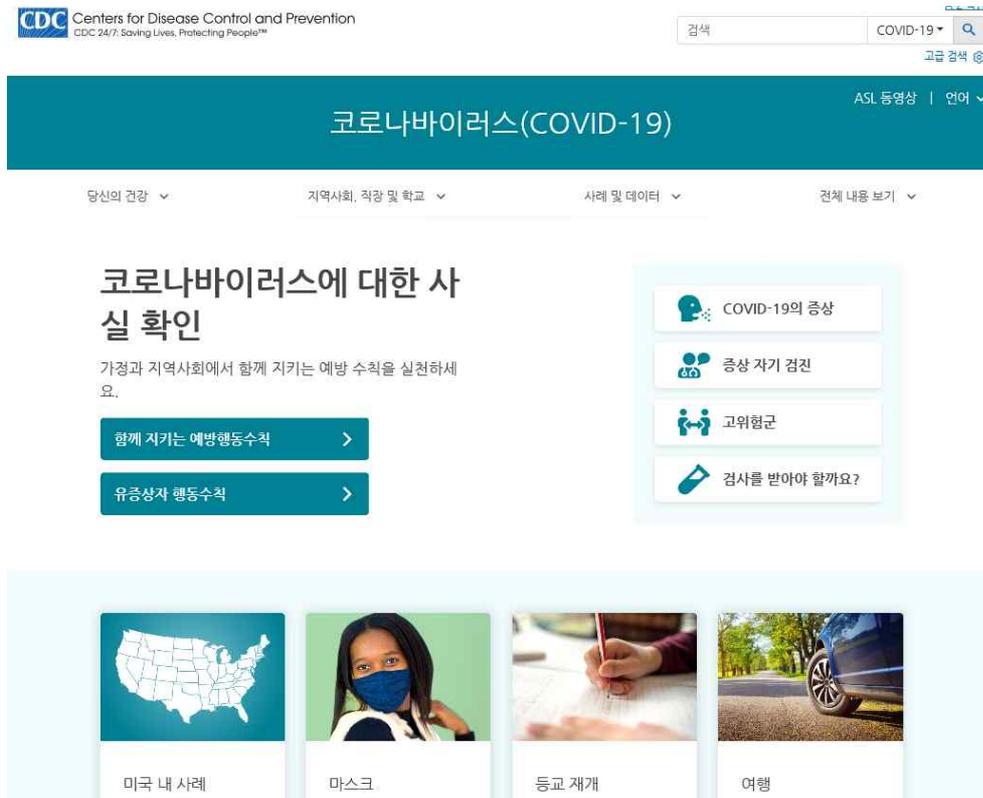


[그림 3-5]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ILO 정책의 틀

3) 미국 CDC, NIH, OSHA, & NIOSH

(1)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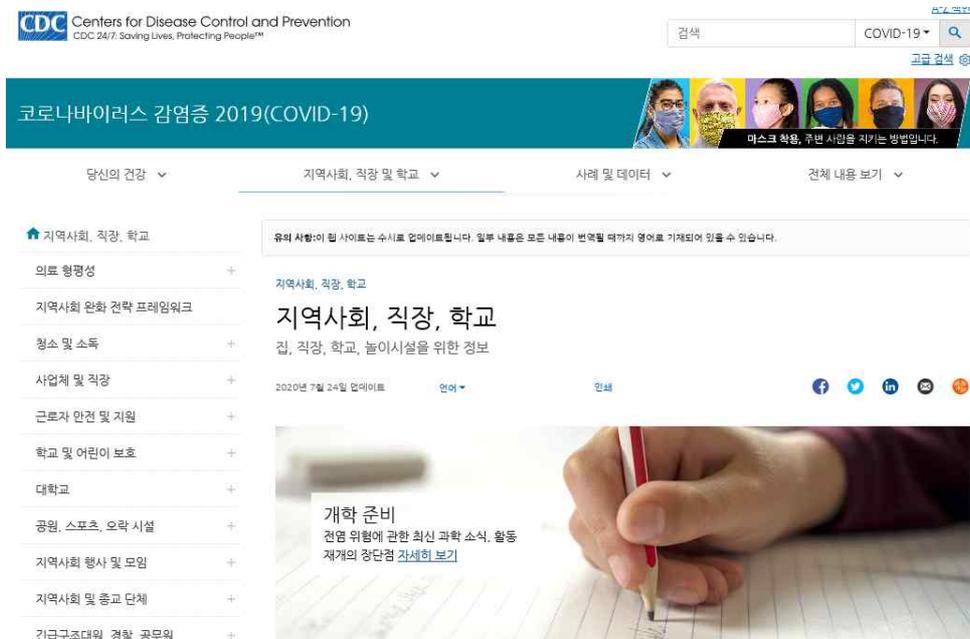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특별 페이지⁶⁾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OSHA 경보(Alerts),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6].



[그림 3-6] COVID-19 대처를 위한 CDC 홈페이지 (한국어 제공)

6) <https://www.osha.gov/SLTC/covid-19/>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요 정보를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등 각국 언어로 제공하여 이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림 3-7]. CDC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⁷⁾ 및 중요 영역 근로자(critical workers)에 대한 안전지침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연한 작업장(원격근무), 유연한 근로시간(근무시간 시차제), 근로자 간 물리적 거리 유지 등 사업장의 위기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7] CDC의 ‘지역사회, 직장, 학교’ 감염병 예방 (한국어 제공)

- 7)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Use of Cloth Face Coverings, Especially in Areas of Significant Community-Based Transmission
- 8) Implementing Safety Practices for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 Who May Have Had Exposure to a Person with Suspected or Confirmed COVID-19

- CDC 제공하는 ‘사업체와 일터: 계획, 준비 및 대응’
 - CDC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businesses-employers.html>)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COVID-19)에 대응하는 사업체와 고용주를 위한 임시지침, 2020년 5월’
 - ‘일터의 COVID-19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및 전략’
 -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원용’ 자료
 - ‘일터에서의 예방’
 - 청소 및 소독 지침
 - 고용인을 위한 사무용 건물 관련 정보
 - 비보건 분야 직장에서의 검사
 - 비의료 근무 환경에서의 COVID-19 환자 조사 및 대응
 - 소규모 사업체 및 직원 준비사항
 - 비의료 부문의 호흡보호구 부족 관련 전략
 - 비의료 직장 사례조사 및 접촉자 추적: 고용주를 위한 정보
 - ‘근로자 안전 및 지원 자료 : 특정 산업용’
 - 식당 및 주점
 - 육류 및 가공류 가공 작업자
 - 카지노 및 게임장 운영
 - 제조업 근로자 및 고용주
 - 육가공류 가공시설 평가 툴 키트
 -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

○ CDC 제공하는 ‘근로자 안전 및 지원’

- 본 영역에서는 주로 특정 직업군 근로자의 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CDC에서 한국어로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웹싸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worker-safety-support/index.html>)

- 직장지침: 필수 분야 근로자의 감염 노출가능성-COVID19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필수 중요 근로자의 고용주를 위한 안전 규범
 - COVID-19 대비 직장 준비를 위한 OSHA 지침
 - 중요 사회기반시설 부문 대응 계획
 -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중요 인프라 업종 직장 검사
- 직원의 직장복귀
 - 직원: COVID-19 상황 업무 스트레스 대처
 - 의료진 및 긴급구조대원: 스트레스 대처
 - 직장 과로 관리
- 특정 직업군을 위한 보건 안전 조치
 - 항공사 및 공항
 - 배송
 - 대중교통
 - 배달 및 지상운송
 - 개인서비스: 은행, 장례식장, 체육관, 가내 서비스 제공자, 네일샵
 - 음식서비스: 농업인, 식료품 소매업, 육가금류 가공업자, 해산물 가공 근로자, 학교 영양사와 자원봉사자
 -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
 - 공공서비스 및 위생

○ CDC : 특정 직업군 ‘긴급 구조대원, 경찰, 공무원’

- CDC 에서는 특정 직업군 중에서도 ‘긴급 구조대원, 경찰, 공무원,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 근로자’의 감염예방에 관심을 두고 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8].

- 예방 및 지원

- 청소 및 소독 지침
- 소방관 및 긴급 구조대원을 위한 예방 조치
- 경찰을 위한 예방 조치
- 산림 소방관을 위한 FAQ
- 필수 분야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
- 의료진과 긴급구조대원: COVID-19 팬더믹 시기에 스트레스 대처 및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 COVID-19 기간 중 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할 일



[그림 3-8] 긴급구조대원, 경찰, 공무원’ 감염병 예방 (한국어 제공)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업장 및 사업주 대응 지침
 - 미국 CDC는 사업장 내 비의료적 환경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질환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대응지침을 발표
 -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의 판단 시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 (인종이나 출신국가로 감염위험 판단 배제)

- 사업주 권고사항 (사업장 내 아픈 근로자 대상)
 -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은 해열제 또는 대증요법에 사용되는 의약품(예 : 기침 억제제)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시간 동안 열(경구 체온계 사용 시 37.8°C 이상), 발열 징후, 기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 증상이 있을 시 직원은 상사에게 알리고 자택에 머물러야 함
 - 병가 등 사내 정책의 융통성, 공중보건 지침 부합 여부 및 직원들의 병가 활용에 대한 인지여부 확인 필요
 - 아픈 직원이 자택에 머무르도록 계약직 또는 임시직 고용방식 논의, 차별·징계와 무관한 휴가 제공
 - 의료 기관 등의 업무부하 증가를 고려하여 급성 호흡기질환 직원의 질환 확인서 또는 사업장 복귀용 의료인 확인서 등의 요구를 자제
 - 사업주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택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정책의 유지가 필요

- 사업주 권고사항 (사업장 내 유증상자의 분리)
 - CDC는 사업장에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다른 근로자와 분리시키고 즉시 자택으

로 보낼 것을 권고. 해당 근로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휴지가 없는 경우 팔꿈치 또는 어깨)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함.

- 사업주 권고사항 (질환자의 자택격리 필요성, 직원교육)
 - 질환이 있는 경우 자택에 머물러야 하고, 기침 및 재채기 예절, 손 청결을 장려하는 포스터를 사업장 입구 및 눈에 잘 띄는 여러 곳에 게시
 - 휴지 및 비접촉식 휴지통 제공
 - 직원에게 알코올이 60-95% 포함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도록 권장.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운 경우,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우선 세척 필요
 - 사업장에 비누와 물 및 알코올 기반 손세정제를 제공. 소모품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손세정제를 회의실 등 여러 장소에 비치

- 사업주 권고사항 (정기적인 주변 위생 환경 유지)
 - 문손잡이 등 사업장 내에서 자주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
 - 청소는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허가받은 지시 사항에 따름
 - 현재 정기적 청소 이외의 추가 소독은 권장되지 않음
 - 자주 사용하는 손잡이, 키보드, 리모컨, 책상 등을 사용 전에 닦을 수 있도록 일회용 수건 제공

- 사업주 권고사항 (여행 전 조치 및 권고사항)
 - 여행국에 대한 최신지침 및 권고사항 확인(CDC 여행자 건강 알람, CDC's Traveler's Health Notices)
 - 중국 여행 시, 특별 여행 정보 및 항공기 승무원을 위한 정보는 CDC 웹사이트 참조

- 사업주는 여행 전 직원의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 시 상사에게 알리고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
- 여행 중 또는 출장 중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필요 시 질환이 발생한 직원이 의료기관 연락 및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미국 외 지역에서 질환이 발생한 직원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회사 정책을 따르거나, 의료진 및 해외 의료 지원 기관에 연락

○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 사업주는 급성 호흡기질환의 확산 감소 및 코로나-19 발생 시 사업장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목표로 정하도록 권고
-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시,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사회의 질병 중증도 (예: 유병률, 입원 및 사망률) 및 질병 영향 등의 정보를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합병증 고위험군 노동자에게 제공
- 사업장 밀집 지역의 사업주는, 지역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장 감염성 질환 발생 대응 방침' 에 요약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를 권장
- 모든 사업장은 정보의 적시성·정확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 및 지역 보건 당국과 협조할 것을 적극 권장.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병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보건 당국은 해당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침 발표

(2)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Coronavirus(COVID-19)’이라는 특별 웹 페이지(<https://www.nih.gov/coronaviru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기금, 뉴스와 이벤트, 연구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Resource from NIH’에서 ‘재난연구 대응(Disaster Research Response, DR2)’에서 국립환경보건원(NIEHS)에서 개발한 다양한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COVID-19과 관련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도구 또한 제공하고 있다.

- COVID-19 연구를 위한 NIH 차원의 광범위한 전략 계획 (NIH-wide strategic plan for COVID-19)
 - 목적
 - UNDERSTAND (SARS-CoV-2 & COVID-19 에 대한 이해)
 - DETECT & TREAT COVID-19
 - PREVENT COVID-19 감염
 - MITIGATE COVID-19의 위험성
 - 5대 선결과제 [그림 3-9]
 - 선결과제1. SARS-CoV-2 & COVID-19 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증진
 - 선결과제2. COVID-19 진단을 위한 연구의 진전
 - 선결과제3. COVID-19 치료법 진전을 위한 연구 지원
 - 선결과제4. SARS-CoV-2 감염예방을 위한 연구의 가속화
 - 선결과제5. 건강 불평등 및 취약계층에서의 부진한 건강 성과를 개선하고 예방



[그림 3-9] COVID-19연구를 위한 NIH의 광범위한 전략 계획

- 선결과제1. SARS-CoV-2 & COVID-19 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증진
 - 목표 1.1: SARS-CoV-2 & COVID-19 에 대한 기초연구 강화
 - 목표 1.2: SARS-CoV-2 감염 및 COVID-19 전임상 모델 개발
 - 목표 1.3: SARS-CoV-2 & COVID-19 역학 이해
 - SARS-CoV-2 & COVID-19 확산에 기여하는 질병 전파의 양상과 특정 집단에서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행동적/사회적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지원
 - 목표 1.4: COVID-19 질환의 진행, 회복, 사회심리학적/행동학적 요인의 영향력 이해
 -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보건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등)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웰빙, 질병, 회복 등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생애주기별(across the lifespan)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COVID-19 가 미치는 영향
 - COVID-19에서 회복된 이후 신체적, 환경적,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적 요인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 선결과제2. COVID-19 진단을 위한 연구의 진전
 - 목표 2.1: 새로운 진단 기술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 지원
 - 목표 2.2: SARS-CoV-2 검출을 위한 기존 검진 방법의 개선
 - 목표 2.3: 혈청 검사법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 지원

- 선결과제3. COVID-19 치료법 진전을 위한 연구 지원
 - 목표 3.1: 새로운 SARS-CoV-2 치료제의 발굴 및 개발, 기존 약제의 용도 변경
 - 목표 3.2: COVID-19 에 대한 기존 치료 전략 혹은 새로운 치료 전략

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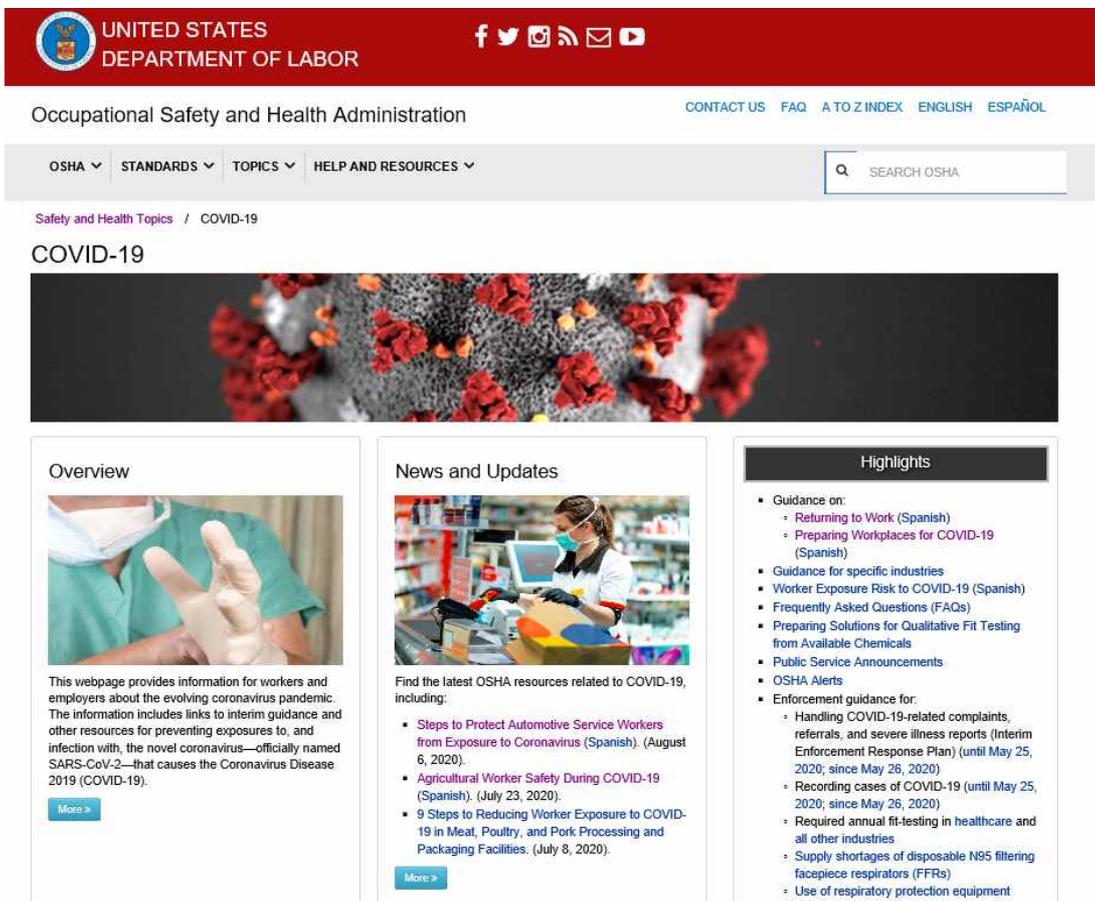
- 목표 3.3: COVID-19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연구

- 선결과제4. SARS-CoV-2 감염예방을 위한 연구의 가속화
 - 목표 4.1: COVID-19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백신 개발
 - 목표 4.2: SARS-CoV-2 전파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
 - 목표 4.3: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행모델 개발

- 선결과제5. 건강 불평등 및 취약계층에서의 부진한 건강 성과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 지원
 - 목표 5.1: 미국 내 건강 불평등 및 취약계층에서 COVID-19 영향 이해
 - 미국 내 건강 불평등 및 COVID-19 취약계층의 대응 방안 마련하기 위해 community-engaged project 수행
 - 목표 5.2: COVID-19 에 대한 모성건강에 대한 이해
 - 임신부에 대한 발병률, 이환율, 사망률, 사회적 불평등 요인,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파악하여 모성건강 관련 대응 조치 마련
 - 목표 5.3: COVID-19 관련 연령 요인의 이해
 - 65세 이상 노년층의 COVID-19 감염이후 나타나는 염증반응,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및 발달장애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 목표 5.4: COVID-19 의 국제적 보건의료 연구의 필요성 주장

(3) 미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 노동부의 OSHA는 다양한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위험 인식(Hazard recognition), 표준(Standards), 의학정보, 통제와 예방, 추가 정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https://www.osha.gov/SLTC/covid-19/>)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그림 3-10].



[그림 3-10] 미국 노동부 OSHA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

○ 위험 인식 (Hazard Recognition)

- 미국에서 COVID-19 에 대한 직업상 위험을 4단계로 분류
- Lower Risk (저위험군)

: 재택근무자, 동료 혹은 고객과의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사무직 혹은 생산직 근로자,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 장거리 트럭 운전자

- Medium Risk (중위험군)

: COVID-19 유행 국가로부터 돌아온 여행자와 접촉하는 사람, 일반 대중과 접촉하는 사람

- High Risk (고위험군)

: COVID-19 의심자 혹은 확진자에 노출된 보건의료인, 영안실 근로자

- Very High Risk (초고위험군)

: COVID-19 의심자 혹은 확진자를 위해 에어로졸 생성을 유발하는 절차(기관지내시경, 치과 치료 및 검사, 부검 등)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영안실 근로자



○ 통제와 예방 (Control and Prevention)

- 여기에서는 COVID-19 노출 위험 직종, 업종, 혹은 업무에 따른 COVID-19 통제와 예방에 관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Control and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업 - 국경보안과 운송 보안 - 출장 - 건설업 - 교정시설 종사자 - 치과종사자 - 응급구조와 공공안전 - 환경서비스 - 농업인 - 보건의료업 - 가정방문 수리서비스업 - 실험실 - 제조업 - 육류 및 가금류 가공업 - 유류 및 가스 가공업 - 영안실 - 소매업 - 해산물 가공업 - 고체 폐기물 및 폐수 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line operations ▪ Border protec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 Business travelers ▪ Construction ▪ Correctional facility operations ▪ Dentistry ▪ Emergency response and public safety ▪ Environmental (i.e., janitorial) services ▪ Farmworkers* ▪ Healthcare ▪ In-home repair services ▪ Laboratories ▪ Manufacturing* ▪ Meat and poultry processing* ▪ Oil and gas operations ▪ Postmortem care ▪ Retail operations ▪ Seafood processing*† ▪ Solid waste and wastewater management 	

[그림 3-11] 미국 OSHA의 코로나19 통제와 예방

- OSHA에서는 COVID-19 관련 포스터와 카드를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OSHA Publications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 OSHA 4055-2020 (포스터) : 육류 및 가공류 가공 및 포장시설 근무자의 COVID-19 노출위험을 줄이는 9단계 수칙
- OSHA 4039-2020 (포스터) : 직장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7단계 지침
- OSHA 4070-2020 (포스터) : COVID-19 노출로부터 자동차서비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OSHA 4011-2020 (포스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직장에서 활용 가능한 10가지 수칙
- OSHA 4069-2020 (카드) : COVID-19 기간 농민의 안전

○ 표준 (Standards) : SARS-CoV-2에 대한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OSHA 표준

- 홈페이지: <https://www.osha.gov/SLTC/covid-19/standards.html>
-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1970년)의 일반 의무조항(General Duty Clause)을 들어 ‘인지된 유해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에서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위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OSHA 개인보호장비 (PPE) 표준(일반산업 29 CFR 1910 Subpart I, 건설업 29 CFR 1926 Subpart E): 작업상 위험이 있을 때 장갑, 눈 및 안면 보호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호흡기 보호 표준 (29 CFR 1910.134)에 따라 종합적인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OSHA의 혈액매개 병원체 표준(29 CFR 1910.1030): 일반적으로 SARS-CoV-2를 포함할 수 있는 호흡기 분비물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 혈액 및 기타 잠재적 감염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표준의 조항은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체액 (예 : 호흡기 분비물)에 대한 노출을 포함하여 바이러스의 일부 소스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청 공기매개 질병 표준(The California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al/OSHA) Aerosol Transmissible Diseases (ATD) standard): 이 표준은 근로자들이 바이러스 (SARS-CoV-2 포함), 박테리아 또는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를 포함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전파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표준은 보건의료업 사업주에게만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만 SARS-CoV-2에 노출된 다른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OSHA의 위기 의사소통 표준(OSHA'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in general industry, 29 CFR 1910.1200): 고용주는 또한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반적인 소독제와 살균제에 위험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고용주는 OSHA의 위기 의사소통 표준(일반산업, 29 CFR 1910.1200)과 함께 OSHA 개인보호장비(PPE) 표준(일반산업 29 CFR 1910 Subpart I, 건설업 29 CFR 1926 Subpart E)을 준수해야 한다.

○ 지침

- COVID-19에 대한 작업장 준비 지침 (Guidance on preparing workplaces for COVID-19)

이 지침은 표준이나 규정이 아니며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권고안은 본질적으로 권고사항이며, 내용적으로는 정보 제공이며,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COVID-19 개요
- COVID-19 유행이 어떻게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의 SARS-CoV-2 의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SARS-CoV-2 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분류
 - 낮은 노출위험으로 분류된 작업 (주의):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 중간정도의 노출위험으로 분류된 작업: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 높은 혹은 아주 높은 노출위험으로 분류된 작업: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 해외 여행 혹은 해외 거주 근로자
 - 기타 정보
 - OSHA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 COVID-19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예방 (Prevent worker exposure to COVID-19)
 - COVID-19 전파 방지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수칙 4가지를 제시. 특히 직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
- 소매업 종사자에 대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retail workers)
 - 소매업(약국, 슈퍼마켓, 대형 매장)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택배 배송 인력에 대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the package delivery workforce)
 - 고용주가 택배 배송 인력들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건설 인력에 대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the construction workforce)
 - 고용주가 건설 인력들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workforce)
 - 고용주가 제조업 근로자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테이크아웃 또는 도로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및 음료 공급자를 위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restaurants & beverage vendors offering takeout or curbside pickup)
 - 테이크아웃 또는 도로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및 음료 공급자가 근로자와 이용자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치과의를 위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dental practitioners)
 - 치과 의사와 근로자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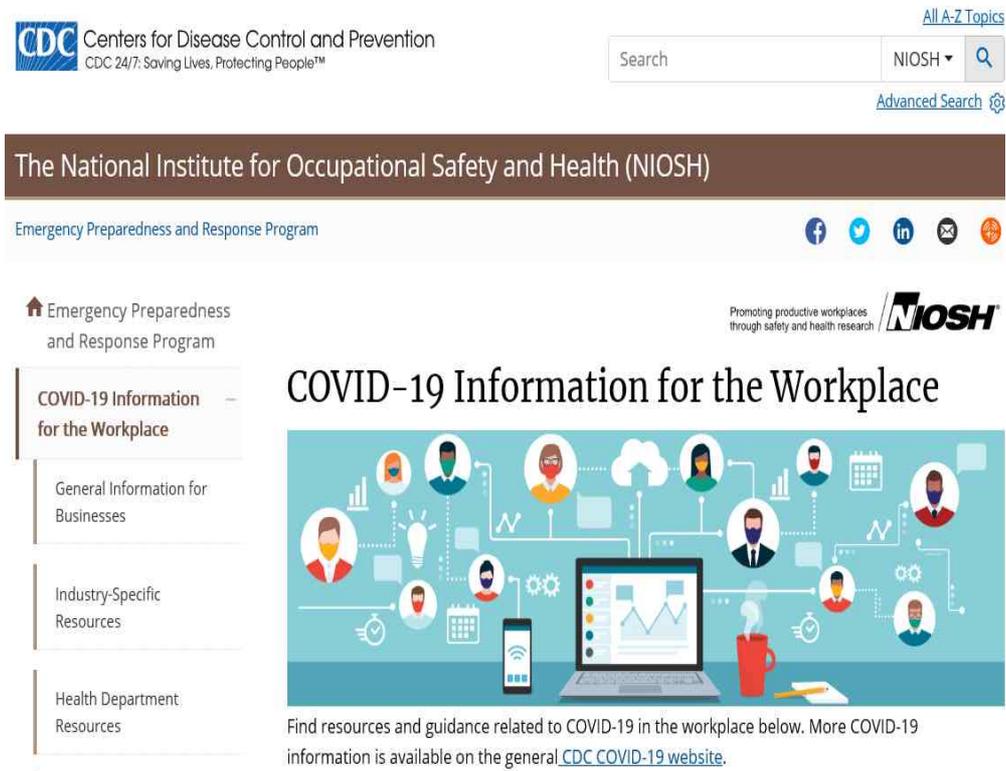
시

- 차량공유, 택시 및 자동차 운전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rideshare, taxi, and car service workers)
 - 차량공유, 택시 및 자동차 운전 서비스 근로자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 소매 약국에 대한 COVID-19 지침 (COVID-19 Guidance for retail pharmacies)
 - 소매 약국 근로자의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시

(4) 미국 NIOSH

NIOSH는 화재·홍수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대비 및 대응 프로그램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하에 사업장을 위한 COVID-19 정보를 신설·운영 중이다[그림 3-12]. 사업장을 위한 COVID-19 정보는 사업 일반 정보, 사업부문별 정보, 보건당국을 위한 정보, PPE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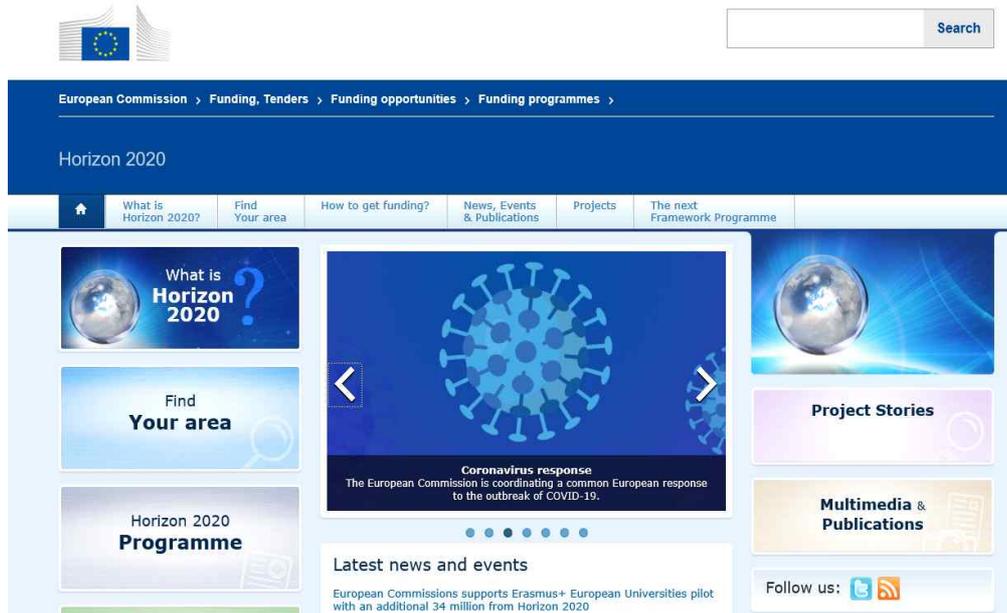
[그림 3-12] 미국 NIOSH 코로나19 관련 웹사이트

4) 유럽연합

○ Horizon 2020 : 유럽연합 최대 규모의 연구기금 지원 프로그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보건·의료 부문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최대 규모의 연구 기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의 경기침체 해소와 경제 시스템의 안정화,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연구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시작한 연구기금 프로그램으로, 2020년까지 우수한 과학 경쟁력 확보, 산업 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3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유럽의 성장 목표를 능률적이고 포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항목은 건강 수준 향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 수명이 증대되면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 및 OSH 연구는 능률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 포괄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림 3-13]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지원

○ 코로나19 대응 2차 연구지원 프로젝트

유럽연합은 2020년 5월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혁신적이고 신속한 건강 관련 접근을 위해서 1억 2950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다 수준높은 보건의료시스템 준비(SC1-PHE-CORONAVIRUS-2020-2)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2020년 8월 11일 유럽연합은 23개의 프로젝트가 연구기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23개의 프로젝트에는 유럽연합국 40개국에서 347개의 연구팀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3-1>.

- ① 핵심 의료물품과 장비 제조의 신속한 용도 변경 (2210만 유로);
- ② 하이테크 수준의 돌봄과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술, 디지털 기구, 인공지능분석 (5520만 유로);
- ③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의 행동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2800만 유로);

- ④ 범유럽 COVID-19 코호트 구축 (1990만 유로);
- ⑤ COVID-19 과 관련된 국제적 코호트와 유럽연합의 협업 (300만 유로)

<표 3-1> 유럽연합 코로나19 대응 2차 연구지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약자	프로그램명	참여기관
핵심 의료물품과 장비 제조의 신속한 용도 변경		
imPURE	의료용품에 대한 신속한 용도 변경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CO-VERSATILE	핵심 의료기기와 장비의 긴급한 수요에 대한 공급 방법과 해결책	SZTAKI
RESERVIST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동안 의료기기와 물품 공급을 위한 제조라인의 용도변경	Centre Scientifique & Technique de L'Industrie Textile Belge
Eur3ka	유행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핵심 의료물품과 장비 제조업체의 용도변경	Engineering Ingegneria Informatica Spa
하이테크 수준의 돌봄과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술, 디지털 기구, 인공지능 분석		
ESSENCE	공감 플랫폼: 노인과 아동을 모니터링하고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Politecnico di Milano
PyXy.AI	COVID-19과 심폐질환자의 감시를 위해서 AI 에 의한 원격의료	Bat-Call Ltd
icovid	COVID-19 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AI 기반 흉부 CT 분석	Icometrix NV
INNO4COV-19	COVID-19 진단, 예방, 감시를 위한 혁신 촉진	Laboratorio Iberico Internacional de Nanotecnologia
COVIRNA	COVID-19 환자 진단기구	Luxembourg Institute of Health
CleanAir	공기오염 제거 시스템의 개발	Villinger GmbH
ENVISION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의 행동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COVINFORM	코로나바이러스 취약성과 정보 역학연구와 모델링	Synyo GmbH
PERISCOPE	COVID-19 영향에 대한 범유럽 대응과 감염병의 미래 대유행	Universita degli Studi di Pavia
SHARE-COVID	COVID-19 통제 결정으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건강 영향과 경제적 사회적 영향: SHARE 로부터의 교훈	Max-Planck-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Wissenschaften
RESPOND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정신적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준비도 향상	Stichting VU
범유럽 COVID-19 코호트 구축		
ORCHESTRA	COVID-19 대유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럽 코호트들간의 연결	Universita degli Studi di Verona (이탈리아)
COVID-19 과 관련된 국제적 코호트와 유럽연합의 협업		
unCoVer	COVID-19 에 대한 근거기반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데이터 공개	Institute of Tropical Medicine-ITM

5) EU-OSHA

○ OSH wiki⁹⁾ 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의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일반 정보,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 직장 내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여행 및 회의 개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14. 그림 3-15].



[그림 3-14] OSHwiki 메인 홈페이지



[그림 3-15] OSHwiki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사업장 가이드라인

9) OSHwiki란 EU-OSHA에서 개발한 정보제공 페이지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 정보, 우수사례를 정부, 산업 및 노동자들 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쉬운 콘텐츠 업로드, 내용 수정, 기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위키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https://oshwiki.eu/wiki/Main_Page 참조)

6) 유럽재단 유로파운드(Eurofound)

(1) 코로나19 특별 페이지¹⁰⁾ 운영

- 코로나19 관련 자료 및 데이터 제공, 온라인 설문조사와 연구 수행, 기타 중점적인 사안을 주제로 단신 형태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있다 (그림 3-16).



[그림 3-16] 유로파운드(Eurofound) 코로나19 특별 홈페이지

10) <https://www.eurofound.europa.eu/topic/covid-19>

(2)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삶과 일 그리고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삶과 일 그리고 코로나19 (Living, working and COVID-19)」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시기간: 2020년 4월 9일~4월 30일
 - 대상집단: 18세 이상 성인 86,457명으로 EU27과 영국 거주자
 - 실시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모집방법: 눈덩이 표집, 광고와 소셜미디어 활용
 - 설문내용: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일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및 조사 항목
 - 각 유럽연합의 86,45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중에서 불충분한 데이터를 제외한 62,75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 항목
 - » 삶의 질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 »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 »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 » 기타: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조건 변화, 일-가정 양립, 재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 재택근무 등을 포함
 - » 재택근무의 경우 Bevan, Mason, Bajorek (2020). Working at Home Wellbeing Survey의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
 - 특히 ‘근로와 재택근무’에 관해 새롭게 도입된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13번 질문. 코로나19 기간동안 당신은 직업을 상실했습니까?

- » 14번 질문. 코로나19기간동안 당신의 근무시간은 어떠했습니까?
- » 17번 질문.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당신은 집에서 얼마나 자주 일했습니까?
- » 19번 질문. 향후 3개월안에 당신은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조사 결과 3종류의 Data set 생성되었고, 이 데이터는 Eurofound 웹사이트에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covid-19>) 공개되고 있다.

- » Data: Quality of life and COVID-19
- » Data: Work, teleworking and COVID-19
- » Data: Financial situation and COVID-19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는 Eurofound 웹사이트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covid-19>)에 제공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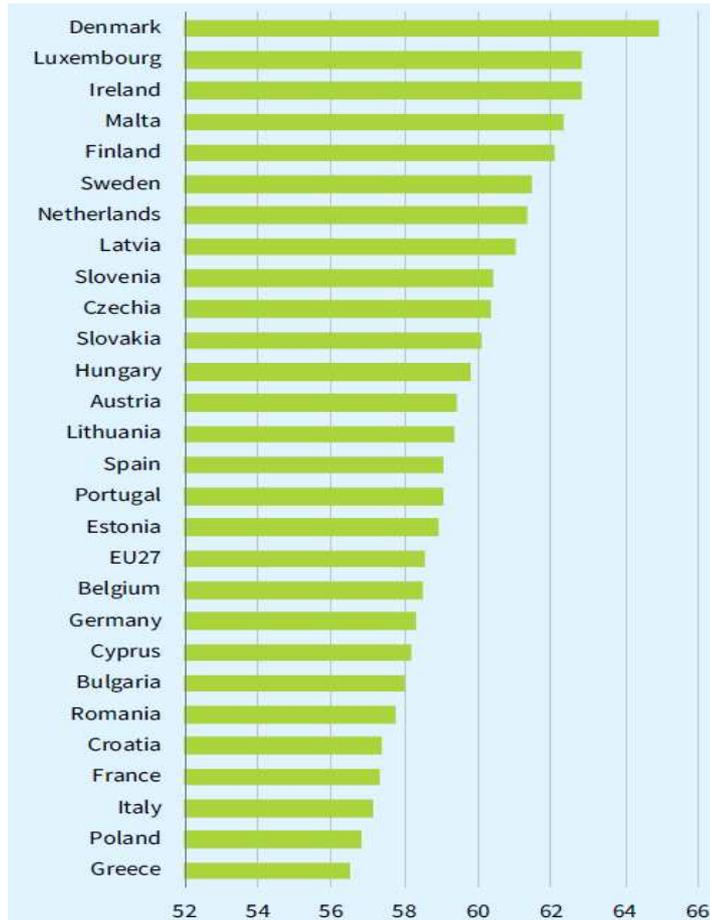
- 5월 6일자로 발표한 1차 분석결과는 코로나19와 생활만족도 및 행복지수, EU 회원국 응답자 중 실직자 및 일시적인 휴직자의 비중, 각 국별 근무시간 감소 현황, 원격근무자 비중, 일-가정 갈등의 다양한 측면, 각 국별 응답자의 팬데믹 전후 재정상황 변화 등을 보여준다.

- “삶의 질과 COVID-19” 에 관한 결과

» 젊은 성인과 구직자들의 정신적 웰빙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젊은 성인 1/5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WHO 의 삶의 질 도구를 이용하여 정신적 웰빙을 측정한 결과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점수는 58점 정도였으며, 덴마크의 성인들의 정신적 웰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성인들의

정신적 웰빙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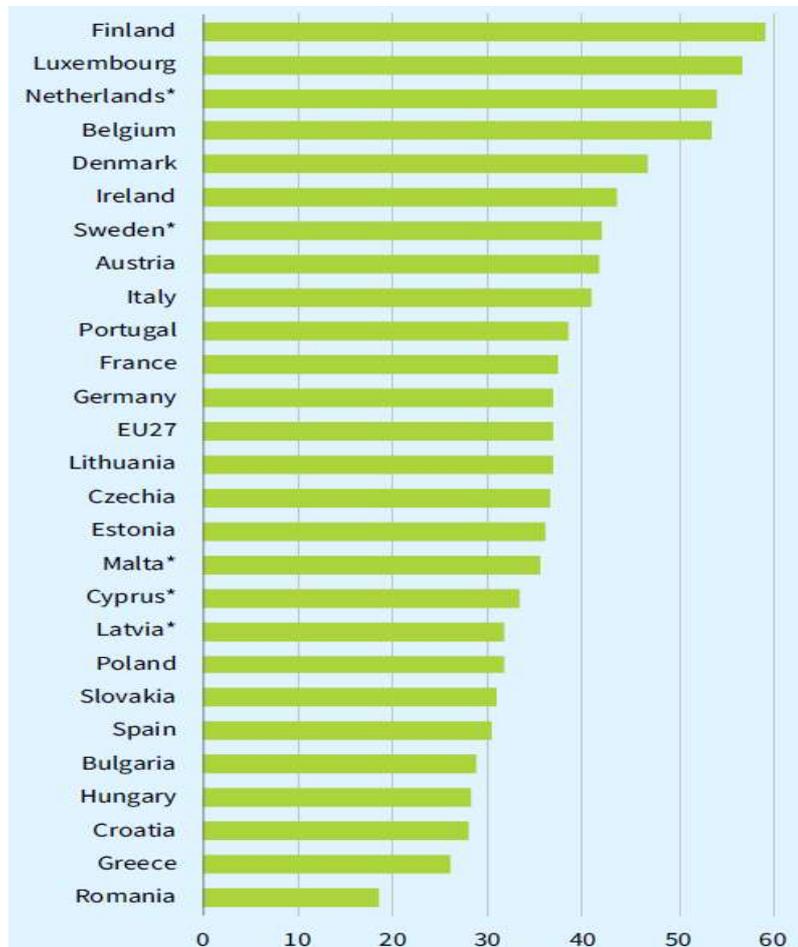


**[그림 3-17] 유로파운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국별 정신적 웰빙**

- “근로, 재택근무와 COVID-19” 결과
 - » 코로나19 유행의 결과 모든 유럽국가의 1/3 이상 (37%)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3-18).
 - » 노르딕 5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베네

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약 60%,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재택근무자의 25% 이상이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돌봄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자의 요구도를 평가하는 것이 새로운 근로환경 출현의 핵심요건이 되고 있다.



[그림 3-18] 유럽연합국별 재택근무 근로자의 비율

(3) 코로나19 관련 연구 주제 및 출판물 현황

- Eurofound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연구결과를 다양한 출판 형식(보고서, 블로그 기사, 프리젠테이션, 홍보출판물, 브로셔, 정책, 논문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표 3-2>.

<표 3-2> 유로파운드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주제 및 출판물 현황

연구 주제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그린, 사회적, 디지털에 속련된 유럽	경제회복과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시대, 유럽 그린 딜
장애인을 급증하는 원격근무에 포함시키는 방법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직업참여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원격근무를 들고 있으므로 장애인에게 원격근무의 기회 제공 필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At your service: Working conditions of interactive service workers)	고객과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화 탐색
코로나19와 최저임금보장 (What Europe can learn from living-wage campaigns)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서비스 직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의 최저생활수준 보장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촉발: 근로자의 대처 (COVID-19 unleashed the potential for telework- How are workers coping)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재택근무 환경에 사무직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코로나19가 여성근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여성, 특히 저임금 여성근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종사자의 정서적 부담 증가 (COVID-19 intensifies emotional demands on healthcare workers)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 가중과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로 대두된 플랫폼 노동자의 질병휴가 문제 (Coronavirus highlights sick pay void for platform workers)	코로나19 확진된 노동자의 자가격리 시 유급병가 사용 문제
코로나19가 가져올 유럽의 원격근무 환경의 변화 (COVID-19 could permanently change teleworking in Europe)	재택근무 및 ICT 기반 원격근무 비중 증가 전망
코로나19와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Coronavirus: A labour market earthquake)	코로나19과 관련된 유럽 기업의 근로자 감축 사례 정리
경기위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기 (Economic downturns expose the vulnerability of a growing number of precarious workers)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위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사회적 보호망에서의 격차에 대한 분석

7) 영국 NHS, HSE

(1)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영국 NHS는 COVID-19 관련 앱(NHS COVID-19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NHS COVID-19 앱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앱은 접촉 추적, 특정 지역의 정보단계 알림, 특정 장소 체크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3-19].



(2)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영국 HSE는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 및 권고사항에 대한 특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https://www.hse.gov.uk/coronavirus/index.htm>)

○ 코로나 관련 지침 혹은 가이드 13종 제공

- 지역의 코로나19 경보 단계
- 코로나19로부터 당신과 타인 보호
- 코로나19 검사
- 근로와 재정적 지원
- 사업과 자영업
- 학교 개교, 교육과 아동 돌봄
- 해외여행과 이민
- 운전과 이동
- 보건의료인력, 돌봄제공자와 돌봄 장소
- 건강과 웰빙
- 주거
- 자원봉사와 도움 제공
-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 일반지침: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안전하기 일하기(Working Safely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a short guide)

- 누가 근무해야 하는가?
 - 작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려하기
 -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든 근로자를 식별하기

- 가능하다면 재택근무 시행하기
- 근로자가 집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예: 노트북, 휴대전화, 비디오, 회의장비)
- 재택근무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그들의 복지에 대해 논의하여 그들이 여전히 사업에 속해 있음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위생 수칙 지키기(비누와 물로 손 씻기 최소 20초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 정하기

- 위험이 높은 근로자 보호하기
 -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하여 집 밖에서는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계획 세우기
 - 가정에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재택근로자를 위한 계획 세우기
 - 위험이 높은 근로자가 현재 역할 또는 대체 역할에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위험이 높은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안전한 역할을 제공하기
 - 자가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세우기

- 출근 및 퇴근
 - 근로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출퇴근 시 자신의 교통수단으로 혼자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식별하기(안전한 경우, 걷거나 자전거타기)
 - 근로자들이 동시에 입출구를 지나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에 시차를 두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기
 - 손씻기 시설 제공하기(흐르는 물, 비누, 종이타올 및 건조기) 제공하기. 근로자들은 사업장출입시 손을 씻을 수 있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손

소독제 제공하기

- 근무공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영국공중보건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작업 영역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함

- 근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물리적으로 배치하기
-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돕기 위해 바닥 표지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영역 표시하기
-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시키는 간판 제공하기
- 나란히 작업하는 것과 같이 대면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배치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다음을 고려하기

- 작업영역 당 사람 수 정하기
- 작업 영역에 있는 사람 수 줄이기
- 근로자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같은 팀에서 교대 근무하는 교대팀(코호트라고도 함)에 할당하고 유지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수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하기

- 작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표면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 고려하기

- 작업공간, 장비 및 차량을 얼마나 자주 청소할지 결정하기.(예: 장비를 사람 간 또는 교대근무 간 공유하는 경우 사용이 끝날 때마다 소독하기)
- 정기적으로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식별하고 청소 빈도 결정하기
- 손 씻기 어려운 경우, 차량 승하차 및 배달 처리자에게 손 소독제 제

공하기

- 이동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이동하는 방식 고려하기

-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기
- 근로자들간 작업과 장비 회전률을 제한하기
- 승강기 및 작업 차량 이용자의 수 제한하기
- 승강기, 복도, 개찰구 및 보도를 포함하여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사람 수 줄이기
- 근로자들의 사회적 거리를 돕기 위해 바닥 페인트 또는 테이프로 영역을 표시하기
-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임시 보행로 도입을 고려하기

- 공용공간

구내식당,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공용공간 검토하기

- 근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물리적으로 테이블/의자 이동하기
- 근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휴게실, 식당 등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휴식시간에 시차두기
-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휴식공간 마련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 페인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영역 표시하기
- 장소가 적절하고 안전한 경우 휴식을 위한 외부공간 사용하기
- 근무시간동안 근로자가 현장에 머물도록 장려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공용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표면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 고려하기
 - 사업장 내 공용영역 청소 빈도 고려하기
 - 정기적으로 만지는 물건과 표면을 식별하고, 청소 빈도 결정하기
 - 휴게실,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설정하여 청결 유지하기

- 개인위생
 - 흐르는 물, 비누, 종이 타올 또는 건조기를 제공하는 손씻기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 세면시설 외에 손 소독제 제공하기
 - 좋은 손씻기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표지판과 포스터 사용하기
 - 얼굴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기침/재채기 시 팔꿈치로 얼굴을 가릴 것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기
 - 화장실 외 여러 위치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청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 상품 및 제품 취급방법과 청소 절차 시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기

- 정보 및 안내
 - 근로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도입된 절차, 안내 또는 작업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 작업 시작 전 정보 공유하기

-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예: 방문자, 고객 또는 계약자)와도 이 정보를 공유하기. 여기에는 표시 또는 통지가 포함될 수 있음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침을 전달하는 방법 고려하기
 -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우려 사항을 듣고 행동하기
- 개인보호장비(PPE)
 -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를 계속 제공하기
(예: 나무먼지, 밀가루, 용접 흠, 실리카 분진 등에 노출)

○ 위험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¹¹⁾

- 영국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크게 8가지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p>1</p> <p>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위험성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관리(개인 위생 관리 등) •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여부
<p>2</p> <p>출근 직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필수 인원만 근무하는지 여부 • 작업현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만 배치 •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 건강에 유의하는 한편, 다수의 인원이 현장근무를 한다면 재택근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 • 현장 외 근무중인 노동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이들의 복지 및 심신 건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여부 •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 갖추기(원격 시스템 등)
<p>3</p> <p>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p> 	<p>① 출퇴근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혼잡시간대(러시아워)를 피해 시차제 출퇴근 제도 시행 • 출입구를 한 곳으로 줄여서 운영 • 건물 입구 및 출구에 손세정제 혹은 세면대 준비 <p>② 건물 혹은 사업장 내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일방통행으로 다니도록 안내 • 엘리베이터, 좁은 복도, 계단 등 사람이 붐비는 구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 시행

11) (안전보건공단, 영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안전보건 대처방안, 국제 안전보건동향, vol. 473, 2020. 06.)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p>3</p>	<p>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작업구역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공간, 레이아웃에서 가능한 사람들이 떨어져서 작업 • 테이프나 페인트를 통해 노동자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 ④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내 펜 등 비품을 공용으로 쓰지 않도록 함 • 회의를 야외에서 진행하거나 환기장치를 갖춘 장소에서 실시 ⑤ 공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또는 층별로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두어 사람이 안모이도록 구분 • 내방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접수대에 아르밀 보호판 설치 • 마주보고 앉는 것을 자양, 지그재그로 앉거나 적정 거리를 두고 책상을 배치
<p>4</p>	<p>고객 및 거래 방문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래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나 협력사 방문시 방문인원을 최소화 • 가능할 경우 방문자 기록 남기기 ② 지침 제공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하는 고객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실시 • 고객에게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로 안내
<p>5</p>	<p>사업장 청소 및 세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점 혹은 부분 영업을 한 사업장이 재개장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장치 가동여부 확인 ② 사업장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사업장 및 장비들을 자주 청소 • 손으로 자주 만지는 부품(손잡이, 프린터 등)을 청소 ③ 개인위생 - 손씻기, 화장실 등 시설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소에 손세정제 비치 •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올바르게 손 씻기, 자주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기침 혹은 재채기 때 사용한 화장지를 바르게 버리기, 화장지가 없을 때 팔로 가리기 안내 ④ 사위실 및 탈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위실 혹은 탈의실이 필요할 경우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사용 ⑤ 손에 닿는 물건, 기계 등 장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굴삭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관리 및 세척 • 통근버스 운영 시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
<p>6</p>	<p>개인보호구 및 마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보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별개로 기존에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는 계속해서 착용. 단, 코로나19는 다른 형태의 위험이기 때문에 개인보호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보건적 측면으로 접근 ②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전후 20초동안 비누를 활용하여 손씻기 혹은 손세정제 활용 • 얼굴 혹은 마스크의 세균이 묻지 않도록 만지지 않을 것

7

인력관리



- ① 교대근무 및 그룹화**
 - 팀이나 교대 그룹을 운영하고, 해당 그룹 내 인원들만 접촉하는지 여부
 -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는 장소 파악, 필요시 공정에 따라 전달 장소를 만들어 비대면 형식으로 공정을 구성
- ② 업무출장 자양**
 - 필수 출장인지에 대한 여부(가능한 원격 회의 시스템 활용)
 - 한 차량으로 갈 경우 출장인원을 최소화, 동반 출장자를 고정화 부득이하게 대면할 경우 가능한 환기 실시
- ③ 의사소통 및 직원 교육**
 -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간 대화를 통해 업무형태 변화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조율
 - 사진이나 단어를 활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지침을 설명 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집단 또한 고려

8

납입, 납품 물품관리



- 물품 발송 및 수취 장소 지정,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닥에 표시
- 물품 운송 빈도를 가능한 줄이기. 자주 운송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능한 많은 물품을 운송
- 물품 운반 시 가능한 한 사람이 작업하도록 하며, 부득이할 경우 조를 짜서 작업하되 안전 확보

○ 사업장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안전보건의 새로운 기준(표준)¹²⁾

산업안전보건 전문 변호사 리안 그리브스(Rhian Greaves)는 사업장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표준)’ 방안을 제안하여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새로운 위험성 평가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1) 늘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라 :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라

- 사업장의 위험요소 통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코로나19 위험성 평가 대책이 완성되면 기존 위험성 평가의 과정이나 절차와 부딪히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

(2) 다양한 지침(가이드라인)을 활용하라

-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코로나19로부터 사업장을 지키기 위하여 ‘8대 산업별 가이드라인¹³⁾’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본 자료를 활용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호 노력을 배가할 수 있다.

12) (안전보건공단, 영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안전보건 대처방안, 국제 안전보건동향, vol. 473, 2020. 06.)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13) <https://www.gov.uk/guidance/working-safely-during-coronavirus-covid-19>

8대 산업별 가이드

▶ 안전하게 일하는 5단계 방법



건설업 및 기타 야외 작업



사업장 및 창고



실험실 및 연구시설



사무실 및 고객지원센터



기타 가정에서 근무
(타인의 집에 배달 방문하거나
집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포장 및 배달 제공 식당



가게 및 체인점



차량

(3) 직원들이 각기 다른 개개인임을 명심하라

- 한 사업장에는 다양한 직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는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도 있을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예.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바이러스에 더 취약 할 수 있음)
- 즉, 위험 관리 대책은 두루 적용되도록(one size fits all) 만들 수 없기에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위험에 더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하며, 동시에 사업장에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4) 노동자(직원)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이끌어라

-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의 핵심은 참여에 있음. 우리는 코로나19 문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고 이는 집단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개인의 집 등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올 때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에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논의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함. 결론을 도출하면 명확하게 게시하여 사업주가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함

(5) 의사소통(대화)은 아주 중요하다

- 영국 안전보건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지침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권고 받음. 아울러 직원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대화)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사업장 운영 재개 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포함 되어야 하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FAQ)을 관리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재택근무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라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로드맵’에 따르면 ‘당분간 노동자는 집을 포함한 어느 곳에서도 가능한 곳에서 업무를 지속해야’ 하며, 이에 인간공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인간공학적인 요소 : 추가적인 평가의 필요여부, 의사소통 경로의 원활한 작동 여부, 직원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는지, 정신건강 및 웰빙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 여부 등

(7)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자의 검사, 추적 및 격리하기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노동자 발견, 격리, 검사 및 함께 근무한 노동자 추적을 위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공공보건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8) 업무 협력 관계자를 고려하라

-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협력 관계자에 대한 요소도 신경 써야 함. 즉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위험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함

(9) 정보를 늘 업데이트 하라

- 노동자가 최신 정보를 늘 주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이는 학술적인 근거에 기반 하여 관련 규칙이 예고 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사람을 정하여 필요 시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현황

1. 조사 개요

코로나19 사업장 대응현황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4-1>과 같다.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관리자 각각 5명이 전체 코로나19 사업장 대응현황 및 지원 요구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내용 중 교육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안)에 대한 서면 자문에 참여한 제조업 보건관리자 3명을 추가로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다(부록 6과 부록 7 참고).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종사 보건관리자 5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30대 1명, 40대와 50대가 각각 2명이었다. 조사대상 제조업 보건관리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지역이 2명이었고, 대구지역이 3명이었다. 조사대상 제조업 보건관리자 3명이 각각 소속된 사업장의 종사자수는 500-999명이었고, 2명은 각각 10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가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다. 현 직장경력은 2년 이하가 1명, 11-15년, 16-20년, 21-25년, 25년 이상이 각각 1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 종사 보건관리자는 남성 3명, 여성 2명이었고 20대 1명, 30대가 4명이었다. 조사대상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지역이 2명, 서울, 인천과 전남이 각각 1명이었다. 조사대상 건설업 보건관리자가 각각 소속된 사업장의 종사자수는 500-999명이 3명, 1000명 이상이 2명이었다. 현 직장경력은 2년이하가 1명, 3-5년이 4명이었다.

<표 4-1> 조사대상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제조업		건설업
		1차	2차*	
성별	남자	0	0	3
	여자	5	3	2
연령	20-29	0	0	1
	30-39	1	2	4
	40-49	2	0	0
	50-59	2	1	0
사업장 소재지	서울	0	0	1
	경기	2	0	2
	인천	0	0	1
	대구	3	0	0
	전남	0	0	1
	경남	0	3	0
종사자수	100명 미만	0	1	0
	100-299	0	0	4
	300-499	0	0	1
	500-999	3	0	0
	1000+	2	2	0
현 직장근무경력	2년 이하	1	1	1
	3-5년	0	1	4
	6-10년	0	0	0
	11-15년	1	0	0
	16-20년	1	0	0
	21-25년	1	1	0
	26년 이상	1	0	0

* 교육지원 요구에 대한 설문에만 참여

2. 제조업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현황¹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홍보물 전구역 부착 및 안내(3) 손소독제 및 세정제 비치(각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전사업장 방역 주 1~2회 자체적 방역 실시 중 (각 공장별 관리감독자가 실시, 재정은 안전·보건 예산으로 집행)(4)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비상 대응조직 모니터링 운영 철저한 방역,집체교육,회의,출장 중단 단체집합시설 폐쇄(샤워실,휴게실 등) 전직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발열감시시스템 운영(발열측정)(2) 발열자 체온 및 주기적 확인, 체크 방문 및 출입 시 열 체크 및 손 소독 후 내부 출입 외부 방문객 발열체크 및 위생안내 사내 출입시 통제(근로자체온측정,손소독) 외부인 사내 출입금지 방문객 경비실 옆 면회실에서 업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식관리(칸막이 설치, 2부제 배식) 해외 출장자 및 의심자 재택근무 및 증상 모니터링 개인, 가족간 확진검사 시 결과가 음성 나올 때까지 출근 제한 조치(3)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관리자에게 24시간 즉시 통보(미통보시 불이익) 보건관리자 1차 상담 후 출근여부 결정 의심환자 발생시 업무중단 접촉의심 또는 발열시 재택근무 및 휴가 사용 조치(2) 37.5도 기준시 사업장 출입금지. 귀가조치, 재택근무 밀접 접촉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환자 즉시 퇴근 및 진단검사 실시 의심자 즉각적인 협력병원진료 코로나 감별 진단 및 검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1가지 이상 발현 시 병원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 및 검사 여부 확정

14) 내용 중 2명 이상이 기술한 내용은 괄호안에 기술한 인원수를 기입하여 표시함. 예: (2)는 2명이 해당 내용을 기술한 것을 의미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시 회사 휴무 공지 후 즉시방역, 확진자 동선 및 밀접접촉자 선별진료안내 • 확진자 자가격리(2) • 자가격리통보서를 발급받은 확진자에 대해 14일간 유급휴가 부여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이동 조치 • 확진자 동선파악 및 접촉자 조치 • 밀접접촉자 협력병원 검사 실시 후 14일 격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 사용공간 방역(2) • 공장 전체 방역실시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환경팀으로 코로나대응 비상대응조직 시스템 구축(1) • 업무 공유화 시스템 구축 • 전 부서를 3개조로 조직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분하여 운영 • 1개조에서 확진자 발생시 나머지 2개조에서 업무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코로나19 전담팀을 제외한 팀은 2팀으로 조를 나누어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자간 접촉이 없도록 함 • 팀별로 증상 및 발열자 오전/오후 2회 파악 후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실시(온라인 체계 구축) • 격일근무 실시 • 경영 매뉴얼 지침에 반영되어 있음
휴가 및 휴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침 준수 • 정부지침 의거 유급휴가 실시(확진자, 자가격리, 출장자, 업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조가 교대로 휴업 진행 • 제품 오더 및 생산량에 따라 단체 휴가 조정 • 자율적인 휴가 사용 • 재택근무 독려
유연근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특성상 기계를 세울 수 없어서 활용하고 있지 않음 • 연구직, 사무직은 유연근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근무제(오전 10시 이전 출근, 오후 4시 이후 퇴근) 선택

I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현황..15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현재 진행 중 정부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로 인한 경연난으로 회사 차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 지원 불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능 검사를 제외한 특수, 배치전 검진 실시(2) 6월 중순이후 검진 시행 특수, 배치전 유예 종료에 따라 20.9.14 까지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침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한 사내, 사외 예방행동수칙 준수 등 회사내 비대면 근무 준수 본인/가족(밀접접촉자) 건강 및 감염증상 확인 및 즉각보고 사내게시판/배너 지속 게시, 안내 회식금지, 서클활동 금지 등 지속적인 홍보문자 발송 최소 2m 사회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간 이동 최소화 집단모임 중지(회식, 동아리 활동)(2) 밀집지역(공용장소)이용 제한 휴게실/식당 등 마스크 벗고 대화 또는 음식물 나눠먹는 행위 금지 통근버스 등 밀폐된 장소 마스크 벗는 행위 금지 식당테이블 칸막이 설치 식당 일렬 의자 배치 및 부서별 식사 시간 재배정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대면 회의 금지(2) 대면회의 자제(영상회의, 유선, 이메일 등으로 진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회의 진행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내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출장 금지(2) 국내출장 최소화(3) 영업파트 국내출장 대부분 면대면 자체 전화상담으로 전환 출장 시 마스크 착용 철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 불가피한 출장 전·후 자가문진표 작성, 예방물품 지원, 14일간 발열 체크(2) 증상의심 시 자가격리 및 예방대책 준수

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사업장 보건관리자 5명이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영역에 대해 현장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정도는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회의”는 각각 100%,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휴가 및 휴업 관리”, “유연근무제 활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국내출장”은 각각 80%이었다.

<표 4-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의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지침 항목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지침 항목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매우 어려움	0	유연근무제 활용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3
	약간 쉬움	3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매우 어려움	1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1		약간 쉬움	2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사업장 내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	매우 어려움	0	특수·배치전건강 진단 지도 지침	매우 어려움	0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2		약간 쉬움	3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	매우 어려움	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3
	약간 쉬움	2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매우 어려움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회의	매우 어려움	0
	약간 어려움	4		약간 어려움	5
	약간 쉬움	0		약간 쉬움	0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휴가 및 휴업 관리	매우 어려움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국내출장	매우 어려움	0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4
	약간 쉬움	1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
노동자 위생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사업장 외부의 위생관리 어려움(2) • 외부 방문객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어려움 • 인력부족 문제 • 초기 손소독제 구입 애로로 예방물품 확보가 어려웠음 • 70% 알코올로 분무하는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손 소독제 매일 확인 및 채우는 업무 추가 외에는 문제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 맞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매체를 통한 정보나 질본정보 외에 전문가를 위한 정보 채널이 있었으면 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예방물품을 지속 지원 • 사업장내 감염병 예방물품에 대한 세금 감면등 혜택 방안 필요 • 분무소독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시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의심자 확인 및 방역 조치를 위한 인력 부족 • 손소독제,체온계,마스크 등 물품 수급 어려움(2) • 초기 열화상 카메라 구입 판로 어려움으로 적외선 체온계로 전직원 체온 모니터링 했음 •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에 대해 인지도가 낮아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 체온 체크 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지급 • 의심자에 대한 결과 전까지 재택근무 조치에 대한 부서 불만 가중 • 코로나 초기에는 유급휴가 부여했으나 개인휴가로 권유하는 추세임 • 노동조합의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외에 사업장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가능 부서 안전보건공단 내 설치 • 마스크 구매 관련하여 가을철 호흡기질 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격, 수요·공급 등 대책 마련 • 유연제 근무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 활성화 필요 • 확진자가 아니어도 코로나19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의견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산 방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의심자 확인 및 방역 조치를 위한 인력 부족 •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물품 수급 어려움(2) • 초기 열화상 카메라 구입 판로 어려움으로 적외선 체온계로 전직원 체온 모니터링 했음 •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에 대해 인지도가 낮아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 체온 체크 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지급 • 의심자에 대한 결과 전까지 재택근무 조치에 대한 부서 불만 가중 • 코로나 초기에는 유급휴가 부여했으나 개인휴가로 권유하는 추세임 • 노동조합의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외에 사업장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가능 부서 안전보건공단 내 설치 • 마스크 구매 관련하여 가을철 호흡기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격, 수요·공급 등 대책 마련 • 유연제 근무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 활성화 필요 • 확진자가 아니어도 코로나19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무급휴가 지원 시 기준 마련 • 선별진료소 전화통화 시 명확한 안내 부족 및 질병관리본부 통화 어려움 • 호흡기질환과 의심환자에 대한 구별 어려움 • 의심시 증상완화 시까지 재택근무 조치 어려움 •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은폐(반복된 거짓 진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명확히 답변해주시 못함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외 능동감시자 또는 의심자 검사시 비급여 검진비용이 높음 • 코로나19 검진비용 건강보험에서 지원 • 산재보험에서 감염병 예방 비용 지원 •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 증상에 대한 안내 및 교육 • 지역사회 감염 예방법의 강화로 거짓 진술시 처벌 필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의견
<p>사업장 내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치가 상이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부족함 • 확진자 발생 시기를 조기에 알기가 쉽지 않을 듯 (불이익 우려) • 사업장 내 이동 동선 다양하여 접촉자 다수 발생 • 개인정보 보안유지 및 동선에 대한 파악 어려움, 접촉자 불안 야기 • 확진자에게만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따른 은폐(예: 의심자는 KF94마스크 착용 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 접촉에 대한 보건소 안내가 모호함 • 빠른 방역지원이나 확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안내해도 확진자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달라 파악 전이라는 답변을 함 • 비상 대응조직으로 신속한 전달 및 공유 • 확진 의심자는 숨기고 미루기 보다 스스로 알릴 수 있는 방침 마련
<p>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결근시 인력문제 및 생산량 저하의 어려움 발생 • 재택근무시 기술직(현장)적용 애로사항으로 수시방역 및 비상반 운영 • 연구소 등 기술직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나, 생산 및 일반 사무직 업무 재택근무화에 따른 시스템 지원 필요 • 대규모 결근에 따른 재택근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 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업무 전담부서 마련 • 추가조직에 대한 지침, 지원 등이 필요 • 제조업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 대규모 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비상대응반이 안전보건담당자 전담으로 구축하여 장기간 피로도 및 업무부담이 가중됨 • 대응에 대한 안내 및 교육
<p>휴가 및 휴업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차별적인 휴가지원에 어려움 •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려움(증상정보에 따른) • 급여 감소로 경제적 부담감 • 그 외 격리, 능동감시자에 대한 휴가, 검진 비용 처리에 대하여 개인부담 문의 및 불만사례 접수 • 접촉자에 대해 검사, 격리 등에 따른 개인 휴가 사용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의 집단 반발(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겠다는 논리) • 확진자에게만 유급휴가 부여하니, 검사 후 결과 도출까지의 시간은 개인 휴가 사용을 권장함. 그래서 노동조합과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밀접접촉자, 그의 접촉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정보공유 및 교육 • 검사자도 유급휴가 선별적 지원 필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의견
유연근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일부종사자에게 적용가능함 • 제조업체는 생산라인이 운영되므로 유연근무제가 어려움 •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내부 지침 부족으로 실제 적용 안됨 • 유연근무제 활용하니 근무자에 대한 발열체크 및 확인으로 전담자들은 오전 6시부터 출근 오후 7시까지 근무로 업무가중, 피로도 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적용시 정부지원 • 사업주 교육 • 유연근무제로 근무자들에게 대한 보건관리 전담자는 1~2명으로 한정근무로 장기상황 시 관리 어려움, 분산 대책 방안 필요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 신청을 장려하는 분위기 마련이 어려움 • 육아에 한정되어 노부모/중,고등학생 가족 돌봄은 지원없어 어려움 • 코로나로 초등 개학이 지연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퇴사하는 경우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분위기 변화가 필요 • 4대보험비용으로 지원범위 확대 필요 • 국가적, 지자체별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전검사 및 특수검진을 일정기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즉각적인 연락이 안되어 행정적으로 차질이 빚어짐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신규장비 가동이 지연됨 • 유예로 인해 검진일정 잡기에 어려움 발생 • 유예기간으로 검진지침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유예 종료에 따른 검진기간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및 업무차질로 장기간의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외부기술자 방문 등 제한적으로 업무개시 증임 • 종교단체,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외부 활동에 대한 위생관리 및 통제 어려움(3) • 장기간 지속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지속 안내하나 개별적 행동들로 어려움(소모임, 운동, 회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 다각도의 의식변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리두기에 대해 피로감 호소 화상회의 등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나, 면대면 회의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무조건 막을 수 없는 상태임 마스크 착용 시 부적절하게 착용하고 회의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회의 전환에 따른 지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내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진행 차질 발생 회사 이윤과 관련 있어 영업사원은 업무 관련하여 애로점 많다고 함 정부지침 준수 	

3. 건설업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현황¹⁵⁾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근로자 마스크 지급(2) 마스크 공동구매 추진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확보(마스크, 세정제, 페이퍼타올, 체온계 등) 협력사 손소독제, 방역물품 지급 방역일 지정 후 방역 실시, 지도 및 감독 주1회 사무실, 근로자 휴게실 소독 실시 실내 현장, 교육장, 사무실 오전/오후 소독(2) 실외 손잡이 점심시간 전후 소독 화장실, 휴게실 4시간 간격 소독 계단손잡이 오전 오후 소독 사무실 및 창고 등에 락스희석액(100배) 및 걸레 비치하여 시설 사용 전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출역 시 업체별 체온측정 현장식당 출입 전 열화상카메라 사용하여 체온 측정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 곳곳에 비치(2) 구내식당 옆 손세정실 설치 및 손세정제 근로자 이동 동선에 배치 손세정실에 손 씻기 방법 게시 근로자 휴게실 페이퍼타올 설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근로자 출역 즉시 신규 교육 실시 현장 투입근로자는 마스크 착용 후 TBM 실시 소규모 TBM(Tool Box Meeting) 진행 오전 TBM시 근로자 발열 체크 실시(간격을 넓히고 체조는 한시적 중단) 매일 아침 05:30~07:00 까지 근로자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체온계를 통해 체온 측정 후 현장 투입(2) 신규채용 근로자 문진표 작성 및 교육시 마스크 착용 후 안전교육장 입실(고막체온계 기준 37.0 이상 시 귀가 조치) 2인 1조 측정, 보조 관리감독자 지정 체온측정 후 일일 스티커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교육 시 체온 측정 및 최근 일주일간의 동선 파악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 최근 동선 파악 상시 근로자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 권고 근로자 마스크 착용 강조 및 지급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 출입관리대장 작성 구내식당에 근로자 차폐막 설치하여 비말감염 예방 사무실 출입시 손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후 출입 가능

15) 내용 중 2명 이상이 기술한 내용은 괄호안에 기술한 인원수를 기입하여 표시함. 예: (2)는 2명이 해당 내용을 기술한 것을 의미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내 출입금지 및 관내 보건소와 현장 안전보건팀에 즉시 연락 • 접촉자 발생시 판정시까지 자택대기 • 본사와 연계하여 해당직원과 직접적으로 접촉인원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 • 즉시 퇴근 후 자가격리 실시 • 역학조사관 협조 및 접촉가능인원 5일 자가격리 • 해외출장 복귀 및 귀임시(귀임휴가 포함 2주간) 재택근무 • 접촉의심, 건강이상(3일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와 접촉 근로자 파악, 코로나19 검사 실시 • TBM시 온도체크 결과 발열이 있는 경우 바로 보건소에서 검진 실시 • 증상발현 시 검사진행 • 현장출입제한 및 전문방역시행 • 무증상 시 상황해제 • 보고절차에 따른 보고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내 출입금지 및 관내 보건소와 현장 안전보건팀에 즉시 연락 • 코로나19 종합상황실 보고(본사) • 보고절차에 따른 보고 • 보건소 연계하여 보건소 통제에 따름 • 확진 시 보건소 연계 치료 • 현장전체인원 2일 자가격리(현장출입 제한 및 전문방역실시) • 확진자 이용구역 소독 실시 • 현장 작업중지 및 폐쇄(한시적) • 관련 접촉자 확인 후 코로나 환자 격리실에 격리 후 현장 폐쇄 실시 • 확진자 발생시 별도 격리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근로자에게 확진자 발생 알림 • 현장 CCTV 및 관리자 협조 동선파악 • 현장 접촉가능 인원분류 • 접촉가능인원 자가격리 • 확진자 접촉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코로나19 종합상황실 운영 • 전담체계 구축 완료(안전보건팀) • 원도급사의 전담체계 구축 및 결근 대비 계획 수립 • 각 현장별 보건관리자 코로나19 담당자 지정(없는 경우 안전관리자) • 전담요원(보건관리자), 보조요원(경비원-보건관리자 부재시) 배치 •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해당 건에 대해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재편성을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결근 시 업무 진행 차질 없도록 각 인원별 인수인계서 작성 • 근로자 결근 대비 대책은 신규 근로자 투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책 • 재택근무 가능부서 재택근무 실시 • 출근시간 자율 조정
휴가 및 휴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휴가 • 관련지침 없음 • 유급휴무 부여 • 원도급사 휴가 및 휴업 관리계획 수립 • 협력사 휴가 및 휴업관리 대책은 수립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결혼 사유 청원휴가 연기 사용 •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2주간)
유연근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실시 • 출근시간 조정: 본사 직원(08:00→08:30) • 대중교통 출근 직원(30분~2시간 내 자율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시 어려움(2) • 관련지침 없음 • 새벽시간을 이용하며 보통 자차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관련도가 낮음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2) • 관련지침 없음 • 관련 내용 전파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 중단 • 연차휴가 사용 권장(가족돌봄상황 발생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은 보통 출장검진으로 실시하며 검진 시 마스크 착용 후 실시(2) • 검진 시 체온 측정, 시간대별로 나눠서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하여 배치전 및 특수건강검진 유예 • 코로나19 관련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유예 • 20년 6월 15일 특수건강검진 실시 공문이 있기 전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전현장 유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서에 따른 계획서 작성 지침 작성하여 현장 내 전파 및 교육 매일 TBM시간 이용하여 코로나 주의사항 지속 전파 실시 SNS 전파 교육장 떨어져 앉기 통근버스 추가(2좌석당 1명 착석)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출입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의무착용 아침 출근 밀집 시 마스크 착용 재확인 2m 거리두기 안될 시 마스크 착용 교육 직원 간 단체회식 전면금지 중식시간 3교대 운영, 대면식사 금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서에 따른 계획서 작성 신규 및 정기 교육 시 관련 내용 교육 TBM(조회) 및 정기교육 업체별 자체 시행 매일 TBM 실시여부 확인 주 2회 방역 및 소독 개인업무용 책상 등 오전·오후 1회 이상 주기적 소독(2)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출입시 측정 상시 출입 전근로자 체온측정 후 식별스티커 부착 협력사 관리감독자 통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2차 확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회의실 등 손소독제 비치 출입 시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확인(2) 2m 거리두기 안될 시 마스크 착용교육 직원 간 단체회식 전면 금지 중식시간 3교대 운영, 대면식사 금지 입국 14일 이내 출입금지 세대 내 근로자의 경우 2인1조작업이 대부분이며 많은 작업자가 한곳에 모이지 않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시 전체 마스크 착용(3)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실시(2) 집합교육/워크샵/행사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 제한 허용 소규모 짧은 시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인 이상 회의 자제 회의 지양(2)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미팅 진행(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내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하여 출장 실시 지역간 이동(국내 출장) 자제 (2) 현장↔본사 사무실간 이동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지침 없음(2) 해당 없음

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어려움

조사에 참여한 건설업 사업장 보건관리자 5명이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영역에 대해 현장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정도는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는 각각 100%, “유연근무제 활용”은 80%이었다.

<표 4-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건설업 사업장의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지침 항목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지침 항목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매우 어려움	1		매우 어려움	2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매우 어려움	1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매우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4		약간 어려움	1
	약간 쉬움	0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1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매우 어려움	3	특수·배치전건강 진단 지도 지침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0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1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매우 어려움	0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칙)	매우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1
	약간 쉬움	2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0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매우 어려움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건설업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3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0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1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매우 어려움	4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회의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0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1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매우 쉬움	1
휴가 및 휴업 관리	매우 어려움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국내 출장	매우 어려움	1
	약간 어려움	0		약간 어려움	0
	약간 쉬움	2		약간 쉬움	3
	매우 쉬움	2		매우 쉬움	1
유연근무제 활용	매우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2			
	약간 쉬움	1			
	매우 쉬움	0			

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의 현장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요건
<p>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대 확보 어려움 • 페이퍼타올 안전관리비 안됨 • 방역을 보건관리자가 함(유료 방역의 경우 주 1회 방역시 단가가 높음) • 매일 소독의 전문성 부족 인원에 따른 청소 구역 제한 • 보건관리자가 주축으로 진행하나 (예: 아파트 38층10개동) 혼자 진행은 불가하고 재정적인 제한이 있음 • 공중별 간헐적인 출근으로 인한 방역 어려움 • 방역 시 밀결레 등으로 닦아서 실시하는 부분이 현장적용 시 어려움 • 방역 범위가 넓고, 자재 등으로 인하여 닦아서 소독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움 • 배치 및 교육을 해도 현장 근로자들의 보건 위생에 대한 의식 자체가 떨어져 방역물품을 사용하지 않음 • 협력사의 관리자 및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등의 지정으로 코로나19 예방업무가 보건관리자의 주업무로 인식됨 • 보건관리자의 역량과 감염관련지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적, 재정적, 관리적 개선 필요 • 손씻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익광고를 더 많이 시행 • 근로자의 개인위생관리 관련 규제 강화 필요 • 페이퍼타올을 코로나19경보해제시까지 한시적 안전관리비 사용 • 보건소에서 방역물품 지급 한도 높일 필요가 있음(살균소독제 2통만 줌)
<p>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현재는 아님) • 외부 작업자 더위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힘들어하고 땀으로 인해 착용 효율도 떨어짐(2) • 현장출입 방문 시간이 상이하며 더운날씨에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음, 외부온도도 영향 •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근로자가 다수임(여름철 답답함 호소) • 오후 출역 및 식사 안하는 경우 체온측정 어려움 •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 얻기 힘들 • 외부온도에 따른 비접촉식(열화상카메라 스캔형 체온계) 체온계의 측정오류 및 편차가 심함. 고막측정에 대한 거부감 호소 및 감염위험성 염려 • 7개월 이상 진행되다 보니 체온측정 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음 • 작업 중 2m거리두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출역인원이 많아 출입관리대장 작성의 어려움이 있음 • 근로자 발열체크에 의한 실질 노동시간 감소로 사업주 피해분 • 사무실 출입자를 계속 감시할 수 없어 일부 손소독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실시 • 외국인근로자 중 건설업 비자와 상이한 근로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 텐트, 천막등 일정온도 유지되는 장소 및 공간 확보 필요 • 측정하는 위치 및 정상범위 관련 교육 필요(예: 현장 실외 그늘막이에서 열화상카메라 비치하여 촬영, 2차 체온측정(고막체온계) 없음) • 체온측정 시 보건관리자의 주 업무로 인식하여 업무 과중 • 실외(게이트 앞)에서 체온 측정 시 체온계의 정확도가 떨어짐 • 근로자의 개인위생관리 관련 규제 강화 필요 • 일부 근로자 신규채용 교육시 거것 응답으로 밝혀져 감염이 확산될 경우 형사처벌 필요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미착용 형사처벌 필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의견
<p>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출역 및 식사 안하는 경우 판별 힘들 • 현장 내 근로자 동선 및 출력인원 확보가 어려움 • 출입 및 활동 범위가 넓음(다른 사업장이동 등) • 외부식당(다른 현장근로자와 접촉우려)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이 높음 • 일일 출력인원이 상이 • 근로자는 아침에 출근시 걸러지며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확인이 잘 안될 수 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함 • 건설업 특성 상 한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타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일일 출역인원이 일정치 않음 • 무증상자의 경우 적용 불가능 • 일용직 근로자가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검진을 받을 경우 일당에 문제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재택근무·병가·연차휴가·휴업 적용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및 단체식당(함바, 뷔페) 이용시 QR코드 시행(진행중) • 근로자의 개인위생관리 관련 규제 강화 필요 • 체온측정 시 보건관리자의 주 업무로 인식하여 업무 과중 • 실외(게이트 앞)에서 체온측정 시 체온계의 정확도가 떨어짐 • 의심환자 발생시 같은 공종의 모든 인원 코로나19 검진 실시 • 일당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 • 일용직 근로자 반차제도 도입
<p>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출역 및 식사 안하는 경우 판별 힘들 • 현장 내 근로자 동선 및 출력인원 확보가 어려움 • 출입 및 활동 범위가 넓음(다른 사업장이동 등) • 외부식당(다른 현장근로자와 접촉우려)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이 높음 • 일일 출력인원이 상이 • 보건소가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음 • 건설업 특성 상 한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타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확진자 발견시 사무실, 현장 폐쇄됨(공기지연, 임금지급 문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 없이 작업을 진행함(ex: 믹서트럭, 덤프트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 직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어보임 • 다중이용시설처럼 QR코드로 정보 수집한 후 다이렉트로 알람을 하면 로딩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 확진환자가 알리지 않고 근로시 형사처벌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발열, 의심증상 체크 실시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근무가 불가능하며 현장 직원의 동선이 곧 현장 전체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계획수립이 불가능함 • 지속적 근무자가 아니므로 결근 대비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움 • 근로자 결근 대비 대책으로 신규자 투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계획이나 신규자 투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기특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부족으로 대형건설현장 인원관리 미흡(초대형 현장도 1명만 선임함) • 전반적인 책임 및 서류 현장 내 관리 등 모든 것을 보건관리자에게 요구하나 재정적 지원 및 교육 관리 등 미비 •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처리 및 paper work 증가에 업무 과중 및 중복 • 건설현장의 경우 확진자 발생시 업무 재편성 무의미(현장 폐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특법 보건관리자 폐지 필요 (안전관리자처럼 공사금액별 보건관리자 추가 선임 되어야 함) • 대형건설현장 인원 지원 필요 (코로나19 해제 시까지) • 보건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필요성 및 전문요원으로서의 활동 범위를 제시 • 각 지자체에서 점검표 일원화
휴가 및 휴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를 지시하였으나 구체적 사항 미기재 • 공정에 따른 휴가 및 휴업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일정에 따른 대책 수립 어려움 • 건설업 특성상 재택근무 시 현장 관리 불가능(재택근무 무의미 - 현장의 경우만 해당) • 유급휴가로 2주간 격리 시 대체 인원 부족으로 업무공백 발생 • 특이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원 채용 필요 • 현장의 경우 안점감시단처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필수 인원 채용 필요 • 일용근로자 월 만근 시 월차 휴가 사용가능토록 제도 변경
유연근무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업무 특성 상 유연근무제 적용 힘들 • 출근시간이 틀려 업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공유하는데 문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를 강화하여 관련 지침 전파 필요 • 대중교통 출근직원에 대한 유연근무시간 확대 필요 • 재택근무 가능직원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화상업무 필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조건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돌봄휴가의 한계가 있음(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의 적용이 곤란함 해당 대상 근로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를 강화하여 관련 지침 전파 필요 가족돌봄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게 권장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현장-디딤돌사업을 통한 건강검진 시행 중으로 디딤돌사업비용을 사용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일부 지부에서는 검진을 권고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예를 지시하여 양 기관이 상이하게 권고 폐활량검사 유예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의 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음 건설업의 경우 유예로 득을 봄(하루, 1주일, 1달 단기로 일하는 근로 많음) 일부 건강상담 필요 근로자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 전 건강검진은 유예가 필요하다 생각함 검사기간이 모호함. 배치전과 특검 시 물질의 검진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보완 필요 특수건강진단 유예상황에 대한 지침 내용 보완 필요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필요(노동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코로나 발생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 업주와 근로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 2인1조가 중량물 취급으로 같은 위치에서 작업, 무더위 외부작업, 밀폐된 공간에서의 동시 작업 등 다양한 위치에서 진행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어려움(혹서기의 경우 더욱 어려움) 사업장 특성상 회의 시 거리두기가 힘들(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개인간 접촉을 금지토록 유도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 필요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 의견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내 근로자 휴게실 이용 시 인원대비 휴게 공간부족 • 오후2~3시경 폭염시 밀집 및 마스크 미착용 우려 • 구내식당 외 작업공간상 기계실, 전기실 등 간헐적 밀폐공간 다수 발생(환기시설은 국소 배기장치 정도) • 흡연구역에 밀집되어 흡연 및 침을 뱉는 모습들이 많음 • 특이사항 없음 •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에 대한 휴식공간의 충분한 제공과 더불어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열화상, 비접촉식체온계가 외부온도에 따라 (비오는날 더운날) 차이가 발생하여 편차가 있고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고막체온계 사용 중인데(소독 및 필터교체 O) 지침에 어긋난다는 언급이 있음 •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대비 흡연자가 상당수 있기에 흡연구역 관련 사항도 지침에 포함 필요 • 현 정부 지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필요한 회의(노사협의체, 사업주간회의) 등 모여서 진행 • 현장내 일어나는 일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는것에 제한이 많음 •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세부사항에 포함하여 기재 필요 • 노사협의체, 공정회의 등에 대한 지침 내용 보완 필요 • 현 정부 지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국내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건축팀에서 공장검수 가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위생관리 및 자차로 이동함 •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 지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4. 교육지원 요구

1)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교육 현황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교육과 관련한 설문 결과,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감염병 관련 교육에 대하여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2명(92.3%)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염병 예방교육에 대하여 12명(92.3%)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명(7.7%)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4>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교육 현황

구분		n(%)
직원교육 여부	예	13(100.0)
	아니오	0(0.0)
감염병 관련 교육의 필요성	매우필요하다	12(92.3)
	필요한 편이다	1(7.7)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감염병 예방 교육의 효과성	매우 효과적이다	8(61.5)
	효과적이다	4(30.8)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1(7.7)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0.0)

2) 사업장 내 감염병 관련 자체교육

사업장 내 감염병 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결과 13개 사업장 모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자체교육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장교육과 사내 게시판 활용 교육이 각각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집체교육이 38.5%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T.B.M, SNS를 통해 관련내용 전파, e-mail로 내용 전파 등이 있었다. 자체교

육 시 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자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체교육 시 사용하는 교육자료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제공 자료(인쇄물,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46.2%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사 제작 자료, 최신기사 활용, 질병관리본부 지침 등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사업장 내 감염병 관련 자체교육 현황

	구분	n(%)
감염병 예방교육 종류	자체교육	13(100.0)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0(0.0)
	외부전문기관 교육 수강	0(0.0)
교육 방법 (복수응답)	집체교육	5(38.5)
	현장교육	6(46.2)
	사내게시판	6(46.2)
	이러닝	3(23.1)
	유인물	4(30.1)
	기타	3(23.1)
교육 강사 (복수응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안전보건관리자	11(84.6)
	관리감독자	3(23.1)
	사외강사	1(7.7)
	시청각교육	1(7.7)
	기타	0(0.0)
교육 자료 (복수응답)	안전보건공단 제공 자료(인쇄물, 홈페이지)	9(69.2)
	자체 제작자료	6(46.2)
	민간교육기관 제공자료	2(15.4)
	기타	3(23.1)
교육 시설 및 장비 (복수응답)	교육장소(강의실 등)	12(92.3)
	빔프로젝터	11(84.6)
	실습용 장비	1(7.7)
	기타	3(23.1)
교육방법의 효과성	자체교육	6(46.2)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	3(23.1)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육	3(23.1)

<표 4-6>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그 이유

교육방법	이유
<p>자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는 TV나 휴대폰을 통한 미디어에서도 충분히 다루니 만큼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예방 효과가 높다고 생각 - 라포가 형성된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들의 일관된 교육은 근로자의 인식 변화를 높일 것임. - 민간교육 및 안전보건공단 교육은 1회성으로 단기적 효과는 좋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체교육이 효과적임. -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이 어려우므로 매일 아침 TBM 을 통한 지속적 교육이 효과적일 것임. - 현장 내 일정 조율이 편하며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후 현장 확인이 즉시 가능하여 효과가 높음 -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강의가 필요함.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사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상시 교육할 수 있는 자체교육이 더 합리적임 - 코로나와 같은 전대미문의 감염병의 경우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타 민간교육 의뢰 등 시간소요보다 직접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임(사내 전자 팝업 및 소식지, 개인문자 등) - 전문가 교육을 통한 전파교육이 효과적임
<p>민간교육 기관 위탁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활용도가 높음. 회사 내 사례 공유하여 이해력 향상, 공단은 지도점검 의식됨으로 실시간 교육자료 제공 필요. 안전보건담당자가 교육전담은 업무부담 가중으로 민간교육기관 전담교육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쉽게 신청이 필요함. - 전문 인력에 의한 감염병 전문교육이 도움이 될 것임 - 다양성 보장
<p>안전보건 공단 교육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교육 강사의 교육이 필요함 - 전문 외부기관에서 교육 안 배포 및 교육 진행 시 신뢰감 높고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도 상승할 것 -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근로자들이 사내 강사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느끼며 다른 교육기관보다 안전보건 공단에서의 교육이 더 실용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느낌

3) 감염병 예방 관련 보건교육과정 개설 요구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련 보건교육과정 개설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전체 13명의 응답자 중 12명(92.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7.7%)은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 과정 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건교육과정 개설 시 적절한 교육 시간에 대하여는 76.9%가 8시간 미만이 적절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본 교육과정 개설 시 교육 수강에 대하여는 12명(92.3%)가 수강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7.7%)은 수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과정 개설 요구

구분		n(%)
보건교육과정 개설 필요 여부	필요함	12(92.3)
	필요하지 않음	1(7.7)
적정 교육시간	8시간 미만(1일)	10(76.9)
	8시간~16시간(1박2일)	2(15.4)
	16시간~24시간(2박3일)	1(7.7)
	24시간 이상(3박4일 이상)	0(0.0)
	기타	0(0.0)
보건교육과정 개설 시 수강 의사	있음	12(92.3)
	없음	1(7.7)

<표 4-8>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

감염병 예방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	
감염병 관련 정보	<p>분류</p> <p>1. <u>감염병의 이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경로 종류 및 감염전파 원인/감염원에 대한 교육(3) - 왜 예방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1) - 감염병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4) - 감염병의 병리 등에 대한 의학적 이해(보건관리자 대상) (1) <p>2. <u>감염병 대응 교육 - 개인수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관리, 손씻기 교육/예방법(2) <p>3. 그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교육 <p>(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p>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경로 종류 및 감염전파 원인 - 감염병의 이해부분, 왜 예방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 - 감염병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감염원에 대한 교육 - 보건관리자 대상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병리 등에 대한 의학적 이해 <p>-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따른 신종감염병의 출현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p> <p>감염병 관련 교육도 필요하지만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관리, 손씻기 교육, 감염병 증상 및 대처 방안 - 예방법
감염병 대응 방법	<p>분류</p> <p>1. <u>감염병 대응 교육- 사업장 수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에 따른 사업장별 특수성 분류 전문 인력 외 다수에게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교육법 - 사업장 적용방안 / 현장 적용 시 전문성 확보 필요(2) - 조치사항 및 체계적인 대응지침/사업장 적용 가능 지침(3) - 사업장 적용된 좋은 사례 및 통계 <p>2. <u>교육방법 제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료, 교육홍보지 제공 (담당자가 교육 자료를 모두 제작하기는 업무가중) - 감염병에 대한 VR 교육이 매우 효과적 (VR 기기로 중대재해를 체험하여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시행중임)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에 따른 사업장별 특수성 분류 전문 인력 외 다수에게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교육법 - 사업장 적용방안 - 조치사항 및 대응지침 -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현장 적용 시 전문성 확보 - 감염병에 대한 정보, 대응 및 사업장 적용 가능 지침, 사업장 적용된 좋은 사례 및 통계 - 교육자료, 교육홍보지, 담당자가 교육자료를 모두 제작하기는 업무가중임 - VR 기기로 저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를 체험하여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감염병에 대한 VR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5. 기타

<표 4-9-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요구사항 1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에 대한 추가의견	
주 내용	세부 내용
백신개발이 우선	현재 특수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9월 14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 때문에 전 건설 현장이 건강검진을 시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만약 건강검진 시 코로나 19가 확산될 경우 이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관리자로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안정화가 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건강검진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별 지침 기준 필요/ 인식 개선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보건관리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부족함. 보편적 감염관리 지침이 사업장 외 본사(사무직)에게는 없는 경우도 많아 맞지 않는 지침들이 생기기도 하고 노동부 및 공단 각 지자체에서는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에 따른 기준들 또한 상의하고 있음. 보건관리자의 역량과 코로나19를 평가하는 인력에 대한 인식도 개선 각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시, 건설업 여건상 실외 작업자들이 많아 폭염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및 추가사항 필요함.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문제 /인식 부족 /실질적 방역 시스템 구축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이 불가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역 근로자와 함께 교육 실시하나 시간과 노력이 배가 되어 힘든 부분 중 하나임. 게이트 앞에서 체온 측정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내국인에 비해 오래 걸림. 특례외국인건설업취업인정증이나 건설업기초안전보건이수증 발급 시 가급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되면 좋겠음. 2. 감염 및 전염에 대한 근로자 및 관리자의 인식 부족,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하더라도 본인의 협조 없이는 대응이 불가, 기초안전이수 교육 시에도 감염병에 대한 교육 내용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3. 기본 지침서에 따른 사업장 별 계획서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보건관리자가 없는 곳이나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현장의 경우 체온 측정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들음. 실질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표 4-9-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요구사항 2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에 대한 추가의견	
주 내용	세부 내용
방역 물품 지원	방역 관련 물품지원(현장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데 비용 소모가 크다. 특히 이번에 물품 부족에 대해 방역 관련 물품 비용이 갑자기 몇 배 씩 뛰어 방역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다.
강력한 지침	강력한 지침을 통하여 느슨해져 있는 감염병 예방 인식을 다시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 같다
대응 지침의 신속한 전달 필요	감염병 확산을 위한 대응지침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장에 전달되었으면 한다
추가 인력 배치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 또는 감염병 관련 전문 인력 추가 배치 요함
자료 공개	직업건강협회(산업간호협회)의 발빠른 자료 공유 및 배포가 많은 도움이 되었음. 정부 여러 기관의 자료 OPEN도 도움이 되었음. 정확한 발생자(발생율)에 대한 적시 공개 필요함. 아울러 확진자 동선공개도 대략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태원 게이클럽에 대한 동선 미공개는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든다.
전담부서 마련 / 별도의 대응지침 안내 채널	전담부서 마련으로 사업장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면 좋겠음.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자주 바뀔에 개인이 파악하고 대응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기에 이를 안내해주는 채널마련도 되었으면 함.
보건관리자 선임 강화/ 인식 개선	사업장은 감염병 전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음. 보건관리자가 상주한다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을 더욱 강화 필요함. 공단 또는 노동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지도/점검 보다는 지원 및 지지체계라는 의식과 도움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업장 또는 전담 담당자에게 인식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
특수검진 생략 고려	감염병 발생 시 배치 전 배치 후 특수검진은 유예보다 생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해당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대응 개선방안

1.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법령규정(안)

1)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감염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92조에서 제604조에 걸쳐 병원체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조치의무의 적용범위는 일반 사업장이 아닌 의료법상 병원 등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일반 사업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있으나 법적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보건관리 제고에 한계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중 사업주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적용범위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병원체 감염 예방 규정의 적용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의’란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있는 단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병원체 감염 예방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 적용 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업장 내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시에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른 근로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보호구 착용과 확진환자 등과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안)은 <표 5-1>과 같다.

<표 5-1>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장의2 감염병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604조의2(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신설>	<p>604조의3(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또는 보호구 구입에 필요한 지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p>(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감염병의 원인, 전파 및 감염 경로, 증상과 잠복기, 예방 방법, 환자접촉과 감염 후 조치 등에 대한 근로자 주지 4. 임신부, 65세 이상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중증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등), 신부전, 암 등 만성질환자인 근로자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신설>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604조의4(감염환자 및 감염의심자 발생 시 조치)① 근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등 사업주에게 알린다.

<신설>	<p>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감염병 환자 발생 혹은 감염 의심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p>
<신설>	<p>③사업주는 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근로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감염병 발생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에 협조 2.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3.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였거나 이동한 장소 주변의 작업 일시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4. 감염병의 원인이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병원체로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5.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감염된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신설>	<p>④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조치 2. 감염병의사환자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2) 노동관계 법률에서 임신근로자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신 중인 여성 사용금지 업무>

①동근톱·띠톱을 사용하는 목재가공업, ②활선작업 ③건물 해체작업, ④추락·붕괴·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 ⑤진동작업, ⑥고압·잠수작업, ⑦고열·한냉작업, ⑧피폭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업무, ⑨납·수은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⑩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은 업무(의사·간호사 등 제외), ⑪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는 업무, ⑫10Kg이상 중량물 취급 업무 등 12가지 업무 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사용금지 업무>

①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단, 모유 수유를 아니하는 여성으로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제외)
②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업무 등

사용자는 임신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신부를 아래 사업·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행위, 혈액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임신부에 대해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 있는 환자 접촉을 제한하고, 감염 근로자는 태아 기형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

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제시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지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에는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3)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안)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안) 중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또는 보호구 구입에 필요한 지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국한하여 비용-편익 분석(안)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용-편익 분석(안) 결과 비용편익비는 2.1이었으며, 간접편익으로 사업장의 감염병 통제로 사업장 가동을 지속하여 생산성 손실을 절감한 편익을 추가하면 편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비용편익 분석 항목의 자료원 및 측정값

분석항목	자료원	측정값
우리나라 인구수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51,839,408명
마스크지급대상인원(명)	고용노동부 2020.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도자료	2020년 6월기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18,702,383명
접종대상인원(명)	고용노동부 2020.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도자료	2020년 6월기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18,702,383명
2020년 COVID-19 발생자수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추정 결과	유지전략 ¹⁶⁾ 적용시 2021년 1월 1일 기준 12,225명
2020년 COVID-19 사망자수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추정 결과	유지전략 적용시 2021년 1월 1일 기준 2,262명
백신의 효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 허가 기준	질병 예방효과 50% ¹⁷⁾
한국인 통계적 생명가치 ¹⁸⁾	보건지출에 의거한 연령대별 VSL분석 ¹⁹⁾	25-29세:22.7억원, 35-39세 12.2억원, 45-49세 4억원, 55-59세 3.3억원, 65-69세 2.4억원 미국기준: 미국 성인1명 VSL 1150만달러(140억 3000만원) 대기환경규제정책 비용편익분석에 적용
1인당 총진료비 중증, 중등도, 경증 환자 비율 중증, 중등도, 경증 환자 평균입원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치료비 추정액 보도자료(2020년 5월 7일자 보도자료)	중증 환자(1%), 중등도 환자(49%), 경증 환자(50%) 구성비를 고려하고, 전체 환자 수가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총 진료비는 822~895억원(중간값 868억)(1인당 868만원) -중증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최소 5500만원에서 7000만원, 1일 평균 상급종합병원 66만 7000원, 평균입원기간 77.4일 -중등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1200만원, 1일 평균 상급종합병원 66만 7527원/종합병원 60만 8715원, 평균입원기간 18.4일 -경증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종합병원 478만원/병원급 478만원, 1일 평균 종합병원급26만원/병원급 18만원, 평균입원기간 18.4일
노동생산성 손실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0년 1월 22일자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월평균소득 297만원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령 43.9세
연간 근로일수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자료 ²⁰⁾	연간근로일수는 2019년 월평균근로일수 ×12개월=240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단가)	글로벌 코로나19 백신단가 ²¹⁾	40-60달러로 추정되어 6만원
일회용 마스크(N80/N94) 구매비	2020년 대한민국 정부 공적마스크 보급 단가	1매당 1500원

16) 지금처럼 작자가 마스크는 착용하고 다른 완화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17) 코로나19가 침투하는 호흡기 중 상기도를 이루는 기도 점막, 비강(코) 등은 우리 몸 밖에 있다. 세포나 항체를 포함한 세포는 신체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백

**<표 5-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지급 및 백신접종의
비용-편익 분석(안)**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비용	마스크구매 비용 (=마스크 단가×산재적용근로자수(2020년 6월)×연간근로일수)	1,500원×18,702,383명×240일×0.5 =3,366,429
	백신접종 비용 (=백신 단가×산재적용근로자수(2020년 6월)×접종율(90%)×1회)	60,000원×18,702,383명×0.9×1회 =1,009,929
	비용 합계 (마스크구매 비용+백신접종 비용)	3,366,429+1,009,929 =4,376,358
편익	사망 감소 (=예방가능 사망근로자수(2020년 COVID-19 사망자수 유지 전략 적용시 추정치×산재적용근로자비율(산재적용근로자/전체인구수)×예방효과(0.6))한국인 통계적 생명가치(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령 43.9세: 45-49세 4억원)	2,262명×(18,702,383명/51,839,408명)×0.8×140억 3천만원 =9,159,614
	질병이환 감소 (예방가능한 환자근로자수(2020년 COVID-19 질병자수 유지 전략 적용시 추정치×산재적용근로자비율(산재적용근로자/전체인구수)×예방효과(0.8)×1인당 평균진료비)	12,225명×0.36(18,702,383명/51,839,408명)×0.8×868만원 =30,626
	생산성 손실 감소 (총 입원일수(중증도별 예방가능한 환자근로자수(2020년 COVID-19 질병자수 유지전략 적용시 추정치×중증도별 평균 입원일수)의 합)×1일급여(월평균소득/월평균 근로일수))	((12,225명×0.36)×0.01×77.4일)+((12,225명×0.36)×0.99×18.4일)×(297만원/20일) =12,436
	편익 합계 (사망 감소+질병이환 감소+생산성 손실 감소)	9,159,614+30,626+12,436=9,202,677
CBR(=편익/비용)		2.1

신으로 항체가 만들어져도 호흡기 질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18)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19) 김효진(2019). 한국인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추정과 일과 삶의 균형(WLB)DP 대한 실증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월평균 근로일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5)

21) 조선비즈 2020년 7월 29일자 보도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1349.html)

2.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축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과 노동환경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원격/재택근무로 근무환경의 변화,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 업무 가중, 보건의료종사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전환,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시각에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는 등의 변화와 원격/재택근무는 코로나19이후의 세상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개발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지침 개발 현황과 국내 코로나19발생 사업장 특성, 코로나19 감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 5-3>과 같이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안한다. 공통, 업종, 직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상호연계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해당 위험을 공학적, 관리적,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용 지침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접근성이 높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명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 보유자, 임신부 등),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취약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제공해 외국인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4>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침(안)

공통	업종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환기 등) • 위험성평가 • 고위험 근로자 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 청소 및 소독 • 개인위생 • 코로나19 검사 • 재택근무 • 국내출장 • 국외출장 • 차량이용 • 일반사무 • 보호구 착용 • 직장과로 • 정신건강(스트레스, 불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업 • 운수업 • 보건의료업 • 제조업 • 건설업 • 육류 및 가금류 가공업 • 유류 및 가스 가공업 • 소매업 • 해산물가공업 • 고체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 반려동물 판매점, 보급소, 사육장 • 카지노 및 게임장 • 일반창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종사자 • 치과종사자 • 응급구조와 공공안전 • 실험실 종사자 • 가정방문 수리서비스업 종사자 • 배달 및 운송 종사자 •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 개인서비스: 은행, 장례식장, 체육관, 네일샵, 피부관리 등 • 음식서비스: 농업인, 식료품 소매업, 육가금류 가공업자, 해산물 가공 근로자,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2)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연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 연구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 연합은 “호라이즌 2020”을 통해 10억 유로의 재원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 관련 연구를 비롯해 제약회사, 바이오 의약품 회사 지원방안 연구, ICT 기술 개발, 코로나19 관련 혁신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연구주제 검토와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로파운드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변화된 일상과 사회의 모습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의 삶은 물론 노동과 일자리, 생활 만족,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ILO에서 발간하는 ILO Monitor, ILO 브리프를 비롯해 유럽재단 유로파운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연구 등 다양한 매체로 확산하고 있다. EU-OSHA는 연구결과물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OSH wiki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연구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고, 그 밖의 대부분 연구기관들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분야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언택 산재예방서비스 활성화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건강영향의 형평성
- 고위험군(고령자 및 기저질환 보유자, 임신부 등),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건강감시 등 건강보호 방안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근무조건, 사회심리학적 및 행동학적 요인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보건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등)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웰빙, 질병, 회복 등에 미치는 영향
- COVID-19에서 회복된 이후 근로자의 신체적, 환경적,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적 요인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화와 건강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 근로조건과 건강보호 방안
- 경기위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보호와 건강격차 해소 방안

3) 근로자 코로나19관련 정신건강관리

(1)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문제 발생 현황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심리상태 조사에서 48%의 국민이 가벼운 수준의 불안을 경험했고 19%는 중증도 이상의 불안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조사 역시 42.2%가 가벼운 우울감을 느꼈고, 17.5%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의 확진자 정신건강평가에서는 정상은 7%에 불과하였고, 84%가 경도 혹은 중증도의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소견을 나타내었고, 9%는 심각한 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인 불편감의 호소내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기는 하였지만,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가) 확진자의 심리적 부담내용

- 무력감 고립감
 - 계속 양성이 나온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 나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 불신, 분노
 -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
 - 바이러스 취급한다.
- 불안
 - 재감염, 재발
- 적응문제
 - 직장복귀, 경제적 문제로 인한 힘듦
 - 실직으로 인한 가족문제 발생과 자살충동
 -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데 대한 후회
 - 코로나로 민감해진 상태에서의 관계갈등
- 죄책감
 - 직장이 폐쇄되었다는 데 대한 죄책감
 - 자신의 부주의로 감염되었다는 죄책감
 - 확진으로 인한 죄책감
 -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아이를 돌볼 수 없음에 대한 불안, 죄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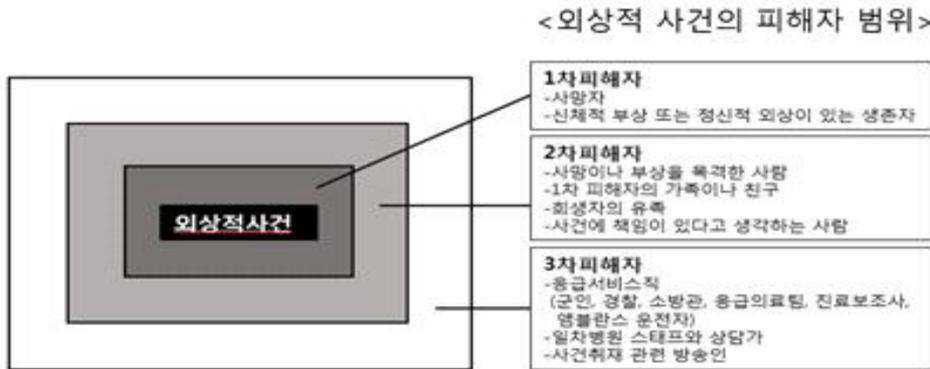
나) 국민의 코로나 19에 대한 심리적 부담내용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실시한 국민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요인으로는 가족의 감염이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요인이었고, 자신으로 감염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전염, 자신의 감염으로 인한 직장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자신과 가족의 감염으로 격리, 자신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로 낙인, 자신의 감염, 감염으로 지역사회 낙인의 순이었다.

이러한 것은 재난상황이므로 당연한 국민들의 반응일 수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는 일반 방역과 함께 심리방역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외상 발생의 피해자 범위

일반적으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심리적 외상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심리적 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특정 집단에서는 감염의 위험과 낙인으로 인해 더 큰 심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험군에 일반적 외상적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를 적용해보았을 때, 코로나 19 팬데믹의 심리적 외상 피해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심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 코로나 팬데믹 심리적 외상사건의 피해자 범위 >

	1차피해자	2차피해자	3차피해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확진자 가족/유가족 우울·불안 등 기존질환자, 심리적 외상경험자, PTSD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진/응급요원/현장지원인력 (코로나 19 확진자 이송요원, 코로나 관련 생활시설 관리자, 코로나관련 시설 환경미화원, 식사제공요원 등)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자 방송/언론관계자/교육관계자 감염병 취약계층: 노인/임산부/영유아가족/신체장애인/ 기존 질병자. 공동생활시설거주자/이주민 및 외국인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집단 발생 사업장 사업주/직원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집단·업종에 속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직자/기간제 근로자/단축근무 근로자 의료인 및 병원시설관리자/환경미화원/택배기사/마스크제조공장/소독제품제조공장/시설관리자

(2) 국내 코로나 19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가)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심리회복지원

- 적십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상담, 유선상담, 마음돌봄키트지원

나) 보건복지부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 카카오톡(챗봇), 앱을 활용한 코로나 19 관련 정신건강 정보제공, 심리 상

담안내, 마음건강 자가진단 검사 제공

- 웹진 정기발행 및 정신건강서비스 포털구축
- 24시간 핫라인 운영하여 전화 응급 심리 상담지원
-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심리지원
- 코로나19 전문가용 심리 상담 지침 개발 및 보급
- 코로나 19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건강지침 개발·보급
-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지침 카드뉴스·웹포스터 제작 및 누리집 게재 등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 소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부

- 24시간 모바일 기반 문자상담맘망(다들어줄개) 운영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발생학교 학생 및 교직원 충격완화 심리지원 및 위기대처법(PFA) 교육
- 학교 응급심리지원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라) 여성가족부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고립감,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 다문화가족을 위해 위기·긴급 상담 지원
-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등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 도모

마) 경찰청

-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코로나 블루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바) 산림청

- 다부처 협업을 통한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보급 및 대응인력 지원하여 스카트 가든설치
-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숲 치유지원

사)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진료병원 의료진, 시설관리자, 행정, 안전관리팀 등 심리상담지원
- 코로나19 확진노동자 심리상담지원
- 코로나19 발생사업장 및 동종사업장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 요양기관종사자, 콜센터직원 등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노출 직종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교육
 - 공공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 기타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상담
 - 제조업종사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

(3) 사업장 코로나19 정신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

바이러스나 화학물질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정신건강 대응은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전파경로와 임상적 특징, 전파차단을 위한 행동지침, 확진자 발생시 대응지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신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침은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관리지침, 확진자 발생시 정신건강 대응 지침, 근로자의 자가케어를 위한 지침,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심리지원 자원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의심 근로자/ 코로나19 확진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가급적 신속하게, 어디서나, 심리적 외상을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확진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전화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대상은 심리적 외상을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대상은 임산부 혹은 영유아를 동반하는 여성, 소아,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기존 정신질환을 가진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한 자, 이민자, 난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게 되며 격리조치기간동안 근로자는 자택격리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시, 격리조치 동안, 사업장 복귀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시에 사업장의 근로자와 코로나19 감염근로자에 대한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임을 이해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19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확실함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통제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고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정상이지만, 과도한 두려움, 공포감,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상담은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와 8개소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소통의 장 만들어 소통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관리자가 개별 근로자들과 소

통하고 격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소그룹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지자원을 찾도록 홍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회적 지지이며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프거나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기
-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지자원을 확인하기
- 평소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기
- 일상에 대한 소중함에 감사하기
- 예능프로그램 등 위안을 주는 것에 감사하기
- 자기관리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 나만 행복하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정신적 위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업장근로자들이 연계감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이 위험이 높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기관리 방안을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하기
- 정해진 수면시간을 지키기
-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해보기
- 드라이브하기
- 집에서 휴식하거나 TV나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기
-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에서 산책하거나 걷기
- 가정에서 욕조에 물 받아서 목욕하거나 족욕하기
- 등산하기

- 식물가꾸기
-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대화하기
- 스스로 격려하기
- 편지를 쓰거나 일기쓰기

면역력 향상시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하고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최소한 7시간은 숙면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마음의 특성은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다. 마음관리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심리상태 평가 및 추적검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우울평가도구(PHQ-9), 불안평가도구(GAD-7),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K-DEP),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 (K-ANX) 등 다양한 검사지를 활용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근로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지침(안)

COVID-19 사업장 대응 지침(안)은 일반, 제조업,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정신건강관리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일반지침은 사례정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 코로나19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출근 직원 관리, 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강화,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개인보호구 및 마스크, 인력관리로 구성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일반 지침에 포함된 내용외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지침을 작성하였다. 제조업은 코로나19 제조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공학적 통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작업공간, 이동),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사업장 환기 시스템 개선, 작업장 청소 및 세척), 납입, 납품 및 물품 관리로 구성하였다. 건설업은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공학적 통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현장공간, 현장 및 작업장 이동, 집합·모임·행사),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현장 폐쇄 후 재가동시, 현장 청소 및 세척, 현장 차량 관리), 현장 인력 관리로 구성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지침은 사업주용과 종사자용으로, 정신건강관리는 공통, 사업주 및 관리자용, 근로자용, 재택근무자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표 5-5> COVID-19 사업장 대응 지침별 내용

지침명	지침내용
일반	사례정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 코로나19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출근 직원 관리(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고위험군 보호, 직장에서의 평등), 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출퇴근 시간, 사무공간, 회의, 구내식당 운영관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운영관리, 휴게실 등 기타 공용시설 관리, 고객 및 거래처 방문 관리), 개인 위생 강화,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개인보호구 및 마스크(개인보호구, 마스크), 인력관리(인력관리, 업무관련 통장, 의사소통 및 직원교육)
제조업	코로나19 제조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공학적 통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작업공간, 이동),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사업장 환기 시스템 개선, 작업장 청소 및 세척), 납입, 납품 및 물품 관리
건설업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공학적 통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현장공간, 현장 및 작업장 이동, 집합·모임·행사),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현장 폐쇄 후 재가동시, 현장 청소 및 세척, 현장 차량 관리), 현장 인력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용, 종사자용
정신건강 관리	공통, 사업주 및 관리자용, 근로자용, 재택근무자용 지침

1) 일반 지침(안)

<p>사례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p>←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①로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심자(감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5의2호, 2020.3.4. 시행):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 대응팀 역학조사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확진환자 접촉자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미국 CDC 기준 밀접접촉자: 총 15분 이상 COVID-19 확진자와 6피트 이내에 있었던 경우, COVID-19를 앓는 사람을 집에서 돌본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진 경우(포옹 또는 입맞춤), 식음료 기구를 함께 사용한 경우, 기침, 재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들의 호흡기 비말이 묻은 경우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quarantine.html>: 2020년 10월 6일 검색)

- 접촉자 범위 예시 (WHO 5.10 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③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④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장기 생활 시설, 감옥, 보호소, 호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넓은 정의를 적용하여 모든 거주자 특히 고위험 거주자와 직원 대상 관리
의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종사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욕실(화장실)을 사용한 모든 환자, 방문객 -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 출처 :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10 May 2020)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
- 격리구분: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조직을 구축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위험성 평가, 건강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수행
 -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 대응조직 운영, 위험성 평가, 근로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시설 방역 등
 -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유행 정도, 해당 지자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조치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정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 및 방역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2020.04)」을 참고하여 수립
 - 사용주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
 - 근로자는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하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
 -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 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
 -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
-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과건·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
- 감염 위험요소나 과정 제거,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노출 범위 축소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청소, 살균, 소독 시행 등의 방역 지침 마련
 -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
 - 작업자의 동선,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 고위험군*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
 -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고령,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면역억제자,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암(특히 혈액암, 폐암, 전이암 등), 비만, 장기 이식 수혜자. 흡연, 임신부 등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근로자 규모 사전 파악
 -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하여 집 밖에서는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계획 세우기
 - 위험이 높은 근로자가 현재 역할 또는 대체 역할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위험이 높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안전한 역할을 제공하기
- 전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방역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협력업체 노동자, 과건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협력적인 직장 관리 방침을 명확하게,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 COVID-19 전파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이 기존의 건강 및 안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근로자들을 교육
 - COVID-19 방역을 돕기 위해 도입된 변화에 관해 모든 계약업체 인력 또는 현장 방문자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이러한 규정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소통 체계 구축
 - 직원들이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

(2)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

-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활용)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 협력업체 포함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상황에 맞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알코올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 배송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

(3) 코로나19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COVID-19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장소와 방식을 파악
- 철저한 사업장 위험 평가를 통해 직장 내 COVID-19 관련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
- 사업장 전체, 업무부서, 작업단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전 직원 위험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관리: 근로자 집단과 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도구 활용: <표 2-25, 부록 2> 참고
- 공학적 수단, 관리행정적 수단, 개인보호장비(PPE) 등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 체계상의 여러 방역 수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확인된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철저한 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현재 직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특정 직무에는 어떤 유형의 방역수단 또는 PPE가 필요한지 판단
- 공학적/행정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보호 효과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구체적 직무에 어떤 PPE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PPE를 선택하여 무료로 지급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근로자들에게 교육

- 사업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조치의 사례

※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공학적 수단이며 이어서 행정적 수단, 그리고 PPE가 마지막임. PPE는 효과가 가장 떨어지면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방역 방법임.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여러 방역 방법을 서로 보완해서 시행해야 함

공학적 방법	행정적 방법	개인보호장비(PPE)
<p>시설과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적 방역의 현실성 판단을 위한 직무 위험요인 평가 • 환기 및 수도 시설의 올바른 작동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업무 공간 변경.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막으로서 파티션 설치 - 전자결제 판독기를 계산하는 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 음성 안내, 표지판, 시각적 기호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p>관리 및 커뮤니케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사항 모니터하기 • 아픈 직원들에게는 증상을 보고하고 집에 머물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독려 •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의 우려 관리 - 근로자들과의 소통 •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근로자들에게 환기시킴 • 규정과 규범에 관한 사항을 파트너사, 공급사 및 기타 계약업체에 전달 •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적절한 경우) 독려 •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예: 재택근무 및 가상회의) • 집단 행사 취소 • 공유 공간 폐쇄 및 이용 제한 • 아픈 고객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 • 유연한 병가 및 대체 근무 스케줄을 장려하는 규정 고려 • 선반에 상품을 채우는 업무는 한가한 시간대에 배치 	<p>PP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위험요소를 평가 • 위험요인 및 사용 중인 다른 방역 수단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특정 직무에 어떤 PPE가 필요한지 결정 •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PPE를 선택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없애기/재배치 - 원격 쇼핑 대안 제공(예: 배송, 픽업) 	<p>청소 및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이 잦은 표면(카운터, 선반, 디스플레이)의 청소 및 소독 • COVID-19 유발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는 일회용 소독 물티슈, 클리너, 스프레이를 직원들에게 제공 <p>훈련</p> <p>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훈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 전파를 줄이기 위한 정책 • 일반 위생 • 증상, 아플 경우 할 일 • 청소와 소독 • 사회적 거리두기 • PPE 사용법 • 안전한 근무 관행 • 스트레스 관리 	<p>여 무료 로 제공</p>
--	---	----------------------

(4) 출근 직원 관리

가)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유연한 병가 정책 및 지원 규정과 규범을 시행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기
-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재택근무 적극 활용하기
-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건강 모니터링 및 나머지 직원들과의 협력 관계 유지
- 재택근무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비 제공(업무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
- 현장 외 근무 중인 근로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들의 복지 및 심신

건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인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휴가,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나) 고위험군 보호

- 고위험군 행동수칙 안내: <부록 8> 참고
- 지원 정책 및 규범을 통해 중증 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원들을 보호
 -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 방안을 지원 및 장려
 - 취약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고객 및 타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예: 계산대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선반에 물건을 채우는 작업)
- 직장으로 복귀하는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논의

다) 직장에서의 평등

-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또는 민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함
- 고용주는 장애 근로자와 신규 또는 임신부에 대해 특별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호 대상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5) 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 출퇴근 시간

- 주차 공간, 탈의실 및 출퇴근 시간 기록계 근처에 작업자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에 시차를 두기
- 가능한 한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추가 주차 또는 자전거 렉과 같은 시설 제공
- 가능한 카풀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카풀을 하거나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방역 수칙 안내하기
 - 통근버스 출입명부 작성하기
 - 가능한 한 차량 당 인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더 많은 차량을 사용
 -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권장
 - 근로자들에게 차에 타기 전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장려
 - 직원들에게 공유 밴이나 자동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 카풀 또는 통근버스 이용 후 매번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표면(예: 도어 손잡이, 핸드레일, 안전벨트 버클)을 청소 및 소독
 - 차량 안에서 기침 및 재채기 예절을 지키기
- 통제가능한 더 많은 출입구를 확보하여 혼잡을 줄이기
- 출입구를 편도로 이동할 수 있게 이동표식 제공하기
- 키패드 또는 보안장치 사용 시, 터치기반 보안장치 사용 금지하고, (가능한

경우) 비 접촉식 출/퇴근입력장치 제공하기

- 출입구에 손 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하기

나) 사무 공간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공간 활용 및 사무 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컴퓨터,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개인용 청소, 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 자주 만지는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의 표면 소독, 청결을 유지하기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기

다) 회의

- 직접적인 대면 회의보다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
- 대면 회의를 할 경우 회의에 필수 인력만 참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유지(2m)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 실시
- 회의 중 펜, 문서, 음료 등 공유 금지
- 회의실에 손 소독제 제공
- 가능한 한 야외 또는 통풍이 잘되는 방에서 회의 개최

라) 구내식당 운영관리

- 근로자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
 - *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좌석배치 조정, 근무조별 이용시간 조정
- 식당 이용 이전에 식당 전체 특별소독, 근로자의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출입문 손잡이, 배식차, 식탁 등)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식사 전 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시, 배식 대기, 배식 및 퇴식 시 마스크 착용
 - 식당입구에 비접촉식 손씻기 시설 설치. 부득이한 경우에 비접촉식 손소독 시설 구비
 -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하도록 담당자가 현장 지도
 - 퇴식 및 정수기 또는 식수대 사용 시 거리두기(1m) 지도
 - 거리두기 표시 스티커 부착 권고
 -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 마련 필요
- 급식 종사자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발열 확인· 건강상태 확인 및 코로나 19 예방 특별 위생 교육 실시
 - 급식 종사자용 위생용품 확보하기
- 배송직원 건강상태, 배송차량 소독 확인, 출입 시 손 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사전 안내

마)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운영관리

- 엘리베이터 로비가 혼잡하거나 저층을 이동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권장
- 가능하다면 계단 통로의 특정 부분을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지정하여 사

회적 거리두기를 촉진

- 엘리베이터 로비 및 에스컬레이터 입구 근처의 바닥에 표시를 부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필요한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 서야 할 위치를 알리는 표시를 부착
- 엘리베이터 로비에 사람들이 한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2m 간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통로에 이동식 기둥을 배치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
- 모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이용 시 대화하지 말 것을 요청
- 엘리베이터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사이에 몇 계단씩 비워두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 이용자가 표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표지판을 게시해 알리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물건(예: 펜 뚜껑)이나 손가락 관절을 사용
- 다수의 인원이 접촉하는 엘리베이터 버튼 및 손잡이 일 2회 소독 및 소독 시트지 부착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거나 버튼을 만진 후에는 얼굴을 만지지 말고 손을 씻도록 알리기
- 자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공기 환기 장치 또는 국소 공기 처리 장치를 보충하여 추가

바) 휴게실 등 기타 공용시설 관리

- 다중이용시설(실내 휴게실, 탈의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흡연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구역 지정 및 이용 시간대 설정으로 접촉 최소화 및 거리유지
- 시차를 두고 휴식 시간을 나눠 배정하거나 임시 휴게실 및 화장실을 가설하여 휴식 시간에 근로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근로자들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항상 서로 2m 거리를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 페인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영역 표시하기
- 휴식을 위해 안전한 야외 공간 사용
- 휴식공간에 파티션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 확보하기
- 많은 인원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 씻기 시설 제공
- 표지판과 포스터를 사용하여 손 씻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 위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알림 및 표지판 제공
- 화장실 외에 여러 위치에 손 소독제 제공
- 샤워 및 탈의실이 필요한 경우, 샤워실, 사물함 및 탈의실에 대한 명확한 사용 및 청소 지침을 설정하여 개인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 확보
- 하루에 2번(하루의 중간, 마지막)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시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 적정 수용 인원이 넘을 경우, 대체 공간(교육실 및 회의실 등)을 확보하거나 옥외 천막을 점심식사 구역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음식료를 나눠먹지 않기

사) 고객 및 거래처 방문관리

-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 및 위생에 대한 현장 지침을 도착 당일 또는 도착 전에 방문자에게 설명
- 방문자는 간단한 문진표와 출입시간을 기록하고 체온측정
- 방문자가 현장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사용 권장
- 원격 연결을 통해 방문 유도
- 방문 시 방문인원을 최소화

- 꼭 필요한 일정과 다른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사람간의 상호작용 줄임
- 방문자에게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 안내
- 현장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 COVID-19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을 정하고 방문자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 방문자가 사업장에 들어갈 때 체온 측정 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시설 이용 또는 손 소독제 사용 권장
- 방문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관과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알림
- 작업장 입구에 표지판 제공하여 일반인과 근로자에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

(6) 개인 위생 강화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작업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하기
- 여러 장소에 60% 이상의 알콜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기. 가능한 경우, 터치가 필요 없는 손 소독제 스테이션을 마련
- 손 씻기: <부록 9>참고
 -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교대근무 전후, 휴식시간 전후, 음식을 먹거나 준비하기 전, 얼굴을 만지기 전, 화장실을 사용한 후, 공공 장소를 떠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마스크를 만진 후, 기저귀 교환 후, 아픈 사람을 돌본 후, 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만진 후 등
 - 근로자들이 손 씻기에 쓸 수 있도록 비누와 깨끗한 수돗물, 일회용 종이타

올을 제공

- 물과 비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표면 전체에 바르고 건조한 느낌이 들 때까지 양손을 비비기
- 컵, 숟가락 등 개인용품 사용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 침 뱉기 금지
- 직장에서 개인 위생을 장려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제공
-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빈도를 늘릴 수 있도록 근무 일정에 짧은 휴식 시간을 더 추가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지와 비접촉식 쓰레기통을 비치
- 담배 및 무연 담배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손과 입의 접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교육
- 손 위생 및 기침/재채기 에티켓 교육하기
-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휴지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휴지가 없는 경우 팔 안쪽에 기침을 하도록 함
- 포스트 등을 활용하여 올바르게 손 씻기, 자주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기침 혹은 재채기 때 사용한 화장지를 바르게 버리기, 화장지가 없을 때 팔로 가리기 안내

(7)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 이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염, 미각 또는 후각 기능 상실 등)을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기록 및 보관
-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이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 신고하기

- 의심 증상을 선별하는 담당 직원과 근로자 사이에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차단막이나 칸막이 등의 공학적 통제를 시행하고, 2m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할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장갑, 가운, 안면 가리개 및 KF94 보건용 마스크(또는 그 이상의 보호구)(최소 품목)) 착용하게 하여 보호
-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기침, 호흡곤란, 발열, 오한, 근육통, 인후염, 미각 또는 후각 기능 상실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필요 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 만일, 사업장에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이 경우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조치
 - *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유증상 근로자, 해외로부터 입국근로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부록 10)과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부록 11)을 따르도록 안내
 -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 안내
- COVID-19로 인해 아픈 사람이 가정에 있는 직원의 경우, 상사에게 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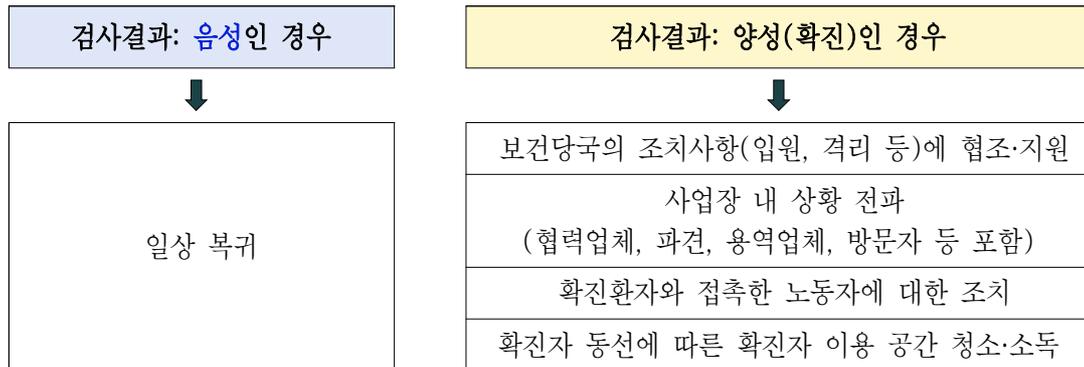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사항(부록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따르도록 안내

<의심환자 발생 시 경우 업무 흐름도>

활동	담당	세부내용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당 근로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 시 마스크 착용 후 방역관리자에게 연락
↓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	방역관리자	이동 시 근로자와 관리자 마스크 착용 후 2m 거리두기 시행
↓		
의심환자 보고 및 상담	방역관리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의심증상자 건강상태 확인	별도 격리장소 (일시적 관찰실) 방역관리자	의심증상자 건강상태 확인 후 특이 사항 발생 시 연락
↓		
사업장 관리	방역관리자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의심증상자 귀가	방역관리자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		
근로자 대상 교육	방역관리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유증상자 방역수칙 안내 및 교육 -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교육
↓		
별도 격리장소 (일시적 관찰실) 환기/소독	별도 격리장소 (일시적 관찰실) 방역관리자	사업장 소독지침에 의하여 환기 및 소독 시행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출근 전 확진 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 등 조치에 따름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림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방문한 고객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사업주는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 <부록 13~15 > 참고

- 다른 직원이 호흡기 비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4시간 경과한 후 청소 및 소독. 대기 기간 동안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구역의 환기 개선
-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코로나19 고위험군 근로자(고위험군, 임신부 등) 우선적으로 보호 조치하기
- 확진 근로자를 관리하는 직원을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해야 함
 - 직원이 아픈 동료로부터 2m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적절한 PPE에는 장갑, 가운, 안면 가리개 및 KF94 보건용 마스크(또는 그 이상의 보호구)(최소 품목)가 포함
- COVID-19 확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응급 경고 징후를 안내하고 즉시 치료 받도록 조치
 - 호흡 곤란, 지속적인 가슴의 통증 또는 압박, 정신적 혼동이 나타남, 깨어나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 푸른 입술 또는 얼굴 등

• 확진자 발생 시 업무 흐름도

활동	담당	세부내용
확진자 발생 인지	사업주	근로자 감염병 관리조직 활성화
↓		
사업장 상황 안내	방역관리자	근로자에게 안내 : 환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방역조치, 증상 모니터링 협조 등
↓		
확진자 격리	사업주/ 방역관리자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
↓		
방역활동 실시	행정팀	확진자 동선에 따른 확진자 이용 공간 청소·소독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참고
↓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방역관리자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		
복무 처리	인사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격리 해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병가 처리
↓		
고위험군 파악 관리	방역관리자	신속 진료 의뢰, 보호격리 안내 등 관리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는 아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격리 해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조건>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 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

(9) 개인보호구 및 마스크

가) 개인 보호구

- 코로나19와 별개로 기존에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는 계속해서 착용
-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올바른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 절차에 대한 직접 시연 혹은 동영상 제공, 개인보호장비 사용 후 관리 등)

나) 마스크

- 마스크 착용 전후 30초동안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 혹은 손소독제 활용
- 얼굴 혹은 마스크의 세균이 옮지 않도록 만지지 않을 것
- 바른 마스크 착용법 안내하기: <부록 16> 참고

(10) 인력관리

가) 인력관리

- 근무 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교대근무 시간 조정하기
- 가능한 한 작업자를 그룹으로 나눠 그룹으로 교대하여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나) 업무관련 출장

-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을 활용)
 - 외교부가 안내한 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해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입국장 검역 시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특별검역조사에 적극 협조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
- 출장 시 가능한 한 걷거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반드시 사용
- 출장 동료는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능하면 환기를 늘리고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함
- 근무 교대 또는 차량 인도 시에 공유하는 차량 청소
-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 출장 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숙박장소 기록 및 숙박시설이 거리두기 지침을 충족하는지 확인
-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
-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 출장 후 문진표를 작성하여 방역관리자에게 제출하기
- 출장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 1339, ☎ 지역번호 +120)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국내출장 부분을 참고

다) 의사소통 및 직원교육

- 일하는 방식의 이해와 일관성 향상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정기적인 의사소통 제공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력하여 작업방식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 구하기
- 노동조합 및 직원 대표 그룹을 통해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작업 환경 변화의 예상치 못한 영향 모니터링하기
- 정신건강의 중요성 강화하기
- 근로자에 적합한 문해력 수준으로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제공하기
- 사진이나 단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지침 교육
- 취약근로자(고위험군,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이미지와 명확한 언어로 지침 설명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증상 파악을 위한 근로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기(코로나19의 증상 및 징후, 작업장 노출위험, 개인위생, 일상적 감염

관리 예방조치 등)

- 방문자와 작업자가 먼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내용의 표지판을 게시(또는 이동이 가능한 전자 표지판 사용)
- 서면 자료를 읽을 수 없거나 다른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작업자를 위해 대체 교육을 제공

2) 제조업 지침(안)

(1) 코로나19 제조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 근로자들 사이의 거리: 제조업 근로자들은 생산 라인이나 조립 라인에서 서로 근거리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출퇴근 카드를 찍을 때, 휴식 시간 중, 또는 라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근로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 접촉 시간: 제조업 근로자들은 동료들과 장시간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무일당 8-12시간). 잠재 감염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SARS-CoV-2 전염 위험이 높아진다.
- 접촉 형태: 제조업 근로자들은 공기 중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예컨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전염성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공구나 작업대, 휴게실 테이블 등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와의 접촉을 통한 노출 가능성도 있다. 휴게실이나 로커룸, 시설 출입구 등 공용 공간 역시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이러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기타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유 밴 또는 셔틀 차량, 카풀 및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 공유와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인 지역의 동료 근로자와의 잦은 접촉

(2) 공학적 통제

- 생산라인이나 조립라인의 작업대 배열을 수정하여, 근로자들이 모든 방향 (옆 사람 및 마주보는 사람)에서 2m(최소 1m)의 거리 두기
 - <부록 17> 참고
- 표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작업대에서는 자기위치를 지켜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휴식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근로자들에게 환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작업 활동의 경우, 작업 지속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작업대 사이에 간격을 두거나 플렉시글라스 또는 이와 유사한 소재의 물리적 차단막,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을 서로 분리
- 공기조화시스템(난방, 환기 및 에어컨디셔너)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작업장에서 환기가 잘 이루어져 작업자의 잠재적 노출을 최소화
- 작업장 내에서 스탠드형 선풍기나 벽걸이형 선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선풍기 바람이 근로자 한 명을 거쳐 다른 근로자에게로 직접 불지 않도록 하기
- 개인 선풍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뜨거나 에어로졸화되어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 작업장 내 선풍기 제거 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고온 위험 방지 조치하기
- 손 위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역 또는 적어도 최소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손 소독제 배치. 가능하면 터치가 필요 없는 손 소독제 스테이션을 제공
-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 기록 구역을 추가로 마련하고 간격을 멀리 떼어놓기. 근무자가 터치 프리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 마련

(3)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 작업 공간

- 작업 교대 등과 같이 모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체가 모두 모이게 하지

말고 소그룹으로 나뉘서 진행하기.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회의는 없애기

- 가능한 경우, 시설 전역에서 각 근로자 사이에 2m 거리를 두는 한 줄 서기 운동을 장려
- 생산/조립라인 작업장에서 거리두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을 설치하여 원격 모니터링 활용
- 생산/조립 라인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의 작업 시작 시간에 시차를 두는 방법으로 전체적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SARS-CoV-2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마련
- 근로자 코호트(동일 집단) 관리. 근로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항상 같은 동료들과 함께 같은 교대조에 배정함으로써 공장의 평상시 교대근무 일정 변경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코호트 관리는 일주일 동안 밀접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소속 코호트 인원으로 국한시켜 해당 코호트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노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작업장 내 SARS-CoV-2 전파를 줄임
- 작업 중에는 건물 및 작업장에서 부수적인 이동을 금지하고, 작업 시 마스크 착용
-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고려하여 작업
- 일일 단일 작업으로 작업 순환 및 장비 순환 감소 배치
- 직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작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2m) 확보
- 2m 확보가 안 될 경우 나란히 작업하거나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
- 작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시각적 표시(예: 바닥표시, 표지판) 사용하기
- 화이트보드나 표지과 같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대면 커뮤니케이션 없이 작업 현장 주변의 안전한 작업 관행 설명하도록 하기
- 함께 사용하는 도구, 자료 또는 작업 지침 등 사람들이 서로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 구역을 정하여 직접 접촉을 없애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다음을 고려하기
 - 근로자 수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같은 팀에서 교대 근무하는 교대팀(코호트라고도 함) 유지하기
 -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하기

나) 이동

-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이동하는 방식 고려하기
 -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기
 - 근로자들 간 작업과 장비 회전률을 제한하기
 - 승강기 및 작업 차량 이용자의 수 제한하기
 - 승강기, 복도, 개찰구 및 보도를 포함하여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사람 수 줄이기
 - 근로자들의 사회적 거리를 돕기 위해 바닥 페인트 또는 테이프로 영역을 표시
 -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임시 보행로 도입을 고려하기
- 엘리베이터, 좁은복도, 계단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 시행

(4)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

가) 사업장 환기 시스템 개선²²⁾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으로 상시적으

22) 미국 CDC 웹사이트(20.05.20),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체와 고용주를 위한 임시 지침 인용.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적절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공조설비로 전체 환기실시
- 환기 설비가 올바르게 기능하여 각 공간의 현재 이용 인원수에 맞는 적절한 실내 공기 청정도 확보하기
- 환기 속도 높이기
- 환기 설비를 가능하면 항상 작동시켜서 건물 내부의 환기 개선하기
- 환경 조건 및 건물 요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자연 환기를 통해 외기에 의한 실내 공기 희석률을 늘리도록 조치
-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의하면서, 외기 환기량 늘리기 (※ 건물 내 이용 인원 밀도가 낮으면 이를 통해 일인당 유효 희석 환기량이 증가함)
- 기온 또는 수용 인원에 따라 급기량을 줄이는 수요 기반 환기량 조절²³⁾ (DCV, Demand Controlled Ventilation)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
- 최소 외기 통풍 조절판을 더 열어서(최대 100%까지) 재순환 되는 공기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적용이 어려움)
- 중앙 공기 여과 장치를 MERV²⁴⁾-13 또는 필터 랙에 맞는 최고 품질의 기기로 개선하고, 필터 유효량을 최소화
- 필터를 점검하여 사용 수명이 남아 있는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나) 작업장 청소 및 세척

- 최소한 작업자가 작업대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도구 세트로 이동할 때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도구를 청소하고 소독
- 작업장 및 공동 공간에서 위생 처리 빈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

23)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내 부유오염원의 농도에 따라 환기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Raatschen, W. (1992). Demand Controlled Ventilating Systems: Sensor Market Survey.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Statens rad for byggnadsforskning].

24) 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최소효율보고값

하고 물품을 제공. 가능하면 교대 당 최소 한 번 이상 작업 공간과 휴게실의 자주 만지는 표면(예: 전자레인지 또는 냉장고 손잡이, 자동판매기 터치패드, 문손잡이, 싱크대 손잡이, 계단이나 복도의 난간, 물리적 차단막 등)을 소독

- 작업장 내 작업 영역과 장비 자주 청소하기
- 현장 장비 및 제어판을 포함하여 공용으로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자주 청소하기
- 지게차, 굴삭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관리 및 세척
- 모든 수공구, 제어 장치, 기계 및 장비는 사용 후 소독
- 근무가 끝날 때 작업 공간을 정리 후 폐기물과 소지품 제거
- 근로자와 방문객이 일회용 안면 덮개와 개인 보호구를 폐기할 수 있도록 여분의 쓰레기통 제공
- 샤워실 혹은 탈의실이 필요한 경우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며 사용
- 소독제로 인한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청소 및 소독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PPE 및 기타 관리가 필요

(5) 납입, 납품 및 물품 관리

- 다른 장소로 배송하는 동안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절차 마련
- 물품발송 및 수취장소를 지정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닥에 표시
- 2인 배송이 필요한 경우 일관된 페어링 유지
- 전자지불방법 및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여 대면을 최소화함
- 수거 장소, 절차 등을 정함
- 전자 사전예약과 같은 비접촉 배송 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함
- 더 많은 수량 주문으로 주문 횟수를 줄여 배송 빈도를 줄이는 방법 고려
- 필요 시 납입물품을 실외보관 후 실내 반입

- 물품 운반 시 가능한 한 사람이 작업하도록 하며, 부득이할 경우 조를 짜서 작업하되 안전 확보
-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차량에 머물도록 권장

3) 건설업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안)

(1)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 단계

구분	내용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 - 근로자 출역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
원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후 출역점검표에 기재 등)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등)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
현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파악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하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

근로자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인력 소개소	- 건설현장 인력 모집·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

- 사후조치 단계(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시행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노동자에게 통보
근로자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2) 공학적 통제

- 표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작업대에서는 자기위치를 지켜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휴식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근로자들에게 환기
- 손 위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역 또는 적어도 최소 60% 알코올(또는 그 이상)이 함유된 손 소독제 배치. 가능하면 터치기가 필요 없는 손 소독제 스테이션을 제공
- 휴게실을 비롯해서 근로자의 이용이 잦은 곳에 의자와 테이블을 빼거나 재배치하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넣어 근로자 사이의 거리를 늘리기. 적정 수용 인원을 넘을 경우 이용자를 분산할 수 있는 대체 공간(교육실 및 회의실 등)을 확보하거나 옥외 천막을 휴식 및 점심 식사 구역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3)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 현장 공간

- 가능한 경우, 시설 전역에서 각 근로자 사이에 2m 거리를 두는 한 줄 서기 운동을 장려
- 근로자 코호트(동일 집단) 관리. 근로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항상 같은 동료들과 함께 같은 교대조에 배정함으로써 공장의 평상시 교대근무 일정 변경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코호트 관리는 일주일 동안 밀접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소속 코호트 인원으로 국한시켜 해당 코호트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노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작업장 내 SARS-CoV-2 전파를 줄일 수 있음.
- 작업 중에는 건물 및 작업장에서 부수적인 이동을 금지하고, 작업 시 마스크 착용
-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고려하여 작업
- 일일 단일 작업으로 작업 순환 및 장비 순환 감소 배치

- 직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작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2m) 확보
- 2m 확보가 안 될 경우 나란히 작업하거나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
- 작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시각적 표시(예: 바닥표시, 표지판) 사용하기
- 화이트보드나 표지와 같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대면 커뮤니케이션 없이 작업 현장 주변의 안전한 작업 수행 설명하기
- 함께 사용하는 도구, 자료 또는 작업 지침 등 사람들이 서로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 구역을 정하여 직접 접촉을 없애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다음을 고려하기
 - 근로자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같은 팀에서 교대 근무하는 교대팀(코호트라고도 함) 유지하기
 -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하기

나) 현장 및 작업장 이동

-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이동하는 방식 고려하기
 -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기
 -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제한
 - 근로자들 간 작업과 장비 회전률을 제한하기
 - 작업 차량 이용자의 수 제한하기
 - 비계, 호이스트, 화장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동 관리
 - 근로자들의 사회적 거리 유지를 돕기 위해 바닥 페인트 또는 테이프로 영역을 표시
 -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임시 보행로 도입을 고려하기
- 좁은복도, 계단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 시

행

다) 집합·모임·행사

- 조회(TBM), 교육 등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방역조치 후 실시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4)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

가) 현장 폐쇄 후 재가동시

- 폐쇄된 모든 장소 또는 일부 장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행
- 절차에 따른 청소 후 손 소독제 제공

나) 현장 청소 및 세척

- 공사 현장 입구, 휴식 공간, 탈의실 및 화장실 등 여러 위치에 손 소독제 비치
- 청소 및 세척 시에는 전체 환기
- 현장 및 공동 공간에서 위생 처리 빈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물품을 제공. 가능하면 교대 당 최소 한 번 이상 작업 공간과 휴게실의 자주 만지는 표면(예: 전자레인지 또는 냉장고 손잡이, 자동판매기 터치 패드, 문손잡이, 싱크대 손잡이, 계단이나 복도의 난간, 물리적 차단막 등)을 소독
- 현장 장비 및 제어판을 포함하여 공용으로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자주 청소하기
- 장비, 도구 등은 매번 사용 후 청소 실시
- 모든 수공구, 제어 장치, 기계 및 장비 소독

- 근무가 끝날 때 작업 공간을 정리 후 폐기물과 소지품 제거
- 근로자와 방문객이 일회용 안면 덮개와 개인 보호구를 폐기할 수 있도록 여분의 쓰레기통 제공
- 샤워 및 탈의실이 필요한 경우 샤워실, 사물함 및 탈의실에 대한 명확한 사용 및 청소 지침을 정하여 개인 물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 확보
- 정기적으로 샤워실 및 탈의시설 포함 모든 시설의 청소 실시
- 소독제로 인한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청소 및 소독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 보호하기 위해 추가 PPE 및 기타 관리가 필요

다) 현장 차량 관리

- 팔레트 트럭 및 지게차와 같은 장비, 도구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번 사용 후 장비 부품 청소 실시
- 근로자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의 경우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상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위해 손 씻기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제공
- 재사용 가능한 배달 상자는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통근 버스는 이용 시간 및 횟수를 증가시켜 한번 이동 시 최소한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통근버스 운영 시 주기적인 환기, 청소 및 소독, 임시 칸막이 설치

(5) 현장 인력 관리

- 가능한 한 근로자를 팀으로 나눠서 그룹으로 교대하여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함
- 함께 사용하는 도구, 자료 또는 작업 지침 등 사람들이 서로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 구역을 정하여 직접 접촉을 줄임

- 현장 숙소 사용 시, 고정된 근로자 그룹을 만들어 동일 사람들 간에 접촉을 허용하고, 입구 및 출구와 같은 병목 지점에서 근로자 모임을 최소화하고 근무동안 사회적 거리 유지

4) 소규모사업장 지침(안)

(1) 소규모 사업장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침

- 사업장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십시오.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필요 시 전국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와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COVID-19 관련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십시오. 교육 주제로는 유증상일 경우 집에서 대기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방법 및 올바른 손 위생 수칙 등을 다룹니다. 자료는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직원의 우려사항에 대해 대화합니다. 고령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등 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일정 및 원격근무(가능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휴가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 및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 비상시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결근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합니다. 인력이 줄어도 필수 업무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계획합니다.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를 교차시켜 교육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준비합니다. 원격 근무나 시간차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 권장합니다.
-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권장하고, 업무 복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증상자가 방문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지침」을 따르십시오.
- 직원들이 가능한 한 서로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물리적인 가림막을 사용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거나, 업무 공간, 업무 또는 근무 시간 및 교대 시간을 변경하여 직원들 간의 거리를 늘립니다. 근무지 내부/외부에 시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휴게실 내 의자 간격을 벌리며, 외부에 휴식용 천막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쉬는 시간 및 교대 시간 간에 시간차를 둡니다. 업무 공간, 휴게실, 탈의실, 복도 및 출입구 등 직원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에 주의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직원들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카풀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합니다.
-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최소한 직원들이 업무공간을 변경할 때만큼은 도구와 기타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합니다. 근무 교대시마다 작업 공간과 휴게실에서 작업대, 조리대, 난간, 문 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근로자가 작업표면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제 및 일회용 타올을 제공하십시오. 모든 청소 및 소독제품 사용 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릅니다. 가능한 경우, 전화, 책상, 도구와 장비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

세요. 운행한 셔틀 버스 또는 승합차는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및 손 씻기 실천을 장려합니다. 흐르는 물, 비누, 종이 타월 및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직원들은 최소 30초 동안 손을 씻도록 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최소 60%인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 전반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코와 입이 정확히 가려지게) 착용하도록 합니다. 축축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합니다. 교대 근무가 끝나면 사용한 안면 보호대는 소독하도록 합니다. 안면 보호대는 반드시 턱을 넘어가고 얼굴 옆면을 덮도록 착용합니다.
-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합니다.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합니다.
- 가능한 영상 회의를 실시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국내외 출장과 여행을 최소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국외출장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 근로자가 안전 및 건강문제를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종사자 지침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집에 머무르십시오.

주의해야 할 증상

- 기침
- 숨참 또는 호흡곤란
- 발열
- 오한
- 근육통
- 인후염
- 미각 또는 후각 기능 상실

몸이 아픈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가능한 한 가정 내 특정 공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여 머무르십시오.
- 업무 복귀 시기는 직장의 방역관리자와 상의하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직장 및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과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대화를 할 때나 탈의실, 복도나 통로에서 또는 작업장을 출입할 때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음식료를 직장 동료와 나눠 드리지 마십시오.
- 특히 작업 공간을 변경하거나 새 공구세트로 이동하는 경우,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카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직장 및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 마스크는 얼굴 옆면에 딱 붙되 불편하지 않게 착용하십시오.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하십시오.
- 마스크를 벗을 때는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며, 벗은 후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마스크가 축축해지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하십시오.
- 본인의 일반 업무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를 계속 착용하십시오.

다음 경우에는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손을 씻지 않은 경우
- 장갑을 끼고 있는 경우
- 마스크 또는 보안경을 조정하거나 벗을 때

다음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부득이한 경우에 알코올 함량이 최소 60%인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교대 근무 전후 및 휴식시간
-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 화장실 사용 후
- 식사 전
- 음식 준비 전 후
- 마스크 착용 후, 만진 후, 벗은 후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가리고 하십시오.

-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거나 티슈가 없는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으로 막으십시오.

시오.

-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재채기나 기침을 한 후 즉시 손을 씻고 부이한 경우에는 알코올 함량이 최소 60%인 알코올 성분 손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5) 정신건강관리 지침(안)

(1) 공통 지침

-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보나 루머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낙인과 차별 등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걱정되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아둡니다.
- 불안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뉴스를 듣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해놓은 시간에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만 정보를 찾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가 함께하고 나누는 것은 모두의 마음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돌보는 일은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을 돌보는 것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제공 등 다른 이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도움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영상)전화, SNS 등 온라인 대화는 자신과 친지들의 사회적 연계감을 높이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를 경험한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킬 기회를 찾으십시오. 질병에서 회복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간호하였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질병에 걸린 사람을 코로나 19 환자, 피해자, 코로나 19 가족으로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코로나 19를 가진 사람들, 코로나 19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 19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칭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 가족,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인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19에 의한 질병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로나 19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에 인종이나 국적으로 낙인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출신국에 상관없이 질병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풁니다.
-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존경하십시오. 생명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그들이 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

(2) 사업주 및 관리자용 지침

- 정부의 관리지침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가 어떻게 전파되고 감염되며, 어떻게 감염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근로자들과 공유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정보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 위기상황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일반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등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공유합니다.
-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자원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합니다. 전국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와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음을 겪고 있는 근로자, 기존의 정신적인 질

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COVID-19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 자원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가능한 정신건강자원 목록을 업데이트 한 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팬데믹 기간동안에 변화된 직장 정책을 공유합니다. 직장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주와의 소통이 안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에 병가, 가족 휴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에 대한 직장 정책을 마련합니다.
-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직원이 회사에 복귀시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합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감염력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고, 회복되어 복귀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위안을 주도록 합니다. 낙인이 찍히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여 정신 건강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통해 모든 직원들과 직접 정신 건강에 대해 소통합니다.
- 재택 근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목표를 제공합니다. 재택근무는 정신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재택근무시에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리적인 분리가 사회적 고립을 수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통하는 방식으로는 원격 회의 도구, 메시징 앱 또는 전화 통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인 지지를 위한 실제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오늘의 메시지, 사진 공유, 동료간에 문자보내기, 가상도구를 이용한 명상, 피트니스 수업 등 동료 지지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관리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지하도록 준비합니다. 관리자들은 근로자를 지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원입니다. 관리자들이 지지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술이나 약물사용이 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 필요하다면 설문지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우울평가도구(PHQ-9), 불안평가도구(GAD-7),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K-DEP),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K-ANX)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를 위한 지침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바이러스 노출 위험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가족을 돌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이 증가하고, 새로운 통신 도구 학습 및 기술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의 여러 증상은 짜증, 분노 또는 부정, 불확실감, 초조감 또는 불안감, 의욕 부재, 피로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소진된 느낌, 슬픔 또는 우울감, 수면 장애, 집중 장애 등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회복력을 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2m)를 유지하면서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등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 현재 팬데믹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용주, 직원 및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직장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되도록이면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일상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감을 강화합니다.
 -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합니다
 - 근무 중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거나, 힘이 되어주는 직장 동

료와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밖에서 신체 활동을 하거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봅니다.
- 마음 챙김 기법을 활용합니다.
- 근무 시간이 아닐 때 평소에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 코로나 19에 대한 팩트를 파악하고, 함께 지켜야하는 예방행동 수칙을 숙지합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이례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합니다. 뉴스를 시청하는 것을 잠시 쉬어봅니다. 팬데믹에 관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코로나 19감염이 발생하였거나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할 때, 사실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지침을 준수하되, 감염된 동료들 낙인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선택을 신중히 합니다.
- 동료들과 자신의 걱정과 기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받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고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통제감, 소속감 및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편지 또는 카드 우편 발송, 동영상 채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으로 술이나 기타 약물(처방약 포함)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움을 청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시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면역력을 증진합니다. 충분한 수면, 수분섭취, 비타민 섭취 등을 포함합니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4) 재택근무자를 위한 지침

일상 생활이 중단되어 추가 불안, 스트레스 및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재정적으로,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 규칙적인 일정 유지 : 일과와 일정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지정된 공간 설정합니다. 귀하와 각 가족 구성원이 일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을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연결 유지 : 가족과 연결 유지 : 친구나 신뢰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전화, 메시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두려움과 걱정을 나누세요.
-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30초 동안 비누로 손 씻기, 충분한 수면, 잘 먹고 수분 섭취, 비타민 섭취 등을 실천합니다.
- 운동 및 활동 유지 : 운동은 신체 건강에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 집 주변을 돌아다니십시오. 보행, 스트레칭, 플랭크 또는 점핑 잭 등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엔도르핀을 증가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원과 대중들을 위해 무료 라이브 스트림, 앱 기반 운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 신선한 공기 마시기: 상황이 허락한다면 밖으로 나가 활발한 산책과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군중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피하십시오.
- 최신 정보 유지 : 지식은 힘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
-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 줄이기 : 뉴스,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합니다. 이들은 불안, 스트레스, 패닉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유지하되 미디어 소비를 제한하십시오.
- 작업 일정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라. 집에서 합리적인 시간동안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일하는 동안 더 일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는 일정을 지키세요.
- 관심을 분산하고 방향을 전환하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힘듦에서 당신을 분리시켜줍니다. 명상과 요가가 도움이 되고, 종종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독서, 미술 프로젝트,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하기, 호흡 운동, 또는 차분한 팻 캐스트나 음악을 들읍니다.
- 창의력을 발휘하기 : 동료나 친구와 당신이 잘 하고 있는 팁을 공유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격려합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에 한계는 없습니다.
 - 1분 플랭크, 10개의 점핑 잭과 같은 것을 함께 운동하기 등을 공유하기
 - 무엇을 하든지 단순한 것을 하기
 - 애완 동물 사진을 공유하기
 -

참고문헌

- 김태형. 병원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치료역량의 강화. 대한의사협회지 2015;58(7):606-610
이원철. 신종감염병 유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대한의사협회지 2015;58(8):689-691
- 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용]
- 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8판)
- 고용노동부. (2020). 「콜센터」 코로나19 대응 지침 -2판-
- 교육부. (2020).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교육부.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 -외부기관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 -외부기관용(개인대표자)- 그림판개략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 -외부기관용(법인, 기관 등)- 그림판개략도
- 국토교통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4판]
- 대한산업보건협회.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지침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중증환자용]
-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V판
- 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의료기관 근로자의 공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 (KOSHA GUIDE H-93-2015)
- 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KOSHA GUIDE H-186-2016)
- 산업통상자원부. (2020).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2020).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7-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록 제7-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시설 소독 안내 [제2-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시설 소독 안내 [제3-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제2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제2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범정부대책지원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제2판]

질병관리본부. (2020). 2020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전경자, 최은숙 (2016). 간호사의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실태와 감염관리 인식. 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1);1-8.

천병철 (2015). 신종 감염병의 이해와 대비·대응 방안. HIRA_정책동향, 9(5); 38-49

한복순, 김수근, 정혜선, 김원술, 최은희, 엄미정, 백은미, 손경훈 (2016). 병원체 감염 위험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방안 연구

현정희 (2017). 신종감염병 유행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Weekly Issue 21호, 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s://news.zum.com/articles/60610718>

https://online.kofst.or.kr/kofstNewsDetail.do?pageIndex=3&key=252522&cate2=COM045_EZmyQIE&listType=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90394&date=20200405&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16952&code=61122027&cp=nv>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84>

Armen K. Goenjian, Alan M. Steinberg, David Walling, Sheryl Bishop: 25-year follow-up of treated and not-treated adolescents after the Spitak earthquake: course and predictors of PTSD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020, Jan. 14.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19003891>

https://oshwiki.eu/wiki/COVID-19:_guidance_for_the_workplace

https://oshwiki.eu/wiki/Epidemics_and_the_Workpla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to-employers-and-businesses-about-covid-19/guidance-for-employers-and-businesses-on-coronavirus-covid-19>

<https://www.gov.uk/guidance/social-distancing-in-the-workplace-during-coronavirus-covid-19-sector-guidance>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training/online-training>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diseases/Pages/coronavirus-faqs-ko.aspx>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20/03/the-business-implications-of-coronavirus.html>

Hawkins, D. (2020). Differential occupational risk for COVID 19 and other infection exposure according to race and ethnicity.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McGarity TO, Duff MC, Shapiro S. Protecting workers in a pandemic: what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be doing [cited 2020 June 2]. Center for the Progressive Reform. Available from:

<http://progressivereform.org/our-work/workers-rights/protecting-workers-in-a-pandemic/>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April 17, 2020

»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First findings-April 2020, Dublin

»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2013), Prioriti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 Europe: 2013-2020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 Eurofound, <http://www.eurofound.europa.eu>

» European Commission, <http://www.ec.europa.eu>

» OSHwiki, <http://oshwiki.eu>

» Deutsche Gesetzlich Unfallversicherung, <http://www.dguv.d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ttp://www.hse.gov.uk>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www.cdc.gov>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http://www.osha.gov>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http://www.eeoc.gov>

COVID-19 사업장 대응을 위한 지침 참고자료

<사업장 일반 지침>

CDC의 사업장 및 사업주 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에 대응하는 사업체와 고용주를 위한 임시 지침(2020년 5월)

OSHA: Guidance on preparing workplace for COVID-19

OSHA 3989_근로자 노출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예방

COVID-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 인프라 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 규범 시행 : 임시 지침(2020년 4월 20일 업데이트)

COVID-19 사례 확인 후 근로자 고밀집 중요 인프라 작업장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검사 전략(2020년 6월 13일 업데이트)

<소규모사업장 지침>

CDC: COVID-19의 영향에 대한 소상공인 및 직원 준비(2020년 4월 4일 업데이트)

<제조업 지침>

OSHA 4002_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COVID-19 지침

CDC 제조업 근로자 및 고용주(업데이트 일자 2020년 5월 12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3판. 2020.09.07.

<건설업 지침>

OSHA 4000_건설인력에 대한 COVID-19 지침

CDC 건설 근로자가 COVID-19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업데이트 일자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 (2020.0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7.03.). 새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영국 지침 : HM government. (2020.08.12.). Working safely during COVID-19 in
construction and other outdoor work

덴마크 지침 :

<https://workplacedenmark.dk/health-and-safety/prevent-the-spread-coronavirus/corona-precautions-construction/>

캐나다 지침 :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20.04.07.).
Coronavirus(COVID-19) Tips - Construction

미국 지침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COVID-19
Guidance for the Construction Workforce

<정신건강관리 지침>

WHO 임시 지침: COVID-19 발생 시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고려사항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considera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18 March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1490>. License: [CC BY-NC-SA 3.0 IGO](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

WHO 사회적 낙인 예방 및 관리 가이드: COVID-19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Social Stigma with COVID-19, 24 February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tigma-guide.pdf?
sfvrsn=226180f4_2](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covid19-stigma-guide.pdf?sfvrsn=226180f4_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mployees: How to Cope with Job Stress and Build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5 May 20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mental-health-non-healthcare.htm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care Personnel and First Responders: How to Cope with Stress and Build Resil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5 May 20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mental-health-healthcare.htm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at Workers and Employers Can Do to Manage Workplace Fatigue during COVID-19, 19 May 202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managing-workplace-fatigue.html>

http://www.nih.go.kr/board/board.es?mid=a40305010000&bid=0019&act=view&list_no=366434&tag=&nPage=1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59호. 2020년 7월 28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지침.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20년 3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심리방역도 함께 강화해야”, 한국과총 Webzine, 2020년 4월 21일,

https://online.kofst.or.kr/kofstNewsDetail.do?pageIndex=3&key=252522&cate2=COM045_EZmyQIE&listType=T(2020년 8월 10일)

https://www.youtube.com/watch?v=nq7aX1_Tqig&feature=youtu.be

[카드뉴스] COVID-19 사태에 대비하는 정신건강 관련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책, 한

- 국과총, 2020년 4월 23일. https://blog.naver.com/kofst_news/221924636897
- [카드뉴스] 코로나 19 사태를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 한국과총. 2020년 3월 31일. https://blog.naver.com/kofst_news/221882972596
-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코로나19 심리대응 상담결과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자료(2020. 08. 14)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
- 노동건강연대. 노동과건강 2020년 봄호 (vol. 97) “일이 없어졌다고 월급까지 반납하라니”. Available from: <http://laborhealth.or.kr/36244>
- 아름다운재단 & 노동건강연대. 2019.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Available from: <http://laborhealth.or.kr/project/50150>

Abstract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Workplace for Airborne Infectious Diseases

1. Background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respiratory infections, includ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 in 2003, H1N1 Pandemic in 2009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in 2015.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orona 19),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a global pandemic including Korea, is a respiratory infection mainly infected by droplets.

COVID-19, a global pandemic, has not yet clearly identified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outbreak or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progression, and the possibility of mutation of the corona virus is high, making it difficult to develop vaccines and treatments.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the early end of COVID-19 will be difficult, and the possibility of repetition of the outbreak is high, so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tive worker protection policy at the workplace level to prevent the spread or recurrence of Coronavirus infec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r problems of the workplace's response to COVID-19, and develop countermeasures and standard guidelines for each type of business and job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2. Main Contents

□ Result

Some of Korea's representative cases related to COVID-19 infections in workplaces were Club-related (277), Richway-related (208), Guro Call Center (170), Coupang Logistics Center (150), Gwangju Visiting Sales Group (196), J-Mijoo Hospital (124), Cheonan Sports Facility (119), Cheongdo Namhan Hospital (119), Daesil Nursing Hospital (101). By profession, the risk of infection was highest in the health and medical welfare sector, and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was generally higher in occupational groups with higher infection risk.

Based on the status of COVID-19 workplace outbreaks and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COVID-19 vulnerable worker group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the COVID-19 vulnerable worker group,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COVID-19 vulnerable worker group (draft) were derived. As a group evaluation item of workers vulnerable to COVID-19, the degree of airtightness of the space due to workplace risk, health management degree, compliance with quarantine rules,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droplets due to work-related risks, degree of concentration between people, degree of contact with others, degree of clustering, user stay time, disease High-risk groups and group life were included as exposure to hyperinfection, degree of sharing of goods, overwork, and personal risk.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sponse status of COVID-19 workplaces, it was found that in manufacturing industry “Dedicated system establishment and large-scale absenteeism preparedness business plan” and “Distance in daily life: meeting” was most difficult to apply in workplaces while in construction industry “Reinforcing workers’ hygiene management and maintaining cleanliness and disinfection”, “Prevention of the inflow and spread of infection in the workplace” and “Measures when a confirmed patient is found in the workplace” .

COVID-19 Guidelines for responding to workplaces were presen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general, manufacturing, construction, small business, and mental health.

Implication

Since the vulnerable worker group to COVID-19 is defined by a wide variety of complex factors such as workplace characteristics, work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ctive monitoring and policy support throug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sponse guidelines, and research are required.

3. Utilization of Research

Suggestion

Since the guidelines for workplace response to COVID-19 have been presen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general, manufacturing, construction, small business, and mental health, it is necessary to guide them to actively use them.

As we suggested the guidelines necessary for protecting workers' health from COVID-19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nd overseas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health from COVID-19,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with COVID-19 outbreak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infection, additional guideline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this.

As a research on occupational health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we proposed some research such as a measures to activate untac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ervices, equitable health impacts of workers due to COVID-19, health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s vulnerable to COVID-19, so it is necessary to support related research.

Improvement Plan

In the event that a crisis alert for novel infectious disease syndrome such as COVID-19 is issued with more than a cau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pathogen infection in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o the entire workplace. When applying this to the

workplace, employers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of workers, notify all workers when infectious diseases occur in the workplace,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infection of other workers. Workers need to be required to wear protective equipment and report when they come into contact with confirmed patients.

In order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from COVID-19, policy support such a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guidance, psychological support, and strengthening support systems and self-management is necessary.

Utilization

The COVID-19 Vulnerable Worker Group Evaluation Criteria (draft) can be used to monitor the COVID-19 vulnerable worker group,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nd to improve worker health equity.

The effectiveness of policy support can be improved by us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workplace response, problems and opinions for improvement as a policy basis for support at the workplace.

General, manufacturing, construction, small business, and mental health guidelines (draft) can be actively used to respond to COVID-19 workplaces.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f workers from new infectious diseases, the promotion of amendments to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draft) and the resulting cost-benefit analysis (draft) can be us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policy to protect workers' mental health from COVID-19(draft) can be used in workers' mental health borough policies.

This allows the development (draft) and research promotion (draft) of additional countermeasures to protect workers' health from COVID-19 in additional guidelin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ies.

부록 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

활동 종류별 위험도와 더불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취약·확산 요인 등의 개인 위험 수준 및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②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③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 (외식)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 (종교활동)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 (쇼핑)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1 높은 위험도 활동 ※ 확진자 발생 규모는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행위	내용
외식	외식(식사)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접촉하며, 술을 마시며 음식섭취 (예: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역학조사 사례: 이태원 클럽 ※ 이용자 96명 등 총 277명 확진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체류 - 클럽 밖에서 줄을 설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술, 음료 등을 마시고 춤을 추며 밀접 접촉 역학조사 사례: ○○포차 (헌팅포차) ※ 동행지인 5명 확진 -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장시간 체류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주, 대화 - 다수가 큰소리로 대화하며 침방울 발생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공용으로 식기 또는 도구를 공유하는 식사 (예: 뷔페 등) 역학조사 사례: ○○○○하우스(뷔페) ※ 이용자 14명 등 총 51명 확진 - 실내 공간에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1~2시간) 체류 - 뷔페 이용 시 집기 등 공동이용 및 근접 접촉 - 행사의 사진 촬영 등 밀접 접촉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또는 상시 환기가 가능하며,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행위	내용	
	낮은 위험	<p>식사</p> <p>▶ 배달·포장하여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p>
운동	운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격렬한 단체 운동 (예: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 및 탁구 등)</p> <p>역학조사 사례: ○○○ 탁구장 ※ 이용자 42명 등 총 73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지하층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구조, 협소한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또는 착용 미흡) 물품을 공용으로 - 스포츠 활동 후 음주 또는 음식 공동섭취 - 여러 클럽 간 매주 교류 (탁구 대회) <p>역학조사 사례: 줌바댄스강습 ※ 강사 및 수강생 65명 등 총 116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강습 참석 - 큰소리로 구령을 맞춰 하는 단체 스포츠 활동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p>역학조사 사례: 크로스핏 체육관 ※ 동시간대 이용자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소규모 집단운동 - 밀폐되고(지하 2층에 위치) 환기가 어려운 구조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격렬한 운동 (예: 겨루기 운동 등)</p>
	중간 위험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하는 운동 (예: 근육운동 등)</p>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 공유가 가능한 운동 (소독은 잘 이루진 경우)</p>
	낮은 위험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스포츠 활동 (예: 조깅, 산책 등)
노래	노래 부르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행위	내용	
	높은 위험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기 (예: 콘서트장, 떼창, 성가대(합창단), 코인노래방,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역학조사 사례: ○코인노래방 ※ 동행자 1명 및 다른 손님 5명 확진 </div> - 실내 환기가 불량한 좁고 밀폐된 공간 (창문이 있으나 다른 물건이 막고 있어 실질적 환기 불가) - 노래 부르기 (침방울 발생 많음) - 확진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체류 (20분~1시간) - 마이크, 노래 코드북 등 물품 공동 사용
	중간 위험	▶ 마스크 착용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노래 부르기
물놀이	물놀이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 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접촉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물놀이 (예: 성수기 해수욕장 및 워터파크 등)
	중간 위험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물놀이 (예: 공용물품 이용하는 물놀이 등)
	낮은 위험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한적한 곳에서,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물놀이 (한적한 계곡 등)

2] 중간 위험도 활동

행위	내용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 등 참석)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등 참석) ▶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

행위	내용	
		<p>고, 공용 책 등을 사용하는 종교활동</p> <p>▶ 예배·미사·법회 등 전·후에 악수·대화·모임·식사 등이 동반하는 활동</p> <p style="text-align: center;">역학조사 사례: ○○교회 ※ 교인 및 가족, 지인 등 총 37명 확인(조사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있음에도 종교의식 참석 - 찬양팀 마스크 착용 미흡 (침방울 튼 많음) - 본 예배 전후 소규모 모임 진행 - 교회 수련회 등 교인 간 모임·행사 진행 <p style="text-align: center;">역학조사 사례: ○○○교회 ※ 모임 참석자 총 24명 확진(조사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식사 등의 집단 활동 - 예배 중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 다수 있음 - 배식 형태의 식사 - 에어컨 가동하나 환기는 안함
	중간 위험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노래 부르기, 악수·식사 등은 하지 않는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 등은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름이 동반)
모임·행사	높은 위험	<p>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p> <p>▶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대화, 음식섭취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호회 모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역학조사 사례: 자동차(○○) 동호회 ※ 모임 참석자 5명 등 총 6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들이 오랜 시간(1시간 이상) 함께 체류 - 식사 및 음료 섭취하며 지속적 대화 - 단기간 소규모로 여러 번 모임 (2주간 3~8회)

행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모임·행사 (예: 방문 판매업장 등)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화의 오래 나누는 활동
목욕·사우나·찜질	목욕·사우나·찜질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활동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대화를 하고, 음식 섭취를 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을 사용 (예: 목욕탕 탈의실 및 찜질방에서 음식섭취, 찜질방의 코인노래방기기 등 부대시설 이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역학조사 사례: ○○ 온천 (찜질방) ※ 방문자 5명 확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되고(지하에 위치) 환기가 어려운 구조 - 마스크 착용이 하지 않고, 방문자가 오랜 시간(1시간 이상) - 방문자들이 단기간에 재방문(1주에 2회)하여 추가 환자 발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역학조사 사례: ○○ 사우나 (목욕탕) ※ 직원, 방문자, 가족 등 총 5명 확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어려움 -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 간 밀접 접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고, 대화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목욕·사우나·찜질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목욕 (예, 노천 온천 등)
미용·뷰티서비스	미용·뷰티서비스는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임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미용서비스·뷰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랜시간

행위	내용	
		<p>대화를 하는 경우</p> <p>역학조사 사례: ○○○ 헤어샵 (미용실)</p> <p>※ 직원, 방문자 총 2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실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장 후어 착용하지 않음 - 파마, 커트로 오랜 시간(2시간 이상) 머무름 - 미용실 내에서 10여 분간 대화 <p>▶ 종사자-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르며, 다수가 만지는 책 등을 보는 경우</p>
	중간 위험	<p>▶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전혀 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과 장시간의 밀접 접촉이 동반되는 서비스</p>
	낮은 위험	<p>▶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는 잠깐 벗기)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 시간이 짧은 서비스 이용</p>

3 낮은 위험도 활동

행위	내용	
쇼핑 (물건 사기)	쇼핑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물건 사기) (예: 판촉설명회, 홍보관에서 장시간 물건 설명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역학조사 사례: ○○웨이(방문판매행사장) ※ 참석자 42명 등 총 210명 확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실내 공간 - 여럿이 모이는 행사 개최 -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여 함께 노래와 식사 - 여러 번 재방문하여 잦은 재노출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행사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물건 사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르는 물건 사기 (예: 사람이 많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독서 · 공부	독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식사·음식 섭취를 하는 공간에서 독서·공부 (예: 카페 등) ▶ 밀폐·밀집되고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 대규모 학원(300인 이상)에서 공부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머무르는 대규모 학원(300인 이하)에서 공부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서 공부 	

행위	내용	
		<p>역학조사 사례: ○○학원 ※ 강사 및 학생 7명 등 총 56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내에 창문은 있으나, 자연 환기를 하지 않음 - 학원 입실 시에는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나, 강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강사와 학생 있음 - 소규모 강의실(2~7인 이내)로 강사와 학생 간의 거리가 매우 1m 거리 두기가 곤란 - 학원 내 강사와 학생이 장시간(2~3시간) 지속 체류
	낮은 위험	<p>▶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독서·공부 * 음식·음료 섭취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경우 (예: 독서실, 도서관 등)</p>
게임	게임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높은 위험	<p>▶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이 동반된 게임 (예: 밀폐·밀집된 PC방·카지노 등에서 음료·음식을 먹거나 소리 지르기)</p> <p>역학조사 사례: ○○ PC방 ※ 이용자 11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체류 - 여러 번 재방문(거의 매일 방문)하여 잦은 재노출
	중간 위험	<p>▶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대화하지 않고, 공용 물건 사용하며 함께하는 게임 * 소독이 된 공용 물건</p>
	낮은 위험	<p>▶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말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게임 (음식·음료 섭취를 하지 않고 지속적 마스크 착용 가능)</p>
관람	관람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높은 위험	<p>▶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음식을 먹고,</p>

행위	내용	
		<p>소리 지르는 행동이 동반된 관람 (예: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하면서 음료를 마시고 소리 지르기)</p> <p>▶ 실내·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음식·음료를 섭취하거나 응원·구호를 외치는 활동이 동반된 영화·공연·스포츠 관람</p>
	중간 위험	<p>▶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지그재그 자리 앉기 등) 이지만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함께 관람하기 (예: 실외 스포츠 관람 등)</p> <p>* 응원·구호 금지 및 음식·음료 섭취 금지</p>
	낮은 위험	<p>▶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관람하기 (예: 박물관, 미술관 등)</p>

부록 2. 코로나19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

질 문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나의 취약요인 및 확산요인 알아보기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취약요인) ▶ 65세 이상 ▶ 당뇨, 만성질환(간, 신장, 폐, 심혈관),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만성질환이 있는 자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확산 위험도) ▶ 감염 취약 집단을 돌보는 직업(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종사자 및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등) ▶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종사자) ▶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직업(서비스업 등 종사자) ▶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예: 기숙사 거주, 교도관 및 군인 등)		
<input type="checkbox"/> 내가 방문하는 시설에 대한 위험도 알아보기		
3.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공간(지하, 창문이 작아 원활하지 않아 통풍 환기가 어려운 곳 등)인가요?		
4.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간인가요?		
5. 동 시간대에 다수(100명 이상)가 이용하는 공간인가요?		
6. 손 씻기,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공간인가요?		
<input type="checkbox"/> 내가 하는 활동의 위험도 알아보기		
7. 침방울이 많이 발생이 활동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말하기,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구호 외치기 등)		
8. 활동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나요?		
9. 다른 사람과 1시간 이상 함께하는 활동인가요?		
10.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물건을 공유하는 활동인가요?		
위험도 종합평가: '예'의 개수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3점 이하), 중간(4~7점), 높음(8점 이상)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코로나19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평가 기준

위험도	평가
낮은 위험 (3점 이하)	축하합니다! 평가 결과 저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감염의 위험도는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으니,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위험 (4~7점)	위험도 평가 결과는 보통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주거 공간 제외)에서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힘쓰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 (8~10점)	위험도 평가 결과,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다수의 사람을 만난다면 감염 확산 위험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주거공간 제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람 간 거리를 2m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침방울이 발생하는 음식, 음료 섭취, 지속적인 대화,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손 씻는 습관 잊지 마세요!
공통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 방역 수칙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유지하기 ② 다중이용시설 및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p>*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스스로 마스크 제거가 어려운 사람, 24개월 미만 유아는 마스크 착용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u>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u>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④ 기침 예절 지키기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⑤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p>*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해요. 환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최대한 방문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최소화해주세요.</p>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부록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역학조사	제18조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p> <p>－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누락·은폐 금지</p> <p>※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제18조의4	○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인력지원 등 요청 가능
	제35조의2	○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진료이력 등 거짓진술·고의적 누락, 은폐 금지 <p>※ (제83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제37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격리소·요양소를 설치·운영하여 조치가능
	제41조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 를 받아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 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 ※ (제79조의3)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4.5.시행)
	제43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들이 제 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46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들의 가족·동거인, 발생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
현장 조치	제47조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 시 필요한 아래 조치 수행 1. 감염병환자들이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 4. 오염(의심)물건의 사용·접수·이동 등 금지 또는 폐기 5. 오염 장소 소독조치 등의 명령 6. 일정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 금지, 오물 처리장소 제한 ※ (제79조의3) 제3호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 (제80조) 제1,2,4,5,6호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예방 조치	제 49 조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p> <p>※ (제80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14호는 제외)에 따른 조치에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p> <p>※ (제79조의3) 제1항제14호에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p>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현장지휘	제 60조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 임명가능,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 (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60조의2	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보제공	제 76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 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③ 질병관리청장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현장 지휘	제60조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 임명가능,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 (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의2	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보 제공	제76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③ 질병관리청장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
시신 의장사 방법	제20조의2	① 감염병 환자(또는 사망 후 감염병병원체 보유 확인된 자)등이 사망하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②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 설치·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

구분	법 조항	주요 내용
사업주 의 협조 의무	제41 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 의무적 유급휴가) ②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불가 - 유급휴가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불가
감염병 에 관한 강제 처분	제42 조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 가능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진찰 가능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함 ※ (제7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한시적 종사 명령	제60조 의3	<p>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 우려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방역업무 종사 명령 가능</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해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음</p>
손실 보상	제70조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 보상해야 함</p>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 의3	<p>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당, 여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 의4	<p>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p>②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p>

부록 4. 국내 코로나19 관련 지침²⁵⁾

□ 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2판)(20.8.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2판)부록(20.8.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1판)(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1판)부록(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판)(20.6.2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판)부록(20.6.2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8-1판)(20.5.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8-1판)부록(20.5.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8판)(20.5.1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8판) 부록(20.5.11.) (질병관리

25)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의 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일부 순서를 다르게 하여 그대로 인용함

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4판)(20.4.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3판)(20.3.1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3판)(부록)(20.3.1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1판)(20.3.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판 수정)(20.3.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부록(지자체용)(7판 수정)(20.3.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7판)(20.3.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부록(지자체용)(7판)(20.3.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6판 개정에 따른 FAQ(20.2.20. 기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6판)(20.2.20. 11시 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주요 개정사항(5판)(20.2.7.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5판)(20.2.7.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흐름도(7판기

준)(20.3.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절차(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6판)(20.2.20.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5판)(20.2.8.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20.3.2.)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공신장실용 대응지침(1-4판)(20.5.14.)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공신장실용 대응지침(1-3판)(20.3.10.)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공신장실 관련 지침(1-3판)에 대한 FAQ (1-2판) (대한신장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공신장실용 대응지침(1-2판)(20.2.27.)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소아청소년 자가격리 안내서 및 Q&A (ver1.1)(20.4.8.) (대한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소아청소년 자가격리 안내서 및 Q&A(20.4.1.) (대한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20.3.20.) (대한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20.3.6.) (대한소아감염학회)

개인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3판(20.7.3.)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개인방역, 집단방역, 지침별 담당부처에 대해 참조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2판(20.5.27.)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0.5.3.)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단방역

코로나19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20.6.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_집단방역(20.5.3.)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20.8.15)(보건복지부)

선별진료소 및 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9판)(20.7.9.)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8-1판)(20.5.15.)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8판)(20.5.11.)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7-5판)(20.4.21.)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7-4판)(20.4.15.)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대응지침9판 적용)(20.7.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대응지침8판 적용)(20.5.1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대응지침7판 적용)(수정)(20.3.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20.2.21.배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20.2.7.배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 선별진료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안내(20.2.1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

□ 의료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2020.8.20)(질병관
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020.8.)(질병관리본
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운영 사례 안내(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요양병원용)(2020.4) (질
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 지침(2
판)(20.4.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리-병원급 의료기관-개정배포
(2020.3.1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리-병원급 의료기관(2020.2.) (질병관

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관리-의원급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20.3.10.)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20.2.24.)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관리(20.3.4.) (대한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또는 의심환자 수술지침(2020.03.24.) (대한의사협회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의료기관 병상 배정계획(20.2.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20.2.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20.2.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 사항(20.2.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 입원·격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안내(5판)(20.8.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20.8.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국가 안내(20.8.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안내(4판)(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20.7.9)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20.2.1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 진단검사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지원안내(7판,공공보건기관용)(20.8.1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7판,보건소 외 의료기관용)(20.8.1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지원안내(6판,공공보건기관용)(20.6.2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6판,보건소 외 의료기관용)(20.6.2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지원안내(5판,공공보건기관용)(20.5.1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5판,보건소 외 의료기관용)(20.3.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4판,지자체용)(20.3.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4판,보건소 외 의료기관용)(20.3.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자체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20.2.7.)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지자체안내용(2판)(20.2.7.)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의료기관용(2판)(20.2.7.)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 2차(20.6.26)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안)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20.6.1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안내(20.6.2)(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20.2.2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2판)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20.3.26.)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판)(20.3.13.)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3판)(20.2.26.)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4판)(20.3.13.) (보건복지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 지침(20.2.)
(보건복지부)

□ 학교, 어린이집 관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판)(20.5.7.)(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4.20.)(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19.)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 대학(20.2.7.)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학교 학사일정 조정·관리 방안 (교육부)

□ 검체채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20.4.13)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동 검체채취 가이드라인(지자체용) 배포(20.2.24.)
(경기도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채취 안내사항(20.2.2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을 위한 검체채취 안내서(20.1.2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 폐기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3판)(20.3.3.)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2판)(20.2.23.)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20.2.2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소독 및 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시원 방역 지침 (20.6.2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쪽방촌 방역 지침 (20.6.22)(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3판)(20.5.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2판)(20.5.11.)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1판)(20.4.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20.3.2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1판)(20.3.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20.2.26.)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0.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20.2.26.) (질병
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1판)(20.2.12.) (질병
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개인보호구, 응급실 소독 등) 안내
(20.2.2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신건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침(20.3.2.) (신종감염
병 중앙임상위원회)

□ 기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6.30.)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20.5.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0.3.14.)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4.)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2판 (20.3.4.)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및운영 지침-5판(20.6.29.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및운영 지침-4-1판(20.3.27.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및운영 지침-2판(20.3.5.배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영유아 및 소아청소년)(20.3.20.) (대한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20.3.3.)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관리 지침 안내(20.2.2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부록 5. 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

보다나은 [식약처]
정령 [세상]

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

안전하고 지속적인 식품생산, 유통을 위한 식품관련 종사자 보호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마련

※ 본 지침은 역학조사결과 등 관련 요인들의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음

1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 1 코로나19를 위한 대응조치가 식품 안전관리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담당자 지정
- 2 요소가 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정부*와의 연계체계 구축
* 식약처(지방청 포함) 및 시도(시군구 포함)
- 3 개인위생 철저(비누로 30초간 손씻기, 기침 혹은 재채기 시 입과 코막기)
- 4 손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 5 사업장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
- 6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발생 직원은 즉시 사업장으로부터 격리하기
-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하기

2 작업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 1 작업자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2m 간격, 최소 1m)
- 2 마스크, 위생모,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장갑 교체 시 손 세척 및 소독하기
- 3 전처리 구역 등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직원 수 제한
- 4 직원을 작업 그룹 또는 팀으로 구성하여 그룹간의 소통 가능한 제한

3 확진자 발생시 주의사항

- 1 채역/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작업대, 사업장 손잡이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모든 잠재적 오염구역을 포함하여 확진자가 접촉한 모든 표면을 소독
- 2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동보하여 추가확산 위험 최소화
- 3 확진자와 대면 또는 신체적 접촉 직원, 감염이 확인된 지점의 1m 이내 직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같은 작업그룹 직원 등은 최소 14일 자가 격리
- 4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2회의 음성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해제

4 식품 및 식재료 배송 배달시 주의사항

- 1 운전대, 무선 단말기, 컨테이너와 같은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수시로 소독
- 2 배송·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시 물리적 거리두기
- 3 배송·배달 중 차량 이탈 금지
- 4 반환이 필요한 경우 세척이 필요 없는 일회용 용기 사용

5 식품 소매점에서 주의사항

- 1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출입 고객 수 제한
- 2 몸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고객은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시
- 3 매장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비접촉식 결제 장려
- 4 판매대 등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곳에는 바닥에 안내 표시하기
- 5 매장 직원 보호를 위해 판매대에 이크릴수지 보호막 등 차단막 설치
- 6 쇼핑카트, 바구니 등의 손잡이, 국자, 집게, 영냉동 등 수시 소독
- 7 소비자가 직접 가져오는 장바구니를 수시로 세척하도록 안내문 게시

6 개방된 식품 진열장 관리

- 1 모든 식품 접촉면과 기구는 자주 세척하고 소독할 것
- 2 관리직원은 손 세척 및 소독을 수시로 해야 하고, 식품을 취급하기 전후로 장갑 교체
- 3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세정제 비치
- 4 빵 등 바로 섭취 가능한 제품을 개봉하여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

7 직원식당, 휴게실 등 관리

- 1 좌석 배치를 포함하여 개인간 물리적 거리(2m 간격, 최소 1m) 유지
- 2 과일 방지를 위해 입무 및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배치
- 3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안내 표시 하기
- 4 사설, 기구·용기 등 자주 접촉하는 면 또는 물건은 수시로 세척 및 소독
- 5 식사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
- 6 음식은 되도록 개인별 용기에 음식(반찬, 국 포함)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
- 7 가능한 불필요한 접촉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부록 6. COVID-19 사업장 대응관련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현황과 사업장 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본 연구에만 사용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자료분석 후 관련 자료는 폐기처분 됩니다.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최은숙 교수

연구과제명: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 담당자 연락처 : 김00(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조교)

TEL: 053-420-0000, 010-0000-0000, 0000@naver.com

응답자 일반적 특성

1. 직위 ① 보건관리자 ② 보건업무 담당자
2. 성별 ① 남 ②여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사업장 업종 ① 제조업 () ② 건설업 ()
③ 서비스업 () ④ 기타 ()
5. 사업장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남 ⑪ 충북
⑫ 전남 ⑬ 전북 ⑭ 경남 ⑮ 경북 ⑯ 제주
5. 직원수 (명)
6. 총 직장 근무경력 ① 2년 이하 ② 3~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20년 ⑥ 21~25년 ⑦ 26년 이상
- 현 직장 근무경력 ① 2년 이하 ② 3~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6~20년 ⑥ 21~25년 ⑦ 26년 이상

□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현황 및 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나 지원 내용 상세 기술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른 현장적용 어려움의 정도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정보·지침 내용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7.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8.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9.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0.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견 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1.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2. 휴가 및 휴업 관리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3. 유연근무제 활용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4.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 지를 위한 소속 사업장의 인적, 행정적, 재정적 준비 나 지원 내용 상세 기술	코로나19 사업장 대 응지침에 따른 현장 적용 어려움의 정도	현장적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정보·지침 내용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 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15.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6. 생활 속 거 리 두기 지침 : 사업장(사업주와 근로자 수적)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7. 생활 속 거 리 두기 지침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18. 생활 속 거 리 두기 지침 : 회의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약간 쉬움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쉬움		

24. 귀 사업장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감염병 예방교육 교육 미실시사업장만 응답)

① 내용을 몰라서 ②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③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기타()

25. 귀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건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이유는?)

2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8시간 미만(1일) ② 8시간~16시간 미만(1박2일) ③ 16시간~24시간(2박3일) ④ 24시간 이상(3박4일 이상) ⑤ 기타()

27. 감염병 예방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서술형)

()

28.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교육 과정이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 개설된다면 교육을 수강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아니오 (이유는?)

29. 귀하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7. COVID-19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한 자문 조사지

코로나19 소규모 사업장 대응 지침(안)에 대한 개선의견

	개선 의견(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사업주 지침	
종사자용 지침	
기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정신건강관리 지침(안)에 대한 개선의견

	개선의견(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1)공통지침	
(2)사업주 및 관리자용 지침	
(3)근로자를 위한 지침	
(4)재택근무자를 위한 지침	
기타	

제조업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안)에 대한 개선의견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2) 코로나19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3) 출근 직원 관리	
가)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나) 고위험군 보호	
다) 직장에서의 평등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p> <p>(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p>
(4)공학적 통제	
(5)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출퇴근 시간	
나)작업 공간	
다)이동	
라)사무 공간	
마)회의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바)구내식당 운영관리	
사)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운영관리	
아)휴게실 등 기타 공용시설 관리	
자)고객 및 거래처 방문관리	
(6)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	
가) 사업장 환기 시스템 개선	
나) 작업장 청소 및 세척	
다) 개인위생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p>
(7)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8)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9) 개인보호구 및 마스크	
가)개인 보호구	
나)마스크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10) 인력관리	
가)인력관리	
나)업무관련 출장	
다)의사소통 및 직원교육	
(11) 납입, 납품 및 물품 관리	
기타	

건설업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안)에 대한 개선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p>
(1)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2) 코로나19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3) 출근 직원 관리	
가)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나) 고위험군 보호	
다) 직장에서의 평등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4)공학적 통제	
(5)회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가)출퇴근 시간	
나)현장 공간	
다)현장 및 작업장 이동	
라)사무 공간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p>
<p>마)회의</p>	
<p>바)집합·모임·행사</p>	
<p>사)구내식당 운영관리</p>	
<p>아)휴게실 등 기타 공용시설 관리</p>	
<p>자)고객 및 거래처 방문관리</p>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6)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	
가) 현장 폐쇄 후 재가동시	
나) 현장 청소 및 세척	
다) 현장 차량 관리	
라) 개인위생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p>
(7)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8)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9) 개인보호구 및 마스크	
가)개인 보호구	
나)마스크	

	개선의견 (재정지원, 규제강화/완화, 관련 지침 내용 수정·보완, 관련 교육 수요, 기타 등에 대한 상세내용 기술)
(10) 인력관리	
가)현장인력 관리	
나)업무관련 출장	
다)의사소통 및 직원교육	
(11) 납입, 납품 및 물품 관리	
기타	

부록 8.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고위험군 생활수칙'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기!**



0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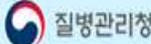
03 **기저질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하기!**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07.01.

부록 9. 올바른 손씻기

2020.10.15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손을 씻어도 상당수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남아있어요!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

- 대부분 씻김
- 비교적 씻기지 않음
- 거의 씻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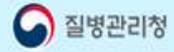


손바닥 손등

*출처: Taylor L (1978). An evaluation of hand washing techniques - 1. Nursing Times. 74:54-55

5/6

2020.10.15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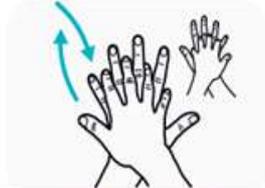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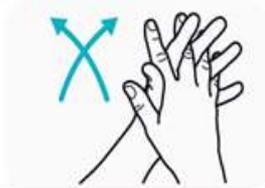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부록 10.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유증상자 10대 수칙'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또는 폐렴 등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기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하기
-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기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07. 01.

부록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 격리는 격리시설 내에서 별도 안내)
(ex: 6월 1일 입국하신 분은 6월 15일 12: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격리자 생활수칙

-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발행일 2020.06.1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9dqRor>

구글 플레이



<http://url.kr/5rmtzH>

앱 스토어



<http://url.kr/f7dmWs>

ID : CORONA | 다운로드 :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06.12.

부록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3 -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전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 ✔ 기침, 호흡곤란
- ✔ 오한, 근육통, 두통
- ✔ 인후통
- ✔ 후각·미각 소실
- ✔ 폐렴 등

2020.08.20.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4 -

-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등

2020.8.20.

부록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③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부록 14. 코로나19 의사 환자가 이용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소독 전】

1.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2.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다.

【청소·소독】

1. (표면 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바닥)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소독 구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해서 소독한다.
3. (표면 소독) 소독제로 천(형걸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세탁)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고온에서 사용 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이하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고,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6.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9. (폐기물 처리)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청소·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부록 15. 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

가 정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호용 마스크	
	-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
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 	
소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 ·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
폐기물 처리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
주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사업장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	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소독 계획	소독범위 계획 수립	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범위 계획 수립
소독 교육	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 보호용 마스크	
	-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
소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 	
자주 사용하는 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 ·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
폐기물 처리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
주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부록 1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마스크 사용 지침

-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

1. 목 적

-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함
- 이 지침은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됨

2. 적용대상

-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 *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의심 또는 확진환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보호구 사용지침(질병관리본부)」을 따를 것

3. 일반원칙

-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에 더해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함
-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음

○ 감염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행동 수칙** 준수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4.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나.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 1)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 2)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3)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5.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착용상 주의사항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 3)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말 것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나.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

- 1)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것
-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를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할 것
- 3)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것

- 1) 정전기필터는 얇아서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할 것
- 2)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하여 틈새를 없앨 것
- 3)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정전기필터를 세탁하면 안 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는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할 것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① 과 기저질환자^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임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마스크 폐기법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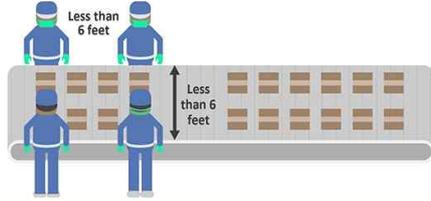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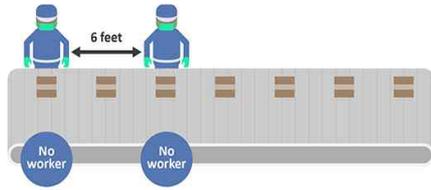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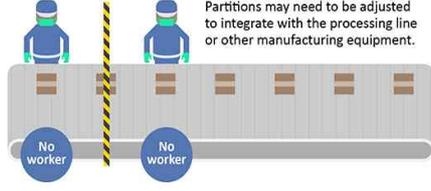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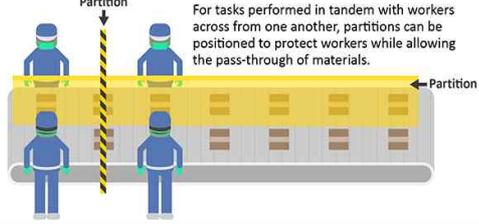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부록 17. 제조업 사업장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p>나쁨: 근로자들은 서로 6피트 거리 이내 있으며, 나란히 있거나 마주보고 일함</p>	<p style="text-align: center;">How to Align Manufacturing Workstations, If Feasible</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ad: Workers are within six feet of one another, including at side-by-side or facing workstations.</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Good: Workers are spaced at least six feet apart, not facing one another. Another setup may be used to achieve similar distancing between workers.</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Good: Physical barriers, such as partitions, separate workers from each other.</p>  <p style="font-size: small;">Partitions may need to be adjusted to integrate with the processing line or other manufacturing equipmen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Good: Physical barriers, such as partitions, separate workers from each other, including where workers need to perform tasks in tandem across from one another.</p>  <p style="font-size: small;">For tasks performed in tandem with workers across from one another, partitions can be positioned to protect workers while allowing the pass-through of materials.</p> </div>
<p>좋음: 근로자들은 6피트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음. 또 다른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p>	
<p>중음: 파티션과 같은 물리적 차단이 있어 근로자들을 분리시킴</p>	
<p>중음: 근로자들이 서로 교차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곳을 포함하여, 파티션과 같은 물리적 차단이 근로자들을 분리시킴.</p>	

[출처: CDC, 제조업 근로자 및 고용주 CDC 및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임시 지침 (20.05.12).]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manufacturing-workers-employers.html#exposure-risk>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최 은 숙 (교수, 간호학박사, 경북대학교)

연 구 원 : 양 선 희 (교수, 의학박사, 계명대학교)

하 영 미 (교수, 간호학박사, 경상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 민 지 (간호학 박사과정, 경북대학교)

조 은 영 (간호학 박사과정, 경북대학교)

연구상대역 : 최 윤 정 (과장, 직업건강연구실)

〈〈연구기간〉〉

2020. 05. 25 ~ 2020.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0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
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과제명 : 공기매기 감염병에 관한 사업장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2020-산업안전보건연구원-682)

발 행 일 : 2020년 10월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고 재 철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최 은 숙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전 화 : (052) 703 - 0862

F A X : (052) 703 - 0335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